

발의안 제30호

30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

제1항. 법안명

본 법안을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으로 칭한다.

제2항. 배경

(a) 지난 4년간 캘리포니아주는 교육, 경찰, 소방, 의료 및 기타 중요한 주 및 지역 서비스에서 56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해야 했다. 이러한 자금 삭감에 따라 교사들이 강제 해고되고, 학교의 학급 정원 수가 늘어나고, 대학 수업료가 인상되고, 경찰의 치안 범위가 줄어들고, 화재 대응 시간이 늘어나고, 교도소의 재소자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가출옥자 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b) 이러한 주요 서비스의 삭감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인, 중산층 근로가족, 어린이, 대학생 및 소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삭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c) 수년간의 삭감과 어려운 선택에 이어 이제 상황을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것이 캘리포니아주를 성장과 성공의 길로 되돌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d)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근로가족이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는 반면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을 내도록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

(e) 2012년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 보호법은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며, 이 계층은 대부분 이러한 소득세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판매세율을 2011년 초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지난해 발효된 일부 판매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한다.

(f) 이 법안의 새로운 세금은 일시적이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1/4 센트의 판매세 인상은 사년 후 만료되고 최상위 부유층 납세자의 소득세 인상은 칠년 후 종료된다.

(g) 새로운 세수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라 보장되어 지방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직접 제공된다. 지역 경찰 및 어린이 보호 서비스와 같은 시와 카운티의 공공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도 보장된다.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노인, 근로 가족 및 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한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 재원이 확보된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h) 기금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곳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손댈 수 없는 특별 계정에 편입한다. 이 새로운 수입은 주 관료 또는 행정 비용에 사용되지 않는다.

(i) 이 기금은 학교와 공공안전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다. 선출된 공무원은 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기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a) 본 법안의 주된 목적은 부유층에게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와 지역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주 헌법에서 주의 통제를 벗어난, 학교 및 공공안전 전용 특수 계정으로 기금을 보호한다.

(b) 이 법안은 수십억 달러의 주 지출을 영구 삭감하는 보다 광범위한 주 예산 계획 위에 수립된다.

(c) 법안은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공공안전을 위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금 지원을 보장하며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노인, 중산층 근로 가족, 어린이 및 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의 추가 삭감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d) 이 법안은 지역 공공안전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지역 관할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 수입을 지방 정부로 전환하는 데 대해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학교에는 전환되지 않을 경우 수령하게 되는 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한다.

(e) 본 법안은 새로운 수입을 행정 비용이 아니라 학급 관련 비용을 위해 교육구에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당 학교 기금은 주 예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f) 본 법안에 따른 모든 수입은 학교 및 지역 공공안전에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독립 회계감사관의 지역 감사를 받습니다.

제4항. 제36항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에 추가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항. (a) 이 항의 목적에 따라 다음을 수행한다:

(1) “공공안전 서비스”에만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A) 법집행 요원, 형사 소송에 배정되는 변호사, 법원 보안 직원을 포함한 공공안전 공무원의 고용과 훈련.

(B) 청소년과 성인 범죄자에 대한 지역 교도소 관리와 거쳐 제공 및 제반 서비스와 감독.

(C) 아동 학대, 방임 또는 악용 방지, 학대, 방임 또는 악용되거나 학대, 방임 또는 악이용될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및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입양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성인 보호 서비스 제공.

(D) 학업 성적 부진,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피해, 노숙, 예방 가능한 감금이나 수용을 줄이기 위해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E) 약물 남용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

(2) “2011년 재조정 법률”은 2011년 재조정이라고 부르는 주정부 예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12년 9월 30일 이전에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보고 책임을 포함하여

공공안전 서비스 책임을 지방 기관에 이양하는 것을 규정한다. 본 법률은 입법부에 의해 결정된 대로 연방법 및 기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안전 서비스를 설계,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유연성과 통제권을 지방 기관에 제공한다. 그러나, 2011년 재조정 법률에는 초기 주기적 심사, 진단 및 치료(EPsDT) 프로그램 및 정신 건강 관리 보호를 제외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지방 기관에 배정된 새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다.

(b) (1) 2011-12년 회계연도에 시작하여 그 이후 지속되어 온 제(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 제30025항에 규정된 대로 다음 금액이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으로 예치된다.

(A) 2011년 7월 1일 현재 세입 및 과세법 제6051.15항 및 제6201.15항에 설명된 세금으로부터 과생된 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

(B) 2011년 7월 1일 현재 세입 및 과세법 제11005항에 설명된 차량면허세로부터 과생된 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

(2) 2011년 7월 1일 이후 제(1)목에 따라 예약된 수입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일반기금 수입 또는 세금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 (1)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에 예약된 기금은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안전 서비스 전용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2011년 재조정 법률의 전면적인 이행이 보류 중인 상태에서 기금은 주정부가 지방 기관을 대신하여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프로그램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기금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할당된다.

(2) 카운티 재무관, 시 및 카운티 재무관 또는 담당 공무원이 각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재무부 내에서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을 조성한다. 2011년 각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의 재원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명시된 대로 지방 기관이 공공안전 서비스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3) 제XIII B조 제6항 또는 다른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재조정 법률 또는 해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칙 또는 이행 명령 또는 행정 명령에 의해 지방 기관에 부여된 새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 명령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주정부가 기금을 보조해야 하는 명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지방 기관이 공공안전 서비스 책임 또는 다른 사항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법의 제5권 제2부 제1편 제9장(제54950항 이하)을 준수한다는 어떠한 요건도 제XIII B조 제6항에 따른 상환 명령이 될 수 없다.

(4) (A) 2012년 9월 30일 후에 제정되고 지방 기관이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주정부가 비용 증가분에 대해 연간 기금을 제공하는 한도에서만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지방 기관은 본 세목에 기술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기금이 제공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B) 2011년 10월 9일 후 이행되고 2011년 재조정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으며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 이행 명령 또는 행정 명령은 주정부가 비용 증가에 대해 연간 기금을 제공하는 한도에서만 지방 기관에 적용된다. 지방 기관은 본 세목에 기술된, 새 규칙, 이행 명령 또는 행정 명령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기금이 제공되는 수준 이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

(C) 제(A)세목 및 제(B)세목에 설명된 대로, 지방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새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기금이 제공되는 수준 이상은 주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며 제XIII B조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본 목은 2011년 1월 2일 동 호와 같이 제XIII B조 제6항 제(a)호 제(2)목에 의거 현재 보조금이 제외되는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주정부는 2011년 재조정 법률이 명령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지방 기관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포기, 또는 이러한 계획 또는 포기에 대한 수정사항을 연방정부에 제출하지 않는다. 단, 연방법이 계획, 포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한도까지 또는 주정부가 비용 인상분에 대한 연간 기금을 지원하는 한도까지는 제외된다.

(E) 주정부는 지방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주정부에 의해 부여된 명령에 대해 본 항에 의거 보조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본 항이 규정하는 주정부 기금은 제(b)호 및 제(d)호에 설명된 재원, 중가 재산세, 또는 지방 수입 기금의 판매세 제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하위제정과 다른 재원으로부터 제공된다.

(5) (A) 제(a)호 제(1)목의 제(C)세목에서 부터 제(E)세목에 설명되고 2011년 재조정 법률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법령 또는 규칙에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설명된 대로 연방 상응 보조금이 지원되는 조건이 변경되고 지방 기관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속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해당 비용의 비연방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제공해야 한다.

(B) 주정부가 제(a)호 제(1)목의 제(C)세목에서 부터 제(E)세목에 설명되고 2011년 재조정 법률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제기된 연방 사법 또는 행정 소송의 당사자이고, 벌금형의 형태로 금액이 부과된 조정이나 사법 또는 행정 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 기관이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지시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수준을 제공함에 따라 이미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증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정이나 사법 또는 행정 명령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매년 해당 비용의 비연방 지분을 50 퍼센트 이상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는 조정 또는 명령이 하나 이상의 지방 기관이 행정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법률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하거나 부주의한 방식으로 행동함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C) 본 항이 규정하는 주정부 기금은 제(b)호 및 제(d)호에 설명된 재원, 종가 재산세, 또는 지방 수입 기금 판매세 제정의 사회복지 서비스 하위제정과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제공된다.

(6) 주정부 또는 지방 기관이 본 조항 또는 2011년 재조정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절차는 다른 민사 사건에 우선한다.

(7)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에 예약된 기금은 주정부가 연방 상응 보조금 수혜 자격을 유지하고, 주정부의 공공안전 서비스 제공을 관할하는 해당 연방 기준을 주정부가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8)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에 예약된 기금은 지방 기관에 의해 공공안전 서비스를 위한 다른 기금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d) 제(b)호에 설명된 세금이 감소하거나 시행이 중단된 경우 주정부는 매년, 세금 감소나 시행 중단 없는 경우 제(b)호에 설명된 세금에 의해 제공되었을 총액보다 많거나 동일한 금액의 비용을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에 제공해야 한다. 금액 산정 방법은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설명되며, 주정부는 지방 기관이 2011년 재조정 법률에 의해 이양된 공공안전 서비스 책임 수행 의무가 있는 한 해당 금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주정부가 매년 해당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회계감사관이 매월 일반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2011년 지방 수입 기금으로 이전한다. 그 이후 회계감사관은 해당 금액을 2011년 재조정 법률이 명령한 방식으로 지방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본 호에 따른 주정부 채무는 제XVI조 제8항에 의거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제1우선순위와 제XVI조 제1항에 설명된 유권자가 승인한 부채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제2우선순위보다 일반기금에 대한 청구 우선순위가 낮다.

(e) (1) 지역 공공안전 서비스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공교육에 피해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에 따라 제(f)호에 명시된 대로 본 절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지급하기 위해 일반기금에 교육 보호 계정이 만들어진다.

(2) (A) 2013년 6월 30일 전에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매년 6월 30일 전에 재무국장은 제(f)호에 규정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추가 세수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총액을 추정해야 한다. 재무국장은 또한 2013년 1월 10일까지 2012-13년 회계연도 말까지 징수될 추가 세수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B) 2013-14년에서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첫 세 사사분기의 각 분기의 마지막 10일 동안 회계감사관은 해당 회계연도에 제(A)세목에 따라 추정된 총액의 사본의 일을, 해당 금액이 제(D)세목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C) 2012-13년에서 2020-21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에 재무국장은 제(D)세목에 의해 명시된 대로 해당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함께 추가하여 교육 보호 계정에

대한 조정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i) 2012-13년에서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각 회계연도의 마지막 사사분기에 재무국장은 제(A)세목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추정된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 업데이트된 금액에서 이미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ii) 2015년 6월 및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매년 6월 재무국장은 이전 두 회계연도에 대해 제(f)호에 규정된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발생한 추가 세수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총액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전 두 회계연도에 대해 제(i)목에서 업데이트된 추정 금액은 이 최종 결정 시 공제해야 한다.

(D) 제(C)세목에 따라 결정된 합계 금액이 양수인 경우 회계감사관은 해당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 10일 내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합계 금액이 음수인 경우 회계감사관은 총 감소 금액이 여기 설명된 합계 금액과 같아질 때까지 분기별 이전을 중단하거나 줄여야 한다. 제(C)세목의 제(i)조목에 따른 계산 목적 상 분기별 이전 금액은 본 호에 따른 중단이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될 수 없다.

(3) 교육 보호 계정의 모든 기금은 이에 따라 본 항에 기술된 대로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차터 스쿨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된다.

(A) 본 항에 따라 충당되는 금액의 십일 퍼센트는 해당 조항이 유권자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교육법 제84750.5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비례하여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일반 목적의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확장 위원회에 의해 분기마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할당된다. 본 호에 따라 계산되는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할당 금액은 교육법 제84751항의 제(a)호, 제(c)호 및 제(d)호에 명시된 금액으로 상쇄되는데, 이 금액은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교육법 제84750.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어떤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도 전일제 학생 일인당 백달러 (\$100)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B) 본 항에 따라 충당되는 금액의 팔십구 퍼센트는 본 항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2558항 및 제42238항에 따라 계산된 수입 한도와 교육법 제4763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비례하여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에 대한 일반 목적의 기금 및 차터 스쿨에 대한 주정부 일반 목적의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감에 의해 분기마다 할당된다. 이와 같이 계산되는 금액은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2558항 제(c)호, 제42238항 제(h)호의 제(1)목에서 제(7)목, 그리고 제47635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상쇄되는데,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이 금액은 해당 절을 유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차터 스쿨

각각에 대해 교육법 제2558항, 제42238항 및 제4763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어떤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차터 스쿨도 일일 평균 출석 학생 수당 이백 달러 (\$200) 미만의 금액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본 호는 법률적 조치 없이 자동 이행된다. 교육 보호 계정의 기금은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 위원회와 교육부 교육감이 분배하되, 입법부나 주지사가 제IV조 제12항에 따른 연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XVI조 제8항 제(h)목을 시행하거나, 입법부나 주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실패에 따라 기금의 분배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호 계정에 예탁된 기금은 입법부, 주지사 또는 어떤 주정부 기관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

(6)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해당 관리 위원회나 기구가 공청회를 통해 사용 방식을 결정하고 교육 보호 계정 기금을 관리자의 급여, 복리후생 또는 다른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체 판단에 따라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수령한 기금의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수령한 기금 액수 및 해당 기금의 사용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7)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다른 모든 법률적 요건 외에 매년 독립적인 재무 및 규제준수 감사를 통해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수령한 기금을 본 절에 따라 적절히 분배하고 지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 절의 추가 감사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발생시키는 비용은 교육 보호 계정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으며 본 절의 목적 상 관리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 본 절에 따라 교육 보호 계정에 예탁된 금액에 대해 제(f)호에 따라 과세되는 수입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일반 기금 수입”, “일반 기금 세금 수익금” 및 “주정부에 의해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금”으로 간주된다.

(f) (1) (A) 본 법안에 따라 개인 유형자산을 소매로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편(제6001항 이하)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 전까지 모든 소매업자에게 이 주에서 소매 판매되는 모든 개인 유형자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총수입액의 1/4 퍼센트 세율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B) 본 법안에 따라 개인 유형자산을 소매로 판매하는 권리에 대해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권(제6001항 이하)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이외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이 주에서 모든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개인 유형자산의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자산 판매 가격의 1/4 퍼센트 세율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C)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는 본 절의 발효일 이후에 수정된 조항을 포함하여 판매 및 사용세법이 적용된다.

(D) 본 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a)호 제(1)목에 기술된 소득세 단계 및 9.3 퍼센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A) (i) 과세 소득이 이십오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지만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십오만 달러 (\$25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3 퍼센트이다.

(ii) 과세 소득이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지만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삼십만 달러 (\$30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1.3 퍼센트이다.

(iii) 과세 소득이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2.3 퍼센트이다.

(B) 제(A)세목의 제(i)조목, 제(ii)조목 및 제(iii)조목에 명시된 소득세 단계는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h)호에 다르게 규정한 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C) (i) 세입 및 과세법 제19136항 제(g)호의 목적 상 본 항은 발효일 현재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ii)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0편(제17001항 이하) 및 제10.2편(제18401항 이하)의 목적 상 본 항에 따라 수정된 소득세 단계 및 이 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세율은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D) 본 항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c)호 제(1)목에 기술된 소득세 단계 및 9.3 퍼센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30

(A) (i) 과세 소득이 삼십사만 달러 (\$340,000)를 초과하지만 사십만팔천 달러 (\$408,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삼십사만 달러 (\$34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3 퍼센트이다.

31

(ii) 과세 소득이 사십만팔천 달러 (\$408,000)를 초과하지만 육십팔만 달러 (\$68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십만팔천 달러 (\$408,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1.3 퍼센트이다.

(iii) 과세 소득이 육십팔만 달러 (\$680,000)를 초과하는 경우 육십팔만 달러 (\$680,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2.3 퍼센트이다.

(B) 제(A)세목의 제(i)조목, 제(ii)조목 및 제(iii)조목에 명시된 소득세 단계는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의 제(h)호에 다르게 규정한 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만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C) (i) 세입 및 과세법 제19136항 제(g)호의 목적 상 본 항은 발효일 현재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ii) 세입 및 과세법 제2부 제10편(제17001항 이하) 및 제10.2편(제18401항 이하)의 목적 상 본 항에 따라 수정된 소득세 단계 및 이 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세율은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항에 따라 규정되고 부과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D) 본 항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g) (1) 회계감사관은 자신의 법률적 권한에 따라 2011년 지방 수입 기금 및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의 지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이 본 절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회계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보호 계정에 대한 감사를 단행해야 한다.

(2) 법무장관 또는 지역구 검사는 2011년 카운티 지방 수입 기금 또는 교육 보호 계정의 기금이 잘못 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제5항. 발효일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제36항 제(b)호는 본 법안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제36항 제(f)호 제(2)목 및 제(3)목은 본 법안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 현재 발효된다. 본 법안의 기타 모든 조항은 제공된 법안에 투표하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승인할 경우 투표 다음날에 발효된다.

제6항. 충돌 법안

본 법안과 개인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다른 법안이 동일한 주 광역 선거 투표에 회부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안의 조항은 본 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안이 해당 법안과 충돌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 표를 득표하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무효화 된다.

제7항. 본 법안은 교육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2011년 법령 제43장 및 세입 및 과세법 제6051.15항 및 제6201.15항에 따라 예탁된 수입이 “일반기금 수입” 또는 “일반기금 세금 수익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공하게 되는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기금을 제공한다.

발의안 제31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교육법과 정부법에 조항을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에는 취소선이 인쇄되며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정부 성과 및 책임법

제1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정부의 자세를 선언한다:

1. 신뢰성.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는 더 높은 투자 수익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민들은 양질의 정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결과에 책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의 각 부처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정부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은 모든 지출에 대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비용 효율성. 캘리포니아주는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귀중한 공공 자원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효율이 높고 효과적인 활기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투명성. 공공 사업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직성과 개방성이 민주주의의 무결성 및 주민과 정부 간의 관계를 진작한다.

5. 결과 중심주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 목적을 명확하게 공통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법안을 통해 주민들은 주 및 지방 정부의 목적이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그리고 공명정대한 지역사회를 촉진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목적은 고용 증대, 교육 개선, 빈곤 퇴치, 범죄 감소, 건강 증진을 통해 달성된다.

6. 협조. 모든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중복사항을 제거하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서비스를 통합하고

효과가 입증된 전략을 채택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의 삶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7. 주민친화.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알고 있고 주민들이 선출 공무원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역 일선 수준에서 최상의 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8. 지역 고용 창출 지원. 캘리포니아주는 지역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활성화는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진다. 주정부는 지방 정부가 지역적으로 협력해 지역 경제에 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급여수준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의무가 있다.

9. 의견 수렴 자세. 활기찬 상호교류의 민주주의 그리고 양방향의 소통과 책임있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지역사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10. 검소함과 신중함. 오늘날의 주 및 지방 정부는 주민들에게 달성 과제에 대한 설명 없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예산 수립 과정에 사용한다. 이러한 동 기금들은 공공 예산의 기본 목적대로 재원을 목표에 결부시키고 목표 달성 현황을 알리는 예산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항. 2. 목적 및 취지

본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자원을 사용해 주 및 지방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과와 책임을 개선한다.

2. 주정부가 다음과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예산 수립 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a. 목표 달성 프로그램 및 진행 상황에 맞춰 예산을 결정하는데 집중한다.

b. 이개년 예산을 개발하고 예산이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5년에 한 번 이상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c. 주요 프로그램을 새로 제정하기 전에 세금 삭감 여부 및 자금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d. 예산법을 포함하여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3년간 공개해야 한다.

3. 지방 정부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를 개선하고,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민 친화적인 정부를 만든다.

a. 목표 달성 프로그램 및 진행 상황에 맞춰 지방 정부 예산을 결정하는데 집중한다.

b. 자체적으로 직접 달성할 수 없는 지역사회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을 공공 절차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카운티, 시 및 학교에 부여한다.

c. 실행 계획을 승인하는 지방 정부에 공공 프로그램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 비용 집행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한다.

d. 주정부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 규칙을 만들기 위해 진행 및 과정을 저해하는 주 법령 또는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실행 계획을 승인하는 지방 정부에 부여한다.

e.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지방 정부에 권고한다.

f. 실행 계획 개발에 대한 보조금으로 일부 주정부 기금을 지방 정부에 제공한다.

g. 지속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 정부에 매년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사년마다 평가하여 지방 유권자 및 납세자에 대한 지방 선출 공무원의 책임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4.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하고, 예산에 자원을 할당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일에 주민을 참여시킨다.

5. 막대한 추가 기금 없이 현재 주 및 주 정치적 하부조직의 예산 수립 과정에 전담 배치된 기존의 자원을 사용하여 예산 개혁을 단행한다. 또한, 기존 과세 기반 및 수입으로부터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조성한다. 본 법안의 어느 조항도 세금 인상이나 세율 또는 과세 기반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3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8절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8항. (a) 정기 회기 중 예산 법안 외 어느 법안도 하원이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의 사분의 삼이 찬성하여 이 요건을 생략하지 않는 한, 법안이 제출된 후 31일째까지 위원회 또는 각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b) 입법부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을 만들 수 없으며 법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 어느 법안도 하원이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이 요건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에서 3일간 심의하지 않는 한 통과될 수 없다. 자연 재해나 테러리스트 공격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사에 의해 소집된 특별 회기에서 통과되는 긴급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제외한 어느 법안도 수정 조항을 포함하여 인쇄물로 인쇄되어 의원들에게 배부되고 주민들에게 3일 이상 공개될 때까지는 통과될 수 없다. 어느 법안도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 의해 각 의회의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통과될 수 없다.

(c) (1) 본 목의 제(2)항 및 제(3)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 회기에 제정된 법령은 법령 제정일로부터 90일의 기간 후 1월 1일에 발효되며 특별 회기에 제정된 법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특별 회기가 휴회된 날로부터 91일째 발효된다.

(2) 입법부가 2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에 공동 휴회를 재소집하기 위해 휴회한 날 이전에 통과된 법안에 의해 제정되고 해당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령이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이 아닌 경우, 제II조 제10항 제(d)호에 따라 1월 1일 전에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청원서가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법령 제정일 다음 1월 1일에 발표되며, 주민투표 청원서가 법무장관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II조 제9항 제(b)호에 따라 청원서가 주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는 한 제정일로부터 91일째 발표된다.

(3) 선거를 소집하는 법령, 주정부의 일상적인 당기 비용을 위한 세금 징수 또는 총당금을 규정하는 법령 및 긴급 법령은 제정 즉시 발효된다.

(d) 긴급 법령은 주민들의 평화, 건강 및 안전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이다. 법안의 한 조항에는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과 법안은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되는 호명표결에서 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을 통해 별도로 통과되어야 한다. 긴급 법령은 공직을 만들거나 폐지하거나, 공직의 급여, 기간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특권 또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기득권 또는 이권을 만들 수 없다.

제4항. 제9.5항이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에 추가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5항.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었지만 (1) 제XIII B조 제6항에 설명된 주의 지시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주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에 의해 기금이 제공될 경우 당해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를 초과한 주 비용의 순 증가를 초래하거나, (2) 주 세금 또는 다른 주 수입원을 삭감하여 당해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 이상 주정부 수입의 순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은 해당 법안 또는 다른 법안에서 주 비용의 순 증가 또는 주 수입의 순 감소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프로그램 삭감이나 추가 수입 또는 이를 결합한 상쇄 조항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의 임계값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제5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0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0항. (a)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각 법안은 주지사에게 제출된다. 각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해야 법령이 된다. 주지사는 이의서와 함께 법안이 발의된 의회에 법안을 환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는 의사록에 반대 사유를 기록하고 재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각 의회가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 법안은 법령이 된다.

(b) (1) 입법부가 이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에 재소집하기 위해 공동 휴회를 위해 휴회한 날 이전에 통과된 법안에 의해 제정되고 해당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안은 선거구의 경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이 아닌 경우 해당일 이후 30일 내에 환부되지 않으면 법령이 된다.

(2) 이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의 6월 30일 전에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6월 30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까지 환부되지 않으면 법령이 된다. 또한 이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의 9월 1일 전에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고 9월 1일 이후 주지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안의 경우 해당 연도의 9월 30일 이전까지 환부되지 않으면 법령이 된다.

(3) 주지사에게 제출된 기타 다른 모든 법안은 12일 내에 환부되지 않을 경우 법령이 된다.

(4) 입법부가 특별 회기를 휴회하여 이의서가 첨부된 법안의 환부를 막는 경우, 주지사가 법안과 이의서를 주총무처에 계류된 상태로 법안이 제출된지 12일 내에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은 법령이 된다.

(5) 주지사가 이 호의 제(3)목 또는 제(4)목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의 12일째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익일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c) (1) 이년의 입법 회기 중 첫 번째 연도에 제출되어 2년 중 두 번째 연도의 1월 31일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의해 통과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해당 의회에 의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다. 선거를 소집하는 법령, 주정부의 일상적인 당기 비용을 위한 세금 징수 또는 총당금을 규정하는 법령 및 즉시 발효되는 긴급 법령 법안 및 주지사가 거부한 뒤 통과된 법안을 제외한 어느 법안도 ~~前款~~ 연도의 9월 1일 2년 중 두 번째 연도의 6월 30일 이후에는 통과될 수 없다.

(2) 제(1)목에 규정한 대로 이년 중 두 번째 연도의 1월 31일까지 법안을 발의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정된 또는 수정된 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어떤 법안도 이년 중 두 번째 연도에는 제출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d) (1) 입법부는 2년의 입법 회기 중 두 번째 연도의 11월 15일 후에는 주지사에게 어떠한 법안도 제출할 수 없다. 이년 중 두 번째 연도의 7월 4일 다음 첫 번째 월요일에 입법부는 프로그램 감독 및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 회기의 일부로 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입법부는 법령 또는 2개년 예산법에 기술된 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주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주정부를 대신하여 주가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 기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감독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내에 주정부가 운영하거나 또는 주정부를 대신하여 주가 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주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일정에서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검토 순서를 정하여 프로그램 목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종료하는 제안 법률의 형태로 검토 결과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은 오년에 한번 이상 검토해야 한다.

(2) 제(1)목에 따라 프로그램 감독을 위해 수립되는 과정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결과 개선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한 주 법령 또는 규칙이 최소 삼년 이상의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의 검토를 기준으로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요구대로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XI A조에 따라 채택된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의 검토도 포함되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는 실행 계획이 계획에서 파악되는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성을 개선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e) 주지사는 법안의 다른 부분을 승인하면서 하나 이상의 충당금 항목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주지사는 감축하거나 제거한 항목 내역을 조치 사유와 함께 법안에 첨부해야 한다. 주지사는 법안을 발의한 의회에 내역서 및 사유서를 전달해야 한다. 감축되거나 제거된 항목은 별도로 재심의해야 하며 법안과 같은 방식으로 주지사의 거부에 관계없이 통과될 수 있다.

(f) (1) 2004-05년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법안의 제정 이후, 주지사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기금 수입이 당해 연도에 대한 예산 법안의 기준으로 사용된 일반 기금 수입 추정액 아래로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일반 기금 지출이 일반 기금 지출 추정액을 상회하여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두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정적 비상 상태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할 수 있으며 입법부는 이에 따라 특별 회기를 소집해야 한다. 성명에는 재정적 비상 사태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지사가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안 법률과 함께 성명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지사의 성명에 대응하여 입법부는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성명 발표 후 45일째까지 입법부에서 재정적 비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이송하지 못할 경우 입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에게 이송될 때까지는 다른 법안을 제정하거나 공동 휴회를 위해 휴회할 수 없다.

(3) 이 조항에 따라 선언된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에는 이러한 취지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2)목 및 제(4)목의 목적 상 이러한 진술이 포함되면 법안이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따라 선언되고 이러한 취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었으며 재정적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후 45일째까지 통과되어 주정부에 이송된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은 제정 직후 발효된다.

(4) (A) 입법부가 재정적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후 45일째까지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이송하지 못할 경우 주지사는 행정 명령에 의해 헌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기존 일반 기금의 충당금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주지사가 축소 또는 제거한 충당금의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지출이 제(1)목에 따라 추정된 최근 일반 기금 수입의 최근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액수로 제한된다.

(B) 입법부가 개회 중인 경우 입법부는 주지사가 제(A)세목에 따라 행정 명령을 발표한 후 20일 내에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 의한 행정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주지사가 행정

명령을 발표할 때 입법부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 입법부는 30일 내에 재소집하여 위에 명시된 표결을 통해 행정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입법부에 의해 기각되지 않은 행정 명령 또는 행정 명령의 일부는 행정 명령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발효된다. 재정적 비상 사태를 선언하는 성명 발표 후 45일째 이후 제(2)목에 기술된 금지 조항은 (i) 이 조항에 따라 발표된 하나 이상의 행정 명령이 발효되거나 (ii) 입법부가 재정적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이송한 경우 적용이 중단된다.

(C) 제(B)세목에 따라 예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은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통과될 경우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또는 법률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단,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은 입법부 각 의회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제6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IV조 1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2항. (a) (1) 각 홀수 연도의 첫 10일 내에 주지사는 권고되는 주 지출 및 해당 지출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주 총 수입 연도 추정액에 대한 항목별 내역이 포함된 향후 두 회계연도연도에 대한 예산을 설명 통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호에 따라 제출되는 주 지출 권고안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주 총 수입 추정액의 항목별 내역에는 일회성 자원으로 예상되는 자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자원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예산 연도에 대한 예산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는 이년 간의 예산은 집합적으로 이개년 예산이라고 한다. 각 짝수 연도의 첫 10일 내에 주지사는 제정된 이개년 예산을 수정하거나 증대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다.

(b) 이개년 예산에는 성과 및 책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해 권고되는 지출에 사용 가능한 총 자원의 추정액.

(2) 예산 연도 차기 회계연도 이후 세 회계연도에 대한 예상 지출 및 예상 수입의 추정액.

(3) 고용 증대, 교육 개선, 빈곤 퇴치, 범죄 감소, 건강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및 공명정대한 지역사회 조성 목적을 촉진하는 예산 유용성에 대한 진술.

(4)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과 측정 기준 및 주정부 기관 및 프로그램의 성과 기준에 대한 설명.

(5) 예산 전용으로 제안된 공공 자원에 대한 주정부의 각 주요 지출 및 제(3)목에 기술된 전체적인 목적 및 목표와의 관계에 대한 성과 측정 기준에 대한 진술.

(6) 주정부가 공공 자원의 지출 및 투자를 제(3)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를 대신하여 주 기능 및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지출 및 투자와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진술.

(7) 제(3)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진행 현황 및 이전 연도의 예산에 기술된 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공개 보고서.

(c)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해 집합적으로 권고되는 지출이 추정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는 지출 감소 또는 추가 수입을 제공하는 자원의 감축 또는 둘 다를 권고해야 한다. 실제적인 한도에서 권고안에는 지출 감소나 추가 수입이 주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의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지사는 이개년 예산과 함께 이개년 예산에 포함된 총당금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 및 오개년 자본 기반 구조 및 전략적 성장 계획을 법령에 의해 명시된 대로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d) 주지사에 의해 제안된 예산이 (1) 제XIII B조 제6항에 설명된 주의 지시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을 포함한 새로운 주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에 의해 기금이 제공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25,000,000달러 이상 주 비용의 순 증가를 초래하거나 (2) 주 세금 또는 다른 주 수입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25,000,000달러 이상 주 수입의 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법안에서는 주 비용의 순 증가 또는 주 수입의 순 감소에 준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줄어든 프로그램이나 추가 수입, 또는 이 모두에 대한 상세 조항을 제안해야 한다. 이 호에 명시된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의 임계값은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b) (e) 주지사 및 주지사 당선자는 주정부 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이개년 예산 및 모든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f) (f) (1) 이개년 예산 및 모든 추가경정예산에는 예산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권고되는 지출을 세분화한 예산 법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법안은 추가 예산을 제안하는 법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2) 예산 법안 및 주지사에 의해 제출된 대로 예산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제공하는 기타 법안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의장이 각 의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3) 매년 5월 1일 이전 입법부의 각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 법안을 심의한 후, 각 의회는 예산 법안을 양원 협의회가 포함된 합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 법안 및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을 검토하고 매년 6월 1일까지 각 의회에 권고안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합동 위원회 외에 정책 위원회에 대한 법안 추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3) (4) 입법부는 예산 법안 및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을 매년 6월 15일 자정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차기 회계연도에 대해 예산 법안 또는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에 포함되는 총당금은 당해 예산 연도에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

(4) (5) 예산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주지사가 제안하는 긴급 법안 또는 입법부의 급여 및 비용 총당금을 제외하고, 입법부는 예산 법안이 제정되는 화제 예산 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을 위한 기금을 총당하는 법안을 주지사에게 보내어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d) (g) 예산 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법안에는 두 개 이상의 총당금 및 하나의 명시된 목적을 위한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공립 학교를 위한 총당금과, 예산 법안, 추가경정예산 법안 및 해당 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의 총당금을 제외하고,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총당금은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을 통해 통과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e) (h) (1) 법률 또는 헌법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법안, 추가경정예산 법안 및 해당 예산 법안을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은 각 의회의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을 통해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통과되는 경우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또는 법률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본 호의 어떤 내용도 본 항의 제(d)호 제(g)호 및 본 조 제8항의 제(b)호에 포함된 공립 학교를 위한 총당금의 투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항의 목적 상 “예산 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법안과 관련된 총당금을 규정하는 기타 법안”은 입법부에 의해 통과된 예산 법안 또는 추가경정예산 법안의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 법안으로만 구성된다.

(3) 본 항의 목적 상 “예산 법안”은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법안을 의미한다.

(f) (i) 입법부는 모든 주정부 기관의 예산 제출, 승인, 집행 및 청구 제출을 통제할 수 있다.

(g) (j) 2004-05년 회계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의 경우, 2개년 예산과 각 회계연도에 대해, 해당 예산 법안의 통과일 현재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일반 기금으로부터 총당되는 모든 총당금과, 제XVI조 제20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 안정화 계정으로 이전된 일반 기금 금액을 합한 총액이,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 예산 법안의 통과일 현재 추정된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전된 일반 기금 수입, 이전액 및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금으로부터 총당하는 당해 예산 연도 또는 차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법안을 입법부가 주지사에게 보내 심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되는 일반 기금 수입, 이전 및 잔액의 그 추정액은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예산 법안에 기술되어야

한다.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는 예산 법안에는 입법부가 추정한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입과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 기금 수입의 차액을 포함해, 일반 기금 수입의 추정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2년 예산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본 호에 설명된 총 일반 기금 채무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h) (k) 본 항의 제(c) (f)호, 본 조의 제4항, 제III조의 제4항과 제8항을 포함하여 법 또는 이 헌법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법안이 6월 15일 자정까지 입법부의 의해 통과되지 않는 연도에는, 6월 15일 자정부터 예산 법안이 주지사에게 제출되는 날까지 모든 정기 회기 또는 특별 회기 동안 입법부 의원의 급여 지급, 출장비 또는 생활비 상환을 위해 당기 예산 또는 향후 예산으로부터 충당금을 제상할 수 없다. 이 호에 따라 몰수된 어떠한 급여 또는 출장비 또는 생활비 상환액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는다.

제7 항. 제XI A조는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XI A조 지역사회 전략 실행 계획

제1 항. (a)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방 정부 기관이 지출의 목적 및 목표 달성에 진척이 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길 기대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헌법의 기타 다른 조항의 요건 외에 각 지방 정부 기관이 채택하는 예산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고 기관의 권한과 의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1) 지방 정부 기관의 기능, 역할 및 지역적으로 설정된 우선순위에 적용하여, 고용 증대, 교육 개선, 빈곤 퇴치, 범죄 감소, 건강 증진 등의 목표에 반영된 대로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공명정대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 유용성에 대한 설명.

(2) 제(1)목에 따라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지방 정부 기관이 설정한 목표 달성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반적인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

(3) 예산에 계상된 공공 자원에 대한 정부의 각 주요 지출에 대한 결과 측정 방식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1) 목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이 설정한 전체 목표와의 상관성에 대한 설명.

(4) 지방 정부 기관이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제(1) 목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원의 지출 및 투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가에 대한 설명.

(5) 제(1)목에 따라 지방 정부 기관이 설정한 목표 달성 진척 현황과 이전 연도의 예산에 명시된 측정 방식에 따른 성과 달성에 있어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공개 보고서.

(b) 각 지방 정부 기관은 제(a)호 제(1)목에 따라 지역사회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제안된 예산 개발에 있어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의 참여를 장려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c) 본 항은 2014년에 시작하는 지방 정부 기관의 예산 연도에 발효된다.

(d) 본 항의 조항은 자동 이행되며 지방 정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항. (a)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의 조치에 의해 지역사회 전략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고 칭함)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카운티는 기존 기능 또는 서비스가 실행계획의 예상 범위 내에 포함되는 카운티 내 모든 다른 지방 정부 기관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카운티 내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은 감독 위원회에 실행계획을 시작하거나, 계획 과정에 참여하거나, 실행계획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은 인근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의 참여를 장려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실행계획의 초안을작성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항목이 포함된다:

(1) (A) 실행계획이 본 조의 제1항 제(a)호를 포함하여 제(1)목에서 제(5)목에 기술된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요약하고, (B) 실행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공공 서비스 및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고, (C) 이러한 서비스가 실행계획에 따라 왜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행되는지 설명하고, (D)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부터 받은 기금을 포함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을 규정하고, (E)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사회 내 불균형을 고려하고, (F) 실행계획이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채택된 예산과 어떻게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2) 참여하는 지방 정부 기관이 원하는 결과와 이러한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

(3) 주민 및 주정부에 정기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수단.

(c) (1) 실행계획은 카운티 내에서 참여하는 각 지방 정부 기관의 집행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최소 수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계획은 카운티, 실행계획에 따라 카운티 내 주민의 과반수 이상에게 지방 자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 기관, 그리고 카운티 내 공립 학교 학생의 과반수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교육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카운티를 포함하여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실행계획의 승인 또는 실행계획의 수정에는 해당 기관 집행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다. 실행계획은 본 목에 규정한 바대로 실행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지방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일단 실행계획이 채택되면, 카운티는 실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하고 계약 당사자인 각 지방 정부 기관 집행부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해 승인될 경우, 참여한 각 기관의 의무와 책무를 확인하고 할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 본 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본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 온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하는 경우 실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실행계획에서 확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기관에 할당된 주 또는 지방 기금을 통합할 수 있다.

제3항. (a)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실행계획의 당사자들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는 법령 또는 규칙을 포함해, 주 법령 또는 규칙이 실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거나, 실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한 경우,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법령 또는 규칙의 목표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조항을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의도된 주 목표에 대한 설명, 바람직한 결과를 저해하는 본 규칙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 제안된 지역사회 규칙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및 공명정대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결과에 어떻게 지역사회 규칙이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 상, 조항이 법령 또는 규칙의 정책 및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법령 또는 규칙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다.

(b) 당사자들은 하나 이상의 주 법령에 대해 제(a)호에 설명된 것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조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정기 또는 특별 회기 동안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입법부가 결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조항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실행계획의 당사자들이 해당 규칙은 실행계획의 목표를 저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규칙을 공포하거나 관리하는 데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항의 제(a)호에 설명된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부서는 60일 내에 해당 제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행계획을 받은지 60일 내에 기관이나 부서가 조항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항은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 규칙과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항에 반대하는 모든 조치에는 반대 이유를 기술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d) 본 항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주 기금을 지원 받는 주 프로그램의 운영 직접 규정하는 법령과 규칙에만 적용된다.

(e) 본 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은 본 항에 의거 갱신되지 않을 경우 발효일로부터 사년 후 자동으로 만료된다.

제4항. (a)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은 이와 같이 본 조에 따라 준비된 지역사회 전략 실행계획에 포함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재원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 재무부에 조성된다.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자금은 본 조에 규정된 목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본 조가 추가된 법에 따라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이전된 수입은 제XIII B조에 따라 충당될 수 있는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 간주된다.

(b)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은 법령에 따라, 실행계획에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는 기금의 지출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카운티에 분배되어야 한다.

(c) 실행계획에 따라 교육구에 할당되는 모든 기금은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 이외의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기관이 결정한 바대로 어느 재원으로부터나 지급될 수도 있다. 실행계획에 따라 교육구에서 수령하는 할당금은 제XVI조 제8항의 목적 상 할당된 세금의 지방 수익금 또는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제5항. 본 조의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채택한 카운티는 사년마다 한 번 이상 실행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고 이러한 주민의 의견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참여하는 기관이 실행계획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평가에는 해당 정부 서비스 이행 및 효과성 면에서의 참여하는 기관 간 성과 개선 정도; 지역사회 불균형의 해소 진척 상황; 및 해당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표가 실행계획의 개발 및 이행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제1항 제(a)호를 포함해 제(1)목에서 제(5)목에 기술된 목적 및 목표가 달성된 정도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항. (a) 주정부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제2항에 따라 채택된 실행계획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목표에 부합하도록 주정부 또는 주정부 부서나 기관은 지역 수준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하나 이상의 지방 정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제2항의 요건에 따라 채택된 실행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b) 주정부는 재정 및 규제적 보조금을 통해 지방 정부 기관이 경제 번영, 쾌적한 환경 및 공명정대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지리적 규모에서 가장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발적이고 협력적으로 결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방 정부 기관 및 주민 대표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주정부는 자발적으로 지역 협력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의 목적 및 목표를 향해 진척이 있는 참여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해, 해당하는 경우, 인프라와 인적 서비스 마련을 위한 추가 운용하는 기금 제공을 우선 고려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촉진하고 지역 내 지방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지방 정부 기관의 해당 계획에는 제1항 제(a)호를 포함해 제(1)목에서 제(5)목에 기술된 목표와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항. 본 조의 어느 항목도 지방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존 권한도 폐지하거나 대체할 의도가 없으며, 지방 정부 기관이 정부 서비스 이행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지역 프로그램 및 계획에

개발하고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금지할 의도가 없다.

제8항. 본 조의 목적 상 "지방 정부 기관"은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등 기타 다른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한다.

제8항.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조 제29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29항. (a) 입법부는 자체적으로 부여되거나 주정부에 의해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를 위해 징수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로부터 과생되는 수입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에 부여할 수 있다. 계약은 일반 또는 직접 예비 선거에서 각 관할구역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에 의해 승인되어야 발효된다.

(b) 제(a)호에도 불구하고 이 호의 발효일 이후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는 Bradley-Burns 균일 지방 판매 및 사용세법 또는 기타 후속 조항에 따라 해당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에 의해 부과되고 해당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를 위해 주정부가 징수되는 판매 또는 사용세로부터 과생되는 수입을 서로 간에 분배하기 위한 계약을, 각 계약을 제안하는 법령 또는 결의가 계약 당사자인 각 관할구역 집행부의 삼분의 이 이상의 투표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체결할 수 있다.

(c) 제(a)호에도 불구하고 제XI A조에 따라 채택된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에 참여하는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기타 교육구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포함한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기관에 할당된 증가예산세로부터 받는 수입을 서로 간에 분배하기 위한 계약을, 각 계약을 제안하는 법령 또는 결의가 계약 당사자인 각 관할구역 집행부의 삼분의 이 이상의 투표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체결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XI A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각 참여 기관의 예산과 부합해야 한다.

제9 항. 제6장(제55750항 이하)은 정부법 제5권 제2부 제2편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6장.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

55750. (a) 세입 및 과세법 제7101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3-14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세입 및 과세법 제6051항에 의거 0.035 퍼센트의 요율로 징수되는 수입, 순환급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 A조 제4항에 의거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탁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은 조성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입법부가 판매세 과세 기반을 줄이고 이에 따라 수입 측면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이 2013-14년 회계연도에 받는 기금보다 감소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당해 회계연도에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에 추가 시 2013-14년 회계연도에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금과 같은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55751. (a) 세입 및 과세법 제7101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3-14년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세입 및 과세법 제6201항에 의거 0.035 퍼센트의 요율로 징수되는 수입, 순환급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 A조 제4항에 의거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탁되어야 하며 해당 기금은 조성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입법부가 사용세 과세 기반을 줄이고 이에 따라 수입 측면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이 2013-14년 회계연도에 받는 기금보다 감소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당해 회계연도에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에 추가 시 2013-14년 회계연도에 기금을 통해 받는 수입금과 같은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55752. (a) 2014-15년 회계연도 및 이후의 매 회계연도에 회계감사관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I A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이전 회계연도 6월 30일 이전에 발효되는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이 항에 따라 기금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감사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한 각 카운티에 분배해야 한다. 기금은 회계연도의 첫 번째 사사분기에 분배되어야 한다. 한 회계연도에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의 분배 가능한 총액 중에서 회계감사관은 각 카운티에 이에 따라 실행계획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성과 및 책임 신탁 기금을 제(c)호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대해 계산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분배해야 한다.

(b) 본 항에서 사용되는 바대로,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이 적용되는 인구수는 참여하는 모든 지방 정부 기관의 인구수를 합한 지리적 영역의 인구수이다. 단, 하나 이상의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받는 거주민은 한 번만 계산되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최근의 재무부 인구통계 데이터에 따라,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지리적 영역의 주민수 계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c) 회계감사관은 각 카운티의 실행계획이 적용되는 인구수를 제(a)호에 따라 기금을 제공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실행계획에 대해 계산된 전체 인구의 비율로 결정해야 한다.

(d)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 A조 제4항 및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2011년 재조정 및 본 항이 추가된 법안에 따라 발생하는 지속적인 절감액을 일부 나타낸다. 본 항에 따른 첫 번째 기금 할당 이후 사년간 입법분석관실은 실행계획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계획이 서비스 이행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한 정도 또는 추가 기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 감소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10항. 본42246항이 다음과 같이 교육법에

추가된다:

42246. 교육구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I A 조에 의해 승인된 커뮤니티 전략 실행계획에 참여함에 따라 제공하는 또는 수령하는 기금은 제42238항 또는 후속 법령에 의거한 교육구 수입 한도의 주 지분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제11항. 제9145항이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된다:

9145.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9.5항 및 제12항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기존 주 프로그램 또는 기관의 범위 확장”에는 다음 중 어느 항목도 포함되지 않는다:

(1) 2008-09년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예산의 균형을 맞추거나 추정 결손금을 해결하기 위해 감축되거나 제거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 재개.

(2) 생활비 또는 작업량의 증가 그리고 입법부가 승인한 양해 각서에 의해 인정된 증가분을 포함하여, 기존의 법적 책임을 이행코자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 기금의 증대.

(3) 연방법 또는 본 항이 추가된 법안의 발효일 현재 발효 중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 대한 주 기금의 확대.

(4) 기금을 충당하는 법령에서 파악된 대로 주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 대한 일회성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기금 제공.

(5)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 B조 제6항 제(b)호 제(5)목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금 제공.

(b) “주 비용”에는 주 일반의무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추가 수입”에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변경된 특정 변경사항으로 초래되는 수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수입 징수를 책임지는 주정부 기관이 정량화하고 지속적인 증가로 판단한 주의 수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제12항. 제11802항이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된다:

11802.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주지사는 주 직원 및 기타 이해 당사자와 논의 후 입법부에 캘리포니아주 헌법 IV조 제12항의 성과 기준 예산 책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2015-16년 회계연도 및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제13항. 제13308.03항이 다음과 같이 정부법에 추가된다:

13308.03. 제13308항에 기술된 요건 외에 재무국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매년 5월 15일까지 입법부의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양원에 계류 중인 예산 법안에서 제안된 바대로, 또는 해당하는 경우, 제정된 예산 법안에서 계상한 바대로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의 주 수입 및 주 지출 상의 갱신된 추정액을 입법부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b) 이개년 예산 또는 기타 추가 정정 예산이 입법부에 의해 통과되기 직전에, 예산 법안에 통합되는 예산 연도 및 차기 회계연도의 총 수입 및 총 지출 내역을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c) 매년 11월 30일까지 채택된 예산에 기술된 수입 및 지출에 현재 연도 당일까지의 실제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최신 재무 현황 자료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요건은 입법분석관이 재정 개요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다.

제14항. 개정

본 법안의 법률 조항은 입법부 양원 삼분의 이의 투표로 승인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의해 본 법안의 목적을 확대하기 위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제15항. 가분성

본 법안의 조항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조항의 적용이 위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머지 조항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법안의 조항의 한도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6항. 발효일

본 법의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2014년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에 발효된다. 본 법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법의 기타 항은 법이 채택되는 선거 다음 날 발효된다.

제17항. 법제실

(a) 주민들은 본 법안에 의해 제안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개정사항이 2009-10년 정기 회기의 하원 헌법 개정 번호 4(Res. Ch. 174, Stats. 2010) (이하 ACA 4)에 의해 제안되고 2014년 11월 4일 주 광역 총선 투표 용지에 게재될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개정사항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선언한다.

(b) 선거법 제9086항 및 제9091항, 정부법 제88002항 및 제88005.5항에 따라 법제실이 ACA 4 본문을 준비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기존 조항은 본 법안에 의해 개정된 대로 해당 항의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법제실은 ACA 4에 의해 제안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변경사항을, 동 법안에 의해 개정된 바대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의 조항과 구별할 수 있도록 ACA 4의 전문을 준비하고 교정해야 한다. 주무장관은 본 항에 따라 법제실에서 준비하고 교정한

대로 ACA 4의 전문을 2014년 11월 4일 주 광역 총선 투표를 위한 투표 안내 책자에 게재해야 한다.

발의안 제32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정부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제1항. 법안명, 배경 및 목적의 선언

A. 특정 이익 집단이 정부에 대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매년 기업 및 노조가 수백만 달러를 정치인들에게 기부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거대한 지출 아래 묻히고 있다.

B. 수년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캘리포니아주의 부채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많은 지방 정부가 파산 직전의 기로에 서있다. 너무나 자주 정치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기부한 기업, 노동조합 및 정부 계약업자에 편중된 특정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다.

C. 이러한 기부 결과 대기업을 위한 특별 세제 혜택, 사설 노동조합을 부유하게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부 프로그램, 공무원 노조원을 위한 지지할 수 없는 연금, 혜택 및 급여를 모두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하게 된다.

D. 일부 관할구역에서는 기부 한도를 설정했지만 기업 및 노조의 정치 자금이 정치 과정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늦추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치를 뒤덮는 많은 돈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 고용주와 노조는 종종 근로자들에게 기업 또는 노조의 정치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때로는 은연중에 또 공공연하게 압력을 가한다. 이들의 목적은 자금을 공급하는 근로자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다.

E. 이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기업 및 노동조합의 기부에 의한 주정부의 실제적인 부패 및 부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특정 이익 자금 중지법을 제정한다:

1. 기업 및 노동조합의 후보자에 대한 기부 금지;
2. 정부 계약업자가 계약을 수여한 정부 공무원에게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3. 기업과 노동조합이 근로자와 노조원의 급여에서 강제적인 원천징수방식으로 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금지;
4. 직원들의 모든 정치적 기부 행위가 완전히 자발적인 성격의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제2항. 특정 이익 자금 중지법

제1.5조(제85150항 이하)가 정부법의 제9권 제5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5조. 특정 이익 자금 중지법

85150. (a) 법률 및 본 권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위원회를 포함해, 기부 자금이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하는 데 사용될 경우, 어느 기업,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타 다른 후보자,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부할 수 없다.

(b) 법률 및 본 권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 계약업자 또는 정부 계약업자가 후원하는 위원회도 해당 선출된 공무원이 계약을 받주, 허가 또는 수여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기간과 계약 기간 동안 정부 계약업자에게 계약을 받주, 허가, 수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데 참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공식 위치를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 선출된 공무원 또는 선출된 공무원이 관리하는 위원회에 기부해서는 안된다.

85151. (a) 법률 및 본 권의 어떤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정부 계약업자 또는 정부 고용주도 근로자의 임금, 수입 또는 보수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어떠한 금액도 공제할 수 없다.

(b) 본 항은 기부 행위가 1년 이하의 유효 기간이 있는 해당 근로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가 제(a)호에 의해 금지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고용주, 노동조합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c) 본 항은 퇴직연금, 건강, 생명, 사망 또는 장애 보험, 기타 유사한 수당에 적용되지 않으며 미합중국법 제26권 제501(c)(3)항에 따라 구성된 자선 단체 기부금을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5152. 본 조의 목적 상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기업”은 캘리포니아 주, 미국의 다른 주,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에 따라, 또는 미국 의회법에 따라 구성된 모든 기업을 의미한다.

(b) “정부 계약업자”는 정부 고용주에게 상품, 부동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고용주와의 계약 당사자인, 정부 고용주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 계약업자에는 정부 고용주와의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 노동조합이 포함된다.

(c) “정부 고용주”란 카운티, 시, 차터 카운티, 차터 시, 차터 시 및 카운티, 교육구, 캘리포니아 대학교, 특정 지구, 위원회,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또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치 정치적 하부조직을 의미하며 미국 정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d)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참여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불평, 노동 분쟁, 임금, 급여, 고용 시간 또는 작업 조건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논의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 기관

31

32

또는 근로자 대표 위원회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

(e) “정치적 목적”은 후보자의 지명이나 선출, 법안의 인증이나 통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관리하는 위원회, 주 중앙 위원회, 카운티 중앙 위원회를 포함한 정당의 위원회, 또는 회원 단체,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된 정치 대책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거나 존재하는 조직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f)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정부 고용주의 직원인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g) 개정된(제9권(제81000항 이하)) 1974년 정치개혁법 또는 공정 정치 실천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규칙으로 정의된, 본 조에 사용된 기타 모든 용어는 여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3항. 실행

(a) 본 법안의 어떤 조항이나 조항 일부, 또는 해당 조항 또는 일부의 개인이나 단체, 상황에서의 적용이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 또는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 조항 일부 및 적용은 무효 조항, 조항 일부 또는 적용을 제외하고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b) 본 법안은 어떠한 기존 계약 또는 단체 교섭 합의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본 법안에 위배되는 모든 신규 또는 수정 계약이나 단체 교섭 합의는 무효가 된다.

(c) 본 법안은 해당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다. 피고용인이나 노조원이 본 법안 조항의 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본 법안 조항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피고용인 또는 노조원에 있다.

(d) 정부법 제81012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 조항은 입법부에 의해 수정될 수 없다. 본 법안은 이후 주민발의 법안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제10항 제(c)호에 의거해서만 수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발의안 제33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보험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제1항 법안명

본 법안은 2012 자동차보험할인법으로 명명한다.

제2항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험감독원이 보험료를 규제하고 자동차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할인 범위를 결정한다.

(b) 이용 보험사에 관계없이 주의 의무 보험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캘리포니아 보험 소비자가 할인가격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c) 자동차 보험 유지 소비자 할인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해당 할인은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d) 지속적인 보험 가입 유지를 위한 개인별 할인은 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 상품을 구매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

제3항 목적

본 법안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의무보험가입법을 준수한 캘리포니아 보험 소비자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4항 제1861.023항이 다음과 같이 보험법에 추가된다:

1861.023. (a) 제1861.02항 제(a)호 제(4)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제1861.02항에 의거 모든 보험 정책에 대해 보험 가입 유지를 선택적인 자동차 보험료 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

(b)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캘리포니아 자동차할당리스크플랜(California Automobile Assigned Risk Plan) 또는 캘리포니아 저가자동차보험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보험 등 공인 보험사에서 중단 기간 없이 자동차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했음을 뜻한다.

(1)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피보험자의 군복무로 인해 보험 미가입 기간이 생긴 경우에도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지난 오년 동안 휴직이나 해고에 따른 실직으로 인해 최대 18개월까지 미가입 기간이 생긴 경우에도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지속적인 보험 가입은 사유에 관계 없이 이전 오년 동안 90일 이하의 미가입 기간이 있더라도 그대로 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은 부모의 지속적인 보험 가입 할인 자격에 따라 지속적인 보험 가입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 지속적인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없는 소비자는 비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은 소비자가 지속적인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었다면 받았을 할인률에 비례한다. 비율에는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한 이전 오년 동안의 가입 연수가 반영된다.

제5항 투표 법안의 상충

본 법안과 보험 가입의 지속과 관련된 법안이 동일한 주 광역 투표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법안이 과반수 이상 특표를 하는 경우 본 법안의 조항 전부가 우선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6항 개정

본 법령의 조항은 양원의 호명표결에서 전체 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에 의해 본 목적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에 의해 개정될 수 없다.

제7항 가분성

주민을 위해 본 법령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며, 본 법령 조항 또는 이에 따른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무효 사항은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제외되면 효력이 생기는 본 법령의 적용이나 기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34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발의 법안은 형법 조항을 수정하고 폐지하며 정부법 조항을 추가하기 때문에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에는 취소선이 인쇄되며 제안된 신규 추가 조항은 새로운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SAFE 캘리포니아법

제 1항 법안명

본 주민발의 법안명은 “캘리포니아법의 절약 및 의무, 완전한 집행”이며 약자로 “SAFE 캘리포니아법(The SAFE California Act)” 라 명명한다.

제2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본 문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살인범과 강간범은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매년 전체 살인 사건의 46 퍼센트, 강간의 56 퍼센트나 되는 높은 비율의 사건이 매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제한적인 법집행 자원은 보다 많은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범죄자를 우리의 길거리에서 사라지게 하며,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 경찰, 보안관, 지방 검찰은 현재 강간 및 살인 사건의 증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DNA 검사 같은 첨단 법의학 수사를 진행하기는 커녕 살인 및 성범죄 수사관의 수를 늘릴 자금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법집행기관에는 법의 완전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강간 및 살인 사건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범죄자가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3. 많은 사람들이 사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보다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직

사형 전담 검사이자 판사인 Arthur Alarcon과 법학과 교수 Paula Mitchell의 연구에 따르면 1978년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사형 집행에 사용한 비용은 \$4십억에 달하며 사형 재판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비해 20배나 비용이 많이 든다. 사형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세금은 매년 \$1억 이상 절감될 수 있다. 절감된 금액은 범죄 예방 및 기소에 사용될 수 있다.

4. 살인범 및 강간범이 거리를 활보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납세자들이 낸 수억 달러의 돈을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소수의 범죄자들을 영원히 감옥에서 지내게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사형에 처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폭력 예방과 교육에 사용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5. 사형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단 한 명의 죄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오년 동안 \$10억 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 \$10억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법집행, 우리 아이들의 학교,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투자될 수 있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자를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비용을 절감시킨다.

6. 미국에서 무죄인데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수는 100 명이 넘으며 이 중 일부에게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전문가들은 Cameron Todd Willingham이 어린이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사형을 집행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형제에는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7.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목격자 확인, 구식 법의학, 지나치게 열성적인 기소로 인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다. 주법은 심지어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감옥에 보내 납세자와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소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형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면 최소한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게 된다.

8.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현재 노역을 하는 사형수의 비율은 1 퍼센트도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배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은 경비가 철저한 감옥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번 돈은 Marsy 법에 의해 보장된 피해자 권리에 따라 피해자보상기금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9.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은 큰 의미가 없다. 사형건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은 비통한 가족에게 보다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확실한 처벌이다.

10. 본 법안의 소급 적용을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종식됨으로써, 법집행 자원은 살인 및 강간

33

34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고 판결의 공정성, 질, 확실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캘리포니아주민은 본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 및 취지를 선언한다:

1. 보다 많은 살인범과 강간범을 체포하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한다.
2. 오년 동안 \$10억의 세금을 절감하며 절감된 돈이 지역 법집행, 우리 아이들의 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3. 사형제 대체를 통해 절감된 돈의 일부로 SAFE 캘리포니아기금을 만들고 지역 법집행기관, 특히 경찰, 보안관, 검찰에 자금을 지원하여 살인과 강간 사건 해결률을 높인다.
4.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위험성을 제거한다.
5. 특수 상황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평생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서 의무 노역을 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벌어들인 돈은 희생자보상기금을 통해 희생자를 돕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6. 비통한 피해자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기억을 견뎌야 하는 수십 차례의 재판일과 연기 등 사형건과 관련하여 25년 이상 이어지는 심의 과정을 없앤다.
7.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종식시키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법집행 자원을 마련한다.
8. 사형의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대체를 통해 본 법안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 질, 확실성을 달성한다.

제 4항 형법 제190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0. (a)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형,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또는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적용되는 처벌은 제190.1항, 제190.2항, 제190.3항, 제190.4항 및 제190.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제(b)호, 제(c)호 또는 제(d)호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15년형에서 종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b) 제(c)호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희생자가 제830.1항 제(a)호, 제830.2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c)호, 제830.33항 또는 제830.5항의 제(a)호에 정의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고 업무 수행 중인 치안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c)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희생자가 제830.1항 제(a)호, 제830.2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c)호, 제830.33항 또는 제830.5항의 제(a)호에 정의된 바에 따라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에 목숨을 잃었고, 업무 수행 중인 치안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소가 이루어져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주교도소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의 처벌을 받는다:

(1) 피고가 분명하게 치안관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경우.

(2) 피고가 제12022.7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분명하게 치안관에 큰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경우.

(3) 피고가 직접 제12022항 제(b)호를 위반하며 위험한 또는 치명적인 무기로 공격을 저지른 경우.

(4) 피고가 직접 제12022.5항을 위반하며 총기로 공격을 자행한 경우.

(d)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밖에 있는 타인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자 총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살인 행위를 자행한 경우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의 주교도소 수감형을 받는다.

(e) 제3편 1권 제7장 제2.5조(제2930항 이하)는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최소 형량을 줄이는 데 적용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최소 구금 기간을 복역하기 전에는 가석방될 수 없다.

(f)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본 조항에 따라 형량을 선고 받은 모든 사람은 제2700항에 의거 교도재활부의 규정 및 법규에 따라 경비가 삼엄한 감옥에서 수감 기간 동안 매일 여러 시간 충실하게 노동을 해야 한다. 재소자에게 배상 벌금 또는 배상 명령 이행의 의무가 있는 경우 교도재활부 장관이 제2085.5항 및 제2717.8항에 의거 교도재활부의 규정과 법규에 따라 재소자의 임금 및 신택제와 예치금에서 금액을 공제한 후 캘리포니아 피해자보상및정부청구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로 해당 자금을 송금한다.

제5항 형법 제190.1항이 폐지된다.

190.1. 본 장에 의거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독립 단제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a) 피고의 유죄 여부가 먼저 결정된다. 사실 심리에서 피고의 일급 살인 죄가 유죄로 판명되면 이와 동시에 피고가 일급 또는 이급 살인 범죄에 대한 이전 법적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190.2항 제(a)호 제(2)목에 의거 기소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제190.2항에 열거된 모든 특수 상황에 대한 진실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b) 피고가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특수 상황 중 하나가 피고가 일급 또는 이급 살인 범죄에 대한 이전 법적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하는 제190.2항 제(a)호 제(2)목에 의거 기소된 경우 즉시 해당 특수 상황의 진실 여부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

(c) 피고가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제190.2항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과 관련된 기소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제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을 이유로 하는 모든 무죄 답변에 대해 피고의 정신상태를 제190.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단한다. 정신상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부과할 처벌 문제에 대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제190.3항 및 제190.4항의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6항 형법 제190.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0.2. (a)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에 대한 처벌은 제190.4항에 의거 다음의 특수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에서의 종신형으로 결정된다:

(1) 살인이 고의적이며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행된 경우.

(2) 피고가 이전에 일급 또는 이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본 목의 목적을 위해 다른 관할권에서 저지른 범죄로, 캘리포니아에서 저질렀다고 가정하는 경우 일급 또는 이급 살인으로 처벌되었을 범죄는 일급 또는 이급 살인으로 간주한다.

(3) 본 법적 절차에서 피고가 하나 이상의 일급 또는 이급 살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 어떤 장소나 지역, 주거지, 건물, 구조물에 파괴력이 강한 폭발물이나 폭탄, 폭약을 설치하거나 숨겨두는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5) 합법적인 체포를 피하거나 막으려는 목적 또는 합법적인 구금 회피를 완벽하게 하거나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6) 피고가 파괴력이 강한 폭발물이나 폭탄, 폭약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한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하거나 이렇게 되도록 한 경우의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가 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7) 피해자가 제830.1호, 제830.2호, 제830.3호, 제830.31호, 제830.32호, 제830.33호, 제830.34호, 제830.35호, 제830.36호, 제830.37호, 제830.4호, 제830.5호, 제830.6호, 제830.10호, 제830.11호 또는 제830.12항에 정의된 치안관으로 업무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살해 되었고, 업무 수행 중인 치안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위에 열거한 조항에 정의된 치안관 또는 전직 치안관으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살해되는 경우.

(8) 피해자가 연방 법집행관 또는 요원으로 업무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살해 되었고, 업무 수행 중인 연방 법집행관 또는 요원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연방 법집행관 또는 요원으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복 살해된 경우.

(9) 피해자가 제245.1항에 정의된 소방관으로 업무 수행 중에 의도적으로 살해 되었고, 업무 수행 중인 소방관이었음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합당한 근거에 의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10) 피해자가 어떤 형사 또는 청소년 관련 법적 절차에서 목격자의 증언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러진 의도적 살인 범죄의 목격자인 경우로, 살인 행위가 목격한 범죄의 자행

또는 자행 시도 중에 일어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 목격자로 모든 형사 또는 청소년 관련 법적 절차에서 증언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보복 살해된 경우. 본 목에서 사용된 “청소년 관련 법적 절차”는 복지제도법 제602항 또는 제707항에 의거한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11)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주 검찰 또는 연방 검찰의 검사, 부검사, 전직 검사, 전직 부검사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12)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주, 연방 체제 하에서 법정 기록을 갖고 있는 판사 또는 전직 판사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13) 피해자가 연방 정부 또는 본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또는 주정부의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또는 임명 공직자이거나 전직 공직자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보복으로 또는 업무 수행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14) 살인의 수법이 극히 예외적인 악행을 드러내며 특히 악랄하거나,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한 경우. 본 조항에서 사용된 “극히 예외적인 악행을 드러내며 특히 악랄하거나, 극악무도하거나, 잔인함”이란 문구는 피해자에게 불필요할 정도로 고통을 가하며 자행된 파렴치하거나 무자비한 범죄를 의미한다.

(15) 피고가 잠복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

(16) 피해자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출신국의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살해된 경우.

(17) 피고가 다음의 중범죄에 관여 또는 공모하는 동안, 또는 다음의 중범죄를 자행했거나 자행 시도에 관여 또는 공모하는 동안, 또는 다음의 중범죄를 자행하거나 자행 시도 후 즉시 도주하는데 관여했거나 공모하는 동안, 살인 행위가 자행된 경우:

(A) 제211항 또는 제212.5항을 위반한 강도 행위.

(B) 제207항, 제209항 또는 제209.5항을 위반한 납치.

(C) 제261항을 위반한 강간.

(D) 제286항을 위반한 동성애.

(E) 제288항을 위반하고 14세 이하 아동에게 자행된 외설 또는 음란 행위.

(F) 제288a항을 위반한 구강 성교.

(G) 제460항을 위반한 일급 또는 이급 절도.

(H) 제451항 제(b)호를 위반한 방화.

(I) 제219항을 위반한 열차 파손.

(J) 제203항을 위반한 난동.

(K) 제289항을 위반한 도구에 의한 강간.

(L) 제215항에 정의된 차량 탈취.

(M) 제(B)세목의 납치 또는 제(H)세목의 방화라는 특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살인의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 해당 중범죄 요소의 증거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경우 위의 두 특수

상황은 납치 또는 방화가 주로 또는 유일하게 살인을 자행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졌을지라도 입증된다.

(18) 살인이 의도적이며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자행된 경우.

(19) 피고가 독극물 투여를 통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20) 피해자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기타 모든 주의 지방, 주, 연방 체제 하에서 법정 기록을 갖고 있는 배심원으로, 살인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경우.

(21) 살인 행위가 의도적이며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밖에 있는 타인을 살해하고자 총기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자행된 경우. 본 목의 목적에 따라 “차량”은 차량법 제415항에 정의된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22) 피고가 제186.22항 제(f)호에 정의된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살인 행위가 조직폭력단 활동과 관련하여 자행된 경우.

(b) 본 문서에 열거된 특수 상황에 대한 제(a)호에 따라 살해 의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한 제190.4항에 따라 사실임이 입증된 특수 상황과 관련한 실질적 살인범은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을 받는 데 있어 특수 상황의 기초가 되는 범죄 자행 시점에 반드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 실질적 살인범 외 살해 의도를 갖고 일급 살인 행위자에 지원이나 사주, 조인, 회유, 간청, 요청, 원조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제(a)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제190.4항에 의거 사실임이 밝혀지면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처벌을 받는다.

(d) 제(c)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살인범 외 생명을 경시하며 타인의 죽음을 초래한 제(a)호 제(17)목에 열거된 증범죄 자행의 주요 공범으로 범죄와 관한 지원이나 사주, 조인, 회유, 간청, 요청, 원조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제(a)호 제(17)목에 열거된 특수 상황이 제190.4항에 따라 사실임이 밝혀지면 사형 또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본 조항 및 제190.1호, 제190.3호, 제190.4호, 및 제190.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7항 형법 제190.3항이 폐지된다.

190.3. 피고가 일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특수 상황에 대한 기소가 사실임이 판명되는 경우 또는 피고가 군대및제대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1672항 제(a)호 또는 동법의 제37항, 제128항, 제219항 또는 제4500항 위반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형 판결 대상이 되는 경우 사실 심리에서 사형과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중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한다. 처벌 문제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 증거는 악화, 완화, 선고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주판 및 피고 모두에 의해 제기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현 범죄의 속성 및 상황, 해당 유죄 판결에 폭력 범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전 증범죄 유죄 판결 전과,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포함된 피고의 다른 범죄 행위 여부, 피고의 성격, 배경, 이력,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포함되지 않은 피고의 다른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사용된 범죄 행위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기소 및 무죄 선고를 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전 범죄 활동의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증거 사용에서의 제한은 본 조항에 의거한 법적 절차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적 절차에서 해당 증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령 또는 판결 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가 사형 판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범죄 또는 특수 상황의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외하고 어떠한 증거도 재판 전 법원에서 정한 합당한 기간 내에 제출할 증거에 대해 피고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고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검찰에 의해 제출될 수 없다. 피고가 변호를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는 이러한 통보가 없이도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사실 심리자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선고가 선고가 내려진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 가석방 가능성을 포함한 형으로 감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사실 심리자는 처벌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련이 있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 피고가 ~~현 법적 절차에서~~ 기소된 범죄 상황 및 제190.1항에 의거 사실임이 밝혀진 특수 상황의 유무.

(b)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협이 포함된 피고의 범죄 행위 여부.

(c) 이전 증범죄 유죄 판결 전과.

(d)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극심한 정신적 또는 감정적 장애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e) 피해자가 피고의 살인 행위에 참여했거나 동의했는지 여부.

(f) 피고가 합당한 근거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범죄를 자행했는지 여부.

(g) 피고가 타인의 극심한 협박 또는 상당한 지배 하에서 범죄를 자행했는지 여부.

(h)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피고의 능력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일차시킬 피고의 능력이 정신 질환이나 결함, 중독의 영향으로 손상되었는지 여부.

(i) 범행 당시 피고의 연령.

(j) 피고가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지 여부.

(k) 범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범행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기타 상황.

모든 증거를 심리 및 접수한 후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을 심리하고 고려한 후, 사실심리관은 본 조항과 관련하여 형을 가중 및 감경하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사실심리관이 형을 가중하는 상황이 감경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사형을 선고한다. 사실심리관이 형을 감경하는 상황이 가중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을 선고한다.

제8항. 형법 제190.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0.4. (a) 제190.2항에 열거된 특수 상황에 대한 혐의가 있고 사실심리관이 피고의 일급 살인 유죄를 판결할 때마다, 사실심리관은 혐의가 있는 각 특수 상황의 진위에 대한 특별 판결 또한 내려야 한다. 모든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는 재판 또는 제190.1항 제(b)호에 의거한 심리 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심리관이 결정한다.

특수 상황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합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실심리관은 기소된 각 특수 상황의 진위에 대한 특별 판결을 내린다. 범죄의 자행 또는 자행 시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모든 특수 상황에서 해당 범죄는 재판 및 판결에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거하여 기소되고 입증된다.

피고가 배심원이 없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이 법원이 되는 경우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사실심리관이 제190.2항에 열거 및 기소된 특수 상황 중 하나 이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별도의 형벌심리가 열려 피고는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처벌을 받게 되고 나머지 기소된 특수 상황 중 어떤 상황도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거나, 사실심리관이 배심원이 아닌 경우, 기소된 나머지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 사안에 동의할 능력이 배심원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형벌심리를 열 수 없다.

피고가 배심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배심원단에서 기소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사실이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된 모든 특수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문제 심리를 할 새로운 배심원단의 선정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유죄 문제는 이러한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으며 이전 배심원단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장일치의 평결이 내려진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리를 하지 않는다. 새로운

배심원단에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사실이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법원 재량에 따라 이전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를 심리할 새로운 배심원단 선정을 명령하거나, 주교도소에서의 징역 25년형을 부과한다.

(b) 피고가 배심원이 없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이 법원이 되는 경우,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와 주민이 배심원 배석 재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심리관은 배심원이 된다.

배심원이 된 사실심리관은 형벌 종류에 대한 만장일치의 평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형벌 종류에 대한 심리를 할 새로운 배심원단의 선정 명령을 내린다. 새로운 배심원단에서 하나 이상의 특수 상황이 사실이라는 평결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단 구성 명령을 내리거나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을 부과한다.

(c) (b) 피고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 사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심리관이 배심원인 경우, 타당한 사유로 법원이 해당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배심원단이 제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주장 그리고 혐의가 있는 특수 상황의 진위 여부 및 적용되는 형벌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기록에 의거하여 타당한 사유 발견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명시하고 재판 기록에 포함시킨다.

(d) 피고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모든 경우, 제1026항에 따라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 주장 하에서의 모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이전 재판 단계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전 단계의 사실심리관이 이후 단계의 사실심리관과 동일하면 재판의 모든 이후 단계에서도 고려된다.

(e) 사실심리관이 사형을 선고하는 평결 또는 판결을 이미 환부한 모든 경우, 피고는 제1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이미 해당 평결 또는 판결 수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 시 증거를 검토하고, 제190.3항과 관련하여 피고의 형을 가중하는 상황 및 감경하는 상황 모두를 고려하며, 가중하는 상황이 감경하는 상황에 비해 더 심각하다는 배심원단의 판결 및 평결이 범 또는 제출된 증거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판사는 기록부에 판결의 이유를 명시한다.

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한 판결 이유를 명시하고 서기 기록에 포함시킨다. 제1181항 제(7)호에 의거 사형 평결 수정 거부는 제1239항 제(b)호에 의거 피고의 자동 항소에서 검토된다. 신청 승인은 주민 항소에서 검토되며 제(6)목에 의거한다.

제9항. 제33장(제7599항 이하) 이 정부법 제1권 제7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33장. 미결 강간 및 살해 사건 수사를 위한
SAFE 캘리포니아 기금

제1조.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의 창설

7599.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이라고 하는 특별 기금이 주 재무부 내에 창설되며 지속적으로 본 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충당된다.

제2조. 기금 충당 및 배정

7599.1. 기금 충당

2013년 1월 1일 1천만 달러 (\$10,000,000)가 2012-13년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되고 본 장에 추가된 법률의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2013-14년, 2014-15년 각 회계연도의 7월 1일 및 2015-16년 회계연도의 7월 1일에 추가로 총 삼천만 달러 (\$30,000,000)가 일반 기금에서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되고 지속적으로 본 장에 추가된 법률의 목적을 위해 충당된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으로 이전된 기금은 본 장에 추가된 법률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충당 또는 이전되지 않는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의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 없이 사용될 수 있다.

7599.2. SAFE 캘리포니아 기금 자금의 분배

(a) 법무장관의 지시 하에 회계감사관이 살인 및 강간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보안관, 검찰에 SAFE 캘리포니아 기금에 예치된 자금을 지출한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및 활동에는 강간 사건에서 수집된 물리적 증거의 보다 빠른 처리, DNA 분석 및 대조 등 법의학 능력 개선, 살인 및 성범죄 수사 또는 기소 인력 확충, 증인 이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AFE 캘리포니아 기금의 자금은 법무장관이 결정한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공식을 통해 경찰서, 보안관, 검찰에 배정된다.

(b) 이러한 자금의 배정 및 분배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SAFE 캘리포니아 기금에서 공제된다. 법무장관과 회계감사관은 배정 및 분배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많은 자금이 살인 및 강간 사건의 해결률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0항. 법률의 소급 적용

(a) 제3항에 서술된 바와 같이 본 법률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고 판결의 공정성, 확실성, 질을 높이기 위해 본 법률은 소급 적용된다.

(b) 피고 또는 재소자가 본 법률 발효일 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는 본 법률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가석방 가능성 없는 주교도소에서의 종신형으로 자동 변경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본 법률의 발효일 후 어떠한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다.

(c) 본 법률의 발효일 후 대법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사형 사건 항소 및 인신보호영장을 대법원 재량에 따라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제11항. 발효일

본 법률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II조 제10항 제(a)호에 따라 투표 다음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제12항. 가분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본 법률의 조항이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 제10항을 제한없이 모두 포함하여, 무효화된 조항이나 적용을 제외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는 해당 무효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의안 제35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절의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발의 법안은 증거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형법의 장 제목 및 항을 수정하고 추가한다; 이에 따라 삭제제 제안된 기존 조항이 취소선이 인쇄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캘리포니아 성착취방지법

제1항. 제목

본 법안을 캘리포니아 성착취 방지법(“CASE Act”)으로 명명한다.

제2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주의 전주민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2.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인권 및 민권에 위배되는 범죄이다. 인신매매는 타인의 취약점을 악용함으로써 드러나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이 없다.
3. 미 법무성 연구에 따르면 300,000명 이상의 미국 아동이 상업적인 성적 착취 위험에 놓여 있다. 대부분은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성매매로 유인되지만 사세밖에 안 되는 아동이 매매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러한 미성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4. 인터넷의 보급이 캘리포니아에 큰 이득이 되었지만 인신매매범 및 성범죄자 역시 인터넷을 악용하여 우리 주의 취약 계층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우리는 성적 목적을 위해 여성과 아동을 착취하려는 인신매매범과 온라인 성범죄자의 위협에 맞설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6. 우리는 성범죄자가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범죄자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캘리포니아 주민은 본 CASE 법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 및 취지를 선언한다:

1.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돕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도모한다.
2. 인신매매 대상이 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성범죄자 등록 요건 등 성적 착취 관련 법을 강화하여 법집행기관이 온라인 성범죄, 인신매매를 추적 및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 제1161항이 다음과 같이 증거법에 추가된다:

1161. (a) 형법 제236.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결과로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행위와 관련한 어떤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형사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채택할 수 없다.

(b) 형법 제236.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성적 이력 또는 상업적 성행위 이력의 증거는 어떠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공격하거나 성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채택할 수 없다.

제5항. 형법 제1편 제8권 제8장(제236항 이하)의 제목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8장. 불법 감금 및 인신매매

제6항. 형법 제 236.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6.1. (a) 제266항, 제266h항, 제266i항, 제267항, 제311.4항 또는 제518항의 중범죄 위반을 야기 또는 유지하고자 하거나 강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타인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 또는 침해한 사람은 누구나 인신매매로 유죄이며 5년형, 8년형 또는 12년형의 주교도소 징역과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 제(c)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항의 위반은 3년형, 4년형 또는 5년형의 주교도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 본 항을 위반한 범행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가 18세 미만이었을 경우 4년형, 육년형 또는 팔년형의 주교도소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d) (1) 본 항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박탈 또는 침해에는 위협을 받거나 위협을 느낀 당사자가, 위협을 가한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적 상해 위협이나 사기, 기만, 강제, 폭력,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협박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실제 여권이나 이민서류 또는 여권이나 이민서류로 알려진 해당 문서를 파괴하거나 은닉, 제거, 압수, 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 본 항의 목적에 따라 “강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는 한 개인에 의해 수행 또는 제공된 것으로, 무력, 사기, 강제나 개인의 의지를 심하게 억압하며 이에 상응한 행위를 통해 취하거나 유지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b) 제266항, 제266h항, 제266i항, 제266j항, 제267항, 제311.1항, 제311.2항, 제311.3항, 제311.4항, 제311.5항, 제311.6항 또는 제518항을 위반 또는 위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타인의 개인적 자유를 박탈 또는 침해한 사람은 누구나 인신매매로 유죄이며 8년형, 14년형 또는 20년형의 주교도소 징역형과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c) 제266항, 제266h항, 제266i항, 제266j항, 제267항, 제311.1항, 제311.2항, 제311.3항, 제311.4항, 제311.5항, 제311.6항 또는 제518항을 위반을 또는 위반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인, 설득을 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람은 누구나 인신매매로 유죄이다. 본 호의 위반은 다음과 같은 주교도소에서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징역 5년형, 8년형 또는 12년형 및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

(2) 범행에 피해자 또는 타인에 대한 불법적 상해 위협이나 무력, 공포, 사기, 기만, 강제, 폭력, 협박이 포함된 경우 징역 십오년형에서 종신형 및 최대 오십만 달러 (\$500,000)의 벌금.

(d) 미성년자를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인, 설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피해자 연령, 인신매매법 또는 인신매매법 대리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한다.

(e)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본 항에 의거 형사상 기소에 대한 변호 사유가 아니다.

(f)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사실에 대한 오인은 본 항에 의거 형사상 기소에 대한 변호 사유가 아니다.

(f) (g) 입법부는 본 항의 인신매매 정의가 미국연방법 제22부 제7102(8)항에서 규정한 심각한 매매 형태의 연방 정의에 상응함을 확인한다.

(g) (1) 제(c)호에 명시된 형에 더해 상업적 성행위와 관련된 인신매매를 저질렀고 범행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 누구나 최대 십만 달러 (\$100,000)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2) 본 호에 사용된 “상업적 성행위”는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h) 본 항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되는 모든 벌금은 피해자증인지원기금(Victim-Witness Assistance Fund)에 예치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다. 본 항에 의거하여 징수 및 예치된 벌금의 최소 50 퍼센트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에 지원된다.

(h) 본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1) “강제”는 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나 물리적인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모든 책략이나 계획, 양식; 법적 절차의 남용 또는 남용 위협; 부채 상환을 구실로 한 구속; 또는 판단력에 손상을 가할 의도로 개인에 관리 대상 물질을 제공하거나 점유를 돕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 “상업적 성행위”는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3) 본 항의 목적에 따라, “타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박탈 또는 침해”는 위협을 받거나 파악한 당사자가, 위협을 가한 상대방이 실제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적 상해 위협이나 무력, 공포, 사기, 기만, 강제, 폭력,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포함한다.

(4) “협박”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 다른 상황이었다면 묵인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행위를 묵인 또는 수행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무력이나 폭력, 위협, 어려움, 응징의 직접적 또는 암시적 위협; 피해자의 실제 여권이나 이민서류, 또는 여권이나 이민서류로 알려진 해당 문서를 파괴하거나 은닉, 제거, 압수, 소유하는 직접적 또는 암시적 위협; 피해자의 피해자의 실제 여권이나 이민서류, 또는 여권이나 이민서류로 알려진 해당 문서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은닉, 제거, 압수, 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강제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는 한 개인에 의해 수행 또는 제공된 것으로, 무력, 사기, 강제나 개인의 의지를 심하게 억압하며 이에 상응한 행위를 통해 취하거나 유지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 “신체적 중상”은 상당한 신체상 상해를 의미한다.

(7)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8) “심각한 피해”는 어떤 주변 상황이든 동일한 사정 및 동일한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해당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이나 서비스, 상업적 성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모든 피해를 뜻하며 여기에는 심리, 재정, 명성과 관련한 피해 등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인 모든 피해가 포함된다.

(i) 피해자 연령, 인신매매법 또는 인신매매법 대리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등 전체 상황은 본 항에 기술된 “타인의 개인적 자유에 대한 불법적 박탈 또는 침해”, “협박”, “강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다.

제7항. 형법 제236.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6.2. 법집행기관은 피해자의 시민권과 관계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대로 성실하게 인신매매의 모든 피해자를 파악한다.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한 자, 상업적 성행위에 참여한 미성년자, 제647항 제(a)호 또는 제(b)호의 위반 혐의자, 가정 폭력 또는 강간 성폭행 피해자를 보게 된 치안관은 다음과 같은 인신매매 단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a) 정신적 외상이나 피로, 상해의 흔적 또는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

(b) 대화를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대화가 타인의 검열을 받고 있는 경우.

(c) 이동의 자유가 없는 사람.

(d) 한 곳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는 사람.

(e) 고용주에 채무가 있는 사람.

(f) 해당인에 접촉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보안 조치가 사용되는 경우.

(g) 자신의 정부 발행 신원증명서 또는 취업 이민 서류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제8항. 제236.4항이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236.4. (a) 제236.1항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은 부과된 다른 처벌이나 벌금, 배상에 추가로 피고에 최대 백만 달러 (\$1,000,000)의 벌금을 명령할 수 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법원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며, 여기에는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 범행 상황 및 지속기간, 범죄의 결과로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정도, 범죄의 결과로 피해자가 겪은 손실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 제236.1항을 위반하는 범죄 또는 범죄 시도로 피해자에 큰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람은 누구나 추가로 주교도소에서의 연속 징역 5년형, 7년형 또는 10년형 처벌을 받는다.

(c) 제236.1항에 명시된 범죄를 위반하여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개별적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추가 판결에 대해 주교도소에서의 연속 징역 5년형을 받는다.

(d) 제236.1항 및 본 항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된 모든 벌금은 피해자증인지원기금에 예치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캘리포니아 비상관리국 (California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al EMA)에서 집행된다. 징수 및 예치된 벌금의 70 퍼센트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보호소나 상담, 기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지원된다. 징수 및 예치된 벌금의 30 퍼센트는 인신매매 방지, 증인 보호, 구조 활동의 자금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재판권의 법집행기관 및 기소기관에 지원된다.

제9항. 형법 제290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 (a) 제290항에서 제290.023항 제290.024항까지를 성범죄자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으로 명명한다. 관련 항에서 언급하는 “법률”은 성범죄자등록법(Sex Offender Registration Act)을 말한다.

(b) 제(c)호에 기술된 모든 사람은 제290.002항 및 제290.01항에 기술된 대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평생 동안, 또는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 또는 직장 다니는 평생 동안, 시나 카운티로의 이주 또는 임시로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 캠퍼스로의 거주지 변경 5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의 경찰서장에 등록해야 하고, 지자체 인가가 없어 경찰서가 없는 지역 또는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카운티 보안관에 등록해야 하며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기타 커뮤니티 칼리지의 캠퍼스 또는 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의 치안서장에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도 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c)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1944년 7월 1일 이후, 난동을 일으키기 위한 폭행을 제외한, 제261항, 제286항, 제288항, 제288a항, 제289항, 또는 제220항, 제236.1항 제(b)호 및 제(c)호, 제243.4항, 제261항 제(a)호의 제(1)목, 제(2)목, 제(3)목, 제(4)목, 제(6)목, 주교도소에서 정역형이 내려지는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된 제262항 제(a)호의 제(1)목, 제264.1항, 제266항, 제266c항, 제266h항의 제(b)호, 제266i항의 제(b)호, 제266j항, 제267항, 제269항, 제285항, 제286항, 제288항, 제288a항, 제288.3항, 제288.4항, 제288.5항, 제288.7항, 제289항, 제311.1항, 제311.2항의 제(b), 제(c)호, 제(d)호, 제311.3항, 제311.4항, 제311.10항, 제311.11항, 제647.6항, 이전 제647a항, 제653f항의 제(c)호, 제314항의 제1호 또는 제2호, 제272항에 따른 외설 또는 음란 행위를 수반한 범죄, 또는 제288.2항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제286항, 제288항, 제288a항, 제289항이나 제207항 또는, 제209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모든 행위의 자행이나 자행 시도, 강간 또는 강간의 시도로 인해 제187항을 위반하여 본 주 법원, 연방 법원, 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위에 언급된 범죄 중 하나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법정 전과자; 위의 날짜 이후 위에 언급된 범죄를 시도 또는 모의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제10항 형법 제290.01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012. (a) 해당되는 자는 등록 또는 주소 변경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출생일부터 매년 출생일 오일 이내에 제290항 제(b)호에 기술된 기관에 등록을 갱신한다. 해당되는 자는 매년 갱신 때마다 법무성의 연례 갱신양식에서 요구하는 현행 정보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제290.015항 제(a)호 제(1)목에서 제(3)목, 제(5)목까지에 기술된 정보가 포함된다. 등록 기관은 등록자에게 법무성 양식의 등록 요건 사본을 제공한다.

(b) 이에 더해 복지제도법 제6600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폭력범 판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성에서 정한 방식으로 석방 후 최소 90일마다 일회 이상은 주소지,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한 직장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성폭력범으로 90일 마다 등록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 등록이 이루어질 때마다 늘어난 등록 의무사항에 대해 통보를 받는다. 본 통보는 하나 이상의 등록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제공된다. 본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제290.018항 제f호에 규정된 처벌의 변호 사유이다.

(c) 이에 더해 본 법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단기 체류하는 동안, 제290.011항에 따라 최소 30일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d) 어떠한 단체도 본 항에 의거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려는 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 기관은 연례 갱신 및 주소 변경 등 등록 내용을 바로 법무성범죄정보네트워크(VGIN)에 제출한다.

제11항. 형법 제290.01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014. (a)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자는 자신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법집행기관에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본인이 직접 통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내에 해당 사본을 법무부에 전달해야 한다.

(b) 법률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자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자신의 계정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인터넷 ID를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자신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법집행기관에 24시간 내에 해당 추가 또는 변경 관련 통지문을 전달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은 이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본 호가 발효되는 시점에 해당 호가 적용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제12항. 형법 제290.01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90.015. (a) 본 법률이 적용되는 자는 제290항 제(b)호에 따라 구금, 구속, 영장 집행이 해제되거나 보호 관찰이 해제되는 즉시 등록해야 하고,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도 재등록해야 한다. 본 법률에 의거 기준에 등록한 경우, 구금 후 최종 등록 주소로 복귀한 경우, 그리고 본 290.012항 제(a)호에 따라 자신의 생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는 등록 기간이 구금 기간과 겹치지 않았던 경우,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구금되는 개인에게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시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정보, 등록 대상자의 고용주 이름 및 주소, 고용주의 기본 주소가 고용 장소와 다를 경우 고용 장소의 주소를 제공하고 등록 대상자가 서명한 진술서.

(2) 등록 공무원이 촬영한 해당 등록 대상자의 현재 사진 및 지문.

(3) 등록 대상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등록 번호판 번호.

(4) 등록 대상자가 설정 또는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ID 목록.

(5) 등록 대상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목록.

(6) 본 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등록 대상자가 제(4)목 및 제(5)목의 정보를 등록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등록 대상자가 서명한 진술서.

(7) 법률에 따른 요구사항 외에 등록 대상자가 이주하는 다른 주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고지.

(8) 적절한 거주 증명서 사본으로, 이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캘리포니아주 신분증, 최근 임대료, 상하수도, 가스 전기 영수증, 인쇄된 개인 수표 또는 등록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기타 최근 은행 서류, 또는 등록 공무원이 신뢰할 수 있는 기타 정보로 제한된다. 해당 개인이 거주지가 없거나 가까운 미래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은 등록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등록 공무원에 의해 해당 사실이 기술된 후 등록 공무원이 제시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등록 공무원에게 거주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거주지가 없음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제공하면, 등록 대상자는 등록이 가능하다. 거주지는 있지만 거주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등록 대상자는 등록은 가능하지만 등록이 허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b) 그로부터 3일 내에 등록 법집행기관은 진술서, 지문, 사진 및 차량 운전면허증 번호를 법무부에 전달해야 한다.

(c) (1) 석방 후 제(a)호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 대상자의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를 담당하는 관할지역의 지방 검사가 등록 대상자의 체포 영장 발행을 요청하고 제290.018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석방 시점에 등록 대상자가 가석방 또는 집행 유예 상태가 아닐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관할지역의 지방 검사가 290.018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A) 등록 대상자가 이전에 등록한 경우 마지막으로 등록한 관할지역.

(B) 이전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해당 개인이 예상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등록 요구 명단에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할지역.

(C) 제(A)목 또는 제(B)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본 법률에 따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록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관할지역.

제13항. 제290.024항이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290.024. 본 조항에 다음 용어가 적용된다:

(a)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란 소비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통신 기능을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조직 또는 기타 개체를 의미한다. 통신 서비스, 케이블 서비스, 비디오 서비스, 또는 도서관이나 교육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직 또는 기타 개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b) "인터넷 ID"는 인터넷 포럼 토론, 인터넷 채팅룸 토론, 인스턴트 메시징, 소셜 네트워킹 또는 유사한 인터넷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메일 주소, 사용자 이름, 화면 이름 또는 유사한 ID를 의미한다.

제14항. 형법 제13519.14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3519.14. (a) 위원회는 200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기소 처리에 대한 교육 과정을 시행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법집행관의 대응 지침을 개발한다. 교육 과정 및 지침에서는 인신매매의 역학 관계 및 현상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신원확인 및 피해자와의 의사 소통,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법집행기관 법집행기관(LEA) 지지(LEA)를 충족하는 서류 제공, 연방 법집행기관 공무원과의 협력, 치료상 적절한 조사 기법, 민간 및 이주 대책과 지역사회 자원의 가용성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제시한다. 적절한 경우 교육 진행자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이 있는 인신매매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 비디오 교육 테이프 또는 기타 교육을 통해 과정을 완료할 수도 있다.

(b) 본 항에서 사용된 "법집행기관 공무원"이란 제 830.2항의 제(a)호에서 정의한 대로 현지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실의 공무원이나 직원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치안관을 의미한다.

(c) 교육 과정, 학습 및 성과 목표, 교육 기준 및 지침은 위원회가 인신매매 분야에 관심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해당 그룹 및 개인과 협의하여 개발한다.

(d) 위원회는 해당 그룹 및 개인과 협의하여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함으로써 인신매매 교육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e) 본 항에 명시된 교육 과정에 치안관 또는 치안관을 고용하고 있는 법집행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현장 또는 조사 임무가 할당된 모든 법집행기관 공무원은 2014년 7월 1일까지 또는 해당 직책에 임명된 지 6개월 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a)호에서 기술한 대로 인신매매 기소 처리와 관련된 교육 과정에서 최소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항. 개정

본 법률은 해당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을 거쳐 입법부의 양원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통과되는 법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6항. 가분성

본 법안의 조항 또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조항의 적용이 위헌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머지 조항 또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법안의 조항의 한도에서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발의안 제36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형법에 조항을 수정하고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이 취소선이 인쇄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2012년 삼진아웃 개혁법

제1항. 배경 및 선언

캘리포니아 주민은 강간범, 살인범 및 아동 성추행범과 같이 위험한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 삼진아웃법의 원래 취지를 복원하고자 2012 삼진아웃 개혁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살인범, 강간범, 아동 성추행범이 경미한 세 번째 새로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 피고인이 현재 폭력이나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삼진아웃법을 주민의 원래 합의로 복원한다.

(3) 날치기나 단순한 약물 소지 같이 심각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습 범죄자의 경우 종신형 대신 일반적인 형량의 두 배를 받게 한다.

(4) 10년 이상 매년 납세자의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정부는 경미한 범죄로 인해 종신형을 받아 복역 중인 고령의, 위험성은 낮고, 비폭력적인 수감자의 거처 공급 또는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5) 경미한 범죄로 종신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위험성이 낮고 비폭력적인 수감자로 인해 교도소가 혼잡해져 현재 조기 석방되고 있는 위험한 범죄자의 조기 석방을 차단한다.

제2항. 제667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667. (a) (1) 제1385항의 제(b)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에 심각한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심각한 중죄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범죄로 인해 다른 관할지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은 현재 범죄로 인해 법정에서 받은 선고 외에 별도로 기소 및 심리된 고발의 이전 유죄판결마다 처벌이 5년 가중된다. 현재 범죄의 판결과 가중 판결은 연속하여 집행된다.

(2) 다른 법률 조항에 의거 선고된 형벌의 수감 기간이 더 길 경우 본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 호를 적용하기 위해 이전 구금 및 영장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양원의 과반수 투표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입법부는 본 호에 제시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4) 본 호에서 사용된 "심각한 중죄"란 제1192.7항 제(c)호에 나열된 심각한 중죄를 의미한다.

(5) 이전 유죄판결이 제1192.7항 제(c)호 제(24)세목에

기술된 심각한 중죄에 대한 판결이 아닐 경우, 필로폰 관련 약물이나 필로폰 전구체를 판매, 제공 또는 관리하거나 판매, 제공, 관리하도록 공급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공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본 하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b) 제(b)호에서 제(i)호까지를 제정한 입법부의 의도는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이전에 *하나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징역형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중과하려는 것이다.

(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제(d)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입증될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모두 고수한다:

(1) 후속 중죄의 유죄판결에서 양형 누적에 대한 전체 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현재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가되지 않으며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될 수 없다.

(3)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적인 중죄의 유죄판결과 현재 중죄의 유죄판결 사이의 기간이 형량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 교도소 외 다른 시설로의 감호조치는 없다. 복지제도법 제3부 제1장 제2조(제3050항 이하)에서 규정한 바대로 감호조치는 없으며 피고인은 캘리포니아 재활센터로의 감호조치 대상이 아니다.

(5) 제3편 제1권 제7장 제2.5조(제2930항 이하)에 따라 부여된 총 점수는 부과된 총 수감 기간의 오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 교도소에 실제로 피고인이 수감될 때까지 누적되지 않는다.

(6)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죄에 대한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제(e)호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연속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7) 제(6)목에서 기술한 두 건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대해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서 기술한 방식대로 피고인이 연속해서 형량 선고를 받는 다른 유죄판결에 대해 누적적으로 각기 유죄 선고를 해야 한다.

(8)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e)호에 따른 선고는 피고인이 이미 복역하고 있는 다른 선고에 연속해서 부과된다.

(d) 다른 법률과 제(b)호에서 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의 이전 유죄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제667.5항 제(c)호에서 폭력 관련 중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심각한 중죄로 정의된 범죄. 이전 유죄판결이 제(b)호에서 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 따라 이전 중죄 유죄판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전 유죄판결 날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최초 형량선고가 있는 후 바로 해당 선고에서 중죄를 자동으로 경범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처분은 이전 유죄판결이 제(b)호에서 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 따라 이전의 중죄인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판결 또는 선고유예.

(B) 형 집행유예.

(C) 중죄 유죄판결 후 정신 이상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주 보건부로의 감호조치.

(D) 캘리포니아 재활센터, 또는 주 교도소의 대체 수용시설인 기타 시설로의 감호조치.

(2)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경우 주 교도소 수감 처분을 받은 범죄에 대한 다른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은 그 또 다른 나머지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이 제667.5항 제(c)호에 정의된 특정 폭력 관련 중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심각한 중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죄일 경우(포함), 특정한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의 이전 유죄판결을 구성한다.

(3) 이전 청소년 관련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중 형벌 대상이 되는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구성한다:

(A) 이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청소년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B) 이전 범죄가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 또는 제(1)목 또는 제(2)목에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명시된 경우.

(C) 청소년이 청소년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D) 청소년이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에 나열된 범죄를 저질러 복지제도법 제602항의 취지 하에 청소년 법정 판결을 받은 경우.

(e) 제(b)호에서부터 제(i)호에 이르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다른 가중 및 처벌 규정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하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 제(d)호에 정의된 바대로 이미 항변하여 입증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이 피고인에게 한 건 있는 경우, 확정 기간 또는 미확정 기간의 최소 기간은 달리 제공하지 않는 한, 현재 중죄 유죄판결 형량의 두 배가 된다.

(2) (A) 제(C)세목에서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우, 제(d)호에 정의된 대로 이미 항변하여 입증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두 건 이상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기간은 다음 중 더 긴 가장 긴 기간으로 계산되는 미확정 형량의 최소 기간과 함께 중신형 미확정 기간이 된다:

(i) 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에 이어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형량이 다르게 규정된 기간의 세 배.

(ii) 25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

(iii) 제2편 제7권 제4.5장(제1170항 이하)에서 적용되는 가중 기간, 또는 제190항 또는 제3046항에서 기술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본 유죄판결에 대해 제1170항에 따라 법정에서 결정한 기간.

(B) 제(A)세목에 기술된 미확정 기간을 법률에 의해 연속 기간이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수감 기간에 연속해서 복역해야 한다. 제(A)세목에서 기술한 미확정 기간에 이어 부과된 다른 기간은 여기에 병합되지 않고, 해당 개인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C) 피고인이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둘 이상의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대해 이미 항변하여 입증되었고, 현재 범죄는 제(d)호에 정의된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가 아닐 경우, 기소를 통해 다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제(e)호의 제(1)목에 따라 선고를 받게 된다:

(i) 현재 범죄가 보건 및 안전법의 제11370.4항 또는 제11379.8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거나 진실임이 밝혀진 규제 약물 관련 기소 건이 아닌 경우.

(ii) 현재 범죄가 제261.5항 또는 제262항의 제(d)호에 정의된 흉악한 성범죄이거나, 제266항, 제285항, 제286항의 제(b)호 제(1)목 및 제(e)호, 제288a항의 제(b)호 제(1)목 및 제(e)호, 제311.11항 및 제314항의 위반을 제외하고, 제290항의 제(c)호에 따라 성범죄자로 의무 등록해야 하는 중죄인 경우.

(iii) 현재 범죄를 자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화기 또는 흉기로 무장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

(iv) 피고인이 다음 중죄에 대해 본 항의 제(b)호에 정의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받았든 경우:

(I) 복지제도법의 제6600항 제(b)호에 정의된 "성폭력 범죄".

(II) 제288a항에 정의된 대로 14세 이하 및 자신보다 10살 연하인 소년과의 구강 성교, 제286항에 정의된 대로 14세 이하 및 자신보다 10살 연하인 타인과의 남색, 또는 제289항에 정의된 대로 14세 이하 및 자신보다 10살 연하인 타인과의 성기 삽입.

(III) 제288항을 위반하여 14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외설 또는 음란 행위.

(IV) 제187항에서 제191.5항까지 정의된 살인 미수 범죄를 포함한 살인 범죄.

(V) 제653f항에 정의된 살인 교사.

(VI) 제245항 제(d)호 제(3)목에 정의된 경찰관 또는 소방관에 대한 기관총 공격.

(VII) 제11418항 제(a)호 제(1)목에 정의된 대량 살상 무기 소지.

(VIII) 캘리포니아에서 중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f) (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제(d)호에 정의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 유죄판결들이 한 건 이상 있는 모든 경우 제(b)호에서 제(i)까지가 적용된다. 제(2)목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검사가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2) 기소 검사는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제 1385항에 따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 혐의를 기각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한 경우 법원에서 혐의를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의 어떤 내용도 제1385항에 의한 법원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g)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제1192.7항 제(b)호에 정의된 양형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기소에서 알려진 모든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제(f)호 제(2) 세목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 혐의 기각을 요청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h) 제(c)호에서부터 제(g)호에서 기존 법령이라 함은 1993년 6월 30일 2012년 11월 7일에 존재하는 법령을 말한다.

(i) 제(b)호에서부터 제(h)호까지의 규정이나 해당 규정의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 해당 무효 사항은 무효 규정 또는 적용이 제외되면 효력이 생기는 해당 호의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j) 본 항의 규정은 의사록에 기록된 호명표결에서 양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하여 통과되는 법령을 제외하고 또는 선거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유효해지는 법령을 제외하고는 입법부가 개정할 수 없다.

제3항. 형법 제667.1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667.1. 제667항의 제(h)호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의 발효날짜 2012년 11월 7일 이후 자행된 모든 범죄에 대해, 제 667항 제(c)호에서부터 제(g)호에서 기존 법률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본 법률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해당 법률을 말하는 것이며, 본 호를 개정하는 2005-06 정기 회가 중 2012년 11월 7일에 제정된 명령에 따라 수정된 동 법률 개정 내용도 포함한다.

제4항. 형법 제1170.1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170.12. (a) 여러 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집계 및 연속 기간; 이전 중죄로서의 이전 유죄판결; 구금 및 기타 가중 또는 처벌.

(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제(b)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전에 항변하고 입증된 한 건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피고인에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고수한다:

(1) 후속 중죄의 유죄판결에서 양형 누적에 대한 전체 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현재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허가되지 않으며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 또는 선고가 유예될 수 없다.

(3)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적인 중죄의 유죄판결과 현재 중죄의 유죄판결 사이의 기간이 형량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주 교도소 외 다른 시설로의 감호조치는 없다.

복지제도법 제3부 제1장 제2조(제3050항 이하)에서 규정한 바대로 감호조치는 없으며 피고인은 캘리포니아 재활센터로의 감호조치 대상이 아니다.

(5) 제3편 제1권 제7장 제2.5조(제2930항 이하)에 따라 부여된 총 점수는 부과된 총 수감 기간의 오분의 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 교도소에 실제로 피고인이 수감될 때까지 누적되지 않는다.

(6)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실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죄에 대한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본 조항에 따라 각 사건에 대해 연속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7) 제(b)호제(6)목에서 기술한 두 건 이상의 심각한 중죄 또는 폭력 관련 중죄에 대한 현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법률에서 기술한 방식대로 피고인이 연속해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죄판결에 대해 각 유죄판결의 선고를 연속해서 부과해야 한다.

(8)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항에 따른 선고는 피고인이 이미 복역하고 있는 다른 선고에 연속해서 부과된다.

(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항의 목적을 위해서 이전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제667.5항 제(c)호에서 폭력 관련 중죄로 정의된 범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심각한 중죄로 정의된 범죄. 이전 유죄판결이 본 항의 목적에 따라 이전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전 유죄판결 날짜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최초 형량선고 있는 후 바로 해당 선고에서 중죄를 자동으로 경범죄로 변환하지 않는 한,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음 처분은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이 본 조항의 목적에 해당하는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인지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판결 또는 선고유예.

(B) 형 집행유예.

(C) 중죄 유죄판결 이후 정신 이상 성범죄자로 분류된 후 주 보건부로의 감호조치.

(D) 캘리포니아 재활센터, 또는 주 교도소의 대체 수용시설인 기타 시설로의 감호조치.

(2)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경우 주 교도소 수감 처분을 받은 범죄에 대한 다른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 ~~은 그 또 다른 나머지~~ 관할지역의 이전 유죄판결이 제 667.5항 제(c)호에 정의된 ~~한~~ 특정 폭력 관련 중죄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심각한 중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죄일 경우(포함), 특정한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의 이전 유죄판결을 구성한다.

(3) 이전 청소년 판결은 판결 가중을 위해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구성한다.

(A) 이전 범죄를 저지를 당시 청소년의 나이가 십육 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B) 이전 범죄는

(i)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에 나열되거나,

(ii) 본 호에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로 나열되어 있다.

(C) 청소년이 청소년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D) 청소년이 복지제도법 제707항 제(b)호에 나열된 범죄를 저질러 복지제도법 제602항의 취지 하에 청소년 법정 판결을 받은 경우.

(c) 본 항의 목적에 따라, 그리고 적용되는 다른 가중 및 처벌 규정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하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유죄판결들을 받은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 제(b)호에 정의된 바대로 이미 항변하여 입증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이 피고인에게 한 건 있는 경우, 확정 기간 또는 미확정 기간의 최소 기간은 달리 제공하지 않는 한, 현재 중죄 유죄판결 형량의 두 배가 된다.

(2) (A) 제(C)세목에에서에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경우, 피고인이 입증된 제(b)호-제(1)목에 정의된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를 두 건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기간은 다음 중 더 큰 가장 큰 기간으로 계산되는 미확정 판결의 최소 기간을 포함한 중신형 미확정 기간이 된다:

(i) 둘 이상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에 이어 현재 중죄 유죄판결의 형량이 다르게 규정한 기간의 세 배, 또는

(ii) 이십오년형 또는

(iii) 제2편 제7권 제4.5장(제1170항 이하)에서 적용되는 가중 기간, 또는 제190항 또는 제3046항에서 기술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본 유죄판결에 대해 제1170항에 따라 법정에서 결정한 기간.

(B) 본 호의 제(2)목 제(A)세목에 기술된 미확정 기간을 법률에 의해 연속 기간이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수감 기간에 연속해서 복역해야 한다. 본 호 제(2)목 제(A)세목에 기술된 부정기형에 이어져 부과된 다른 모든 형량은 거기에 합쳐지지 않으며 해당인의 출소 시점에 시작된다.

(C) 피고인이 이전에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정의된 대로 주장하고 입증된 두 가지 이상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을 받았고 현 범죄가 본 항 제(b)호 제(1)목에 기술된 중죄가 아닌 경우 피고인은 검찰이 다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는 한 본 항 제(c)호 제(1)목에 따라 선고를 받는다.

(i) 현재 범죄가 보건 및 안전법의 제11370.4항 또는 제11379.8항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거나 진실임이 밝혀진

규제 약물 관련 기소 건이 아닌 경우.

(ii) 현재 범죄가 제261.5항 또는 제262항 제(d)호에 정의된 중대 성범죄이거나 제266항 및 제285항, 제(b)호 제(1)목 및 제286항 제(e)호, 제(b)호 제(1)목 및 제288a항 제(e)호, 제314항 및 제311.11항 위반을 제외하고 제290항 제(c)호에 의거한 성범죄자 의무 등록을 초래하는 중죄인 경우.

(iii) 현재 범죄를 자행하는 중에 피고인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화기 또는 흉기로 무장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경우.

(iv) 피고인이 다음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로 본 항 제(b)호에 정의된 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I) 복지제도법 제6600항 제(b)호에 정의된 "폭력적 성범죄".

(II) 14세 미만 아동과의 구강 성교, 제288A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동과의 구강 성교, 14세 미만 및 제286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동과의 항문 성교 또는 14세 미만 아동 및 제289항에 정의된 대로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아동과의 성교.

(III) 제288항을 위반하여 14세 미만 아동이 관련된 음란하거나 음란 행위.

(IV) 제187항에서 제191.5항까지 정의된 살인미수죄를 포함한 모든 살인죄.

(V) 제653f항에 정의된 살인교사.

(VI) 제245항 제(d)호 제(3)목에 정의된 경찰관 또는 소방관에 대한 기관총 공격.

(VII) 제11418항 제(a)호 제(1)목에 정의된 대량 살상무기 소지.

(VIII) 캘리포니아에서 중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d) (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은 피고인이 이전에 본 항에 정의된-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유죄판결들을 받은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2)목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소 검사가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2) 검사는 제1385항에 따라 정의를 위해 또는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유죄판결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 혐의를 기각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전의 심각한 중죄 및/또는 폭력 관련 중죄 유죄판결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한 경우 법원에서 혐의를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본 항의 어떤 내용도 제1385항에 의한 법원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

(e) 제1192.7항 제(b)호에 정의된 대로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이 유죄 답변 거래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알려진 이전의 모든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제(d)호 제(2)목에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전의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 유죄판결 혐의의 삭제 또는 기각을 추진하는데 합의해서는 안 된다.

(f) 제(a)호에서 제(e)호 또는 제1170.126항의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사람 또는 정황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무효가 해당 무효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이나 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호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g) 본 항의 조항은 의사록에 기록된 출결 확인 투표에서 의원의 삼분의 이가 찬성해서 하원을 통과한 법령 또는 유권자가 동의할 때에만 발효되는 법령을 제외하고는 입법부에 의해서 수정될 수 없다.

제5항. 형법 제1170.12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170.125. 1994년 11월 8일 총선총선에서 채택된 발의안 제184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의 발효일인 2012년 11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저지른 모든 범죄, 제1170.12항 및 제1170.126항항의 기존 법률에 대한 모든 참조는 해당 법령이 2012년 11월 7일에 본 항을 수정했던 2005-06 정규 회기 동안 제정된 법에 의한 해당 법률의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 본 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해당 법령 항에 대한 참조이다.

제6항. 제1170.126항이 다음과 같이 형법에 추가된다:

1170.126. (a) 본 항에 의거한 재선고 조항과 관련된 법령은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에 따라 현재 부정기형을 복역 중인 사람으로 본 법률에 따른 선고가 부정기 종신형이 아닌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b) 유죄판결 시 재판에 의해서든 소송에 의해서든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에 의거한 부정기 종신형을 복역 중이며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로 정의되지 않은 중죄인 경우, 본 항이 추가된 법률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또는 이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일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법정에서 본 항이 추가된 법률에 의해 수정된 제667항 제(e)호 및 제1170.12항 제(c)호의 조항에 따라 재선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c) 제667항 제(e)호 제(1)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1)목에 의거해 내려진 유죄판결을 받은 "두 번째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은 본 항의 조항에

따른 재선고 자격이 없다.

(d) 제(b)호에 기술된 선고 취소 청원은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 또는 둘 모두에 따른 선고로 이어졌던 현재 기소된 모든 중죄를 지정하며, 제667항 제(d)호 또는 제1170.12항 제(b)호에 따라 진술되고 입증된 이전의 모든 유죄판결도 지정한다.

(e) 재선고 자격이 있는 재소자는 다음과 같다:

(1) 제667.5항 제(c)호 또는 제1192.7항 제(c)호에 심각한 및/또는 폭력적 중죄로 정의되지 않은 중죄의 유죄판결로 제667항 제(e)호 제(2)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에 따라 선고된 부정기 종신형을 복역 중인 재소자.

(2) 재소자의 현재 형이 제667항 제(e)호 제(2)목 제(C)세목 제(i)조목에서 제(iii)조목까지 각 조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 제(C)세목 제(i)조목에서 제(iii)조목까지 각 조목에 나타난 범죄에 대해 부과되지 않은 경우.

(3) 재소자가 제667항 제(e)호 제(2)목 제(C)세목 제(iv)조목 또는 제1170.12항 제(c)호 제(2)목 제(C)세목 제(iv)조목에 나타난 범죄로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f) 선고 취소 청원 접수 시 법원은 청원자가 제(e)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청원자가 제(e)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해당 청원자의 재선고가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청원자는 제667항 제(e)호 제(1)목 및 제1170.12항 제(c)호 제(1)목에 따라 재선고된다.

(g) 제(f)호의 자유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1) 범죄 유형, 희생자의 부상 정도, 이전 복역 기간 및 범죄 간격을 포함한 청원자의 형사 유죄판결 이력

(2) 청원자의 구금 중 징계 기록 및 재활 기록

(3)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새로운 선고로 인해 공공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다른 모든 증거.

(h) 어떤 경우에도 본 법률에 따른 재선고가 원래의 선고보다 더 긴 형량을 부과할 수는 없다.

(i) 제977항 제(b)호에도 불구하고 재선고를 청원하는 피고인은 재선고에서 변론이 수정되지 않고 해당인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나 재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정 출석을 포기할 수 있다. 출석 포기는 피고인이 서면으로 서명한다.

(j) 피고인을 처음 판결했던 법원에서 재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의 청원을 판결할 판사를 지정한다.

(k) 본 항의 어떤 내용도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l) 본 항 및 관련 항의 어떤 내용도 본 법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판결의 중국성을 축소하거나 폐기하지 않는다.

(m) 본 법률에 따라 명령된 재선고 심리는 캘리포니아주 헌법(Marsy's Law) 제I조 제28항 제(b)호 제(7)목에 의거한 "유죄판결 사후 석방"으로 간주된다.

제7항. 확대 해석

본 법률은 캘리포니아주 국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공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제8항. 가분성

본 법률 조항 또는 이에 따른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무효 사항은 무효 조항 또는 적용이 제외되면 효력이 생기는 본 법률의 적용이나 기타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제9항. 충돌 법안

본 법안이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만 동일한 선거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다른 충돌 투표법안으로 대체되고 이후 충돌 투표법안이 무효화되는 경우, 본 법률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유권자의 취지이다.

제10항. 발효일

본 법률은 유권자에 의한 법 제정 후 첫 날에 발효된다.

제11항. 개정

본 법령의 전문에 달리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률의 조항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a) 입법부 각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출결 확인을 통해 재적 의원 삼분의 이가 찬성하고 주지사가 동의한 법령; 또는

(b) 입법부 각 의회를 통과한 법령으로 의사록에 기록된 출결 확인을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고 다음 투표에 회부되어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한 법령; 또는

(c)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해서 발효되는 법령.

발의안 제37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보건 및 안전법에 조항을 추가하며, 새로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다음과 같이 법을 제정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알 권리 법

제1항. 배경 및 선언

(a) 캘리포니아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식품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유전자 변형 동식물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유전자를 조작해 생물에 삽입하는 것은 모호한 과정이다. 그 결과가 항상 예측 또는 통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b) 정부의 과학자들은 유전자 공학 고유의 기술인 식물 내 DNA 인공 삽입이 채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으로 식품에 기존 독성물질 수준이 증가되고 새로운 독성물질과 건강상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c)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의무 표시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섭취하는데 따른 잠재적 건강상 영향을 추적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d) 연방법이나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식품 생산자가 유전자 변형을 통한 식품 생산 여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이러한 식품의 안전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한, FDA는 심지어 유전자 변형 농작물 개발자들에게 당국과의 협의도 요구하지 않는다.

(e)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자신이 먹는 식품이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된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유럽 연합(EU) 회원국, 일본 및 미국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오십개국에 유전자 변형 식품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이 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된 식품의 의무 표시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없다.

(g) 공개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식사 및 종교 금기를 어기게 된다.

(h)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재배 또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전자 변형 농작물은 잡초를 제거하는 농약인 제초제를 견디도록 만들어진다. 그 결과, 수억 파운드의 제초제가 미국 농장에서 추가로 사용되었다. 제초제의 추가 사용 때문에 제초제에 저항력이 있는 해초가 무성해졌고 이로 인해 점점 더 유독한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유독한 제초제가 우리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고, 식수를 손상시키며, 농장 근로자와 소비자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한다.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식품의 구매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i) 유기 농업은 캘리포니아주 농업의 중대한 부분으로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은 유기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기농 인증 경작지 넷 중 하나는 거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기농업은 연간 20퍼센트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j) 유기농 재배 농부가 유전자 조작 종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농부의 농작물이 많은 유전자 조작 농작물이 있는 이웃 농지로 인해 우발적으로 오염되는 위기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오염의

위험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유기농작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떨어져 유기농 산업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의 유기농 농부들과 유기농 식품 산업에 피해를 입히면서 생산된 식품의 구매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k) 유전자 변형 식품을 "천연", "자연에서 만든", "자연에서 기른" 또는 "순수 자연" 등의 단어를 사용해 라벨을 부착하고 광고 및 마케팅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제2항. 취지 성명서

본 법안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이 구매하고 섭취하는 식품이 유전자를 변형시킨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고 천연 식품이라는 잘못된 표시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권리를 확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제3항. 제6.6조(제110808항 이하)가 보건 및 안전법 제 104부 제5편 제5장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6.6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알 권리 법

110808. 정의

다음의 정의는 본 조의 목적으로만 적용된다:

(a) 상업적으로 경작. "업적으로 경작"은 한 사람이 사업이나 무역 과정에서 기르거나 재배해서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b) 효소. "효소"는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에 촉매 작용을 하고 반응이 완료된 후에도 스스로 파괴 또는 변형되지 않는 단백질을 의미한다.

(c) 유전자 변형. (1) "유전자 변형"은 다음의 적용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생물에서 생산된 식품을 의미한다:

(A) DNA 재조합 기술과 세포 또는 세포 기관 내 핵산 직접 주입을 포함한 시험관 핵산 기술, 또는

(B) 원형질체 융합을 포함한 세포 융합 또는 기증 세포/원형질체가 자연적 증식이나 재조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분류과에 속하지 않게 되는 자연적 생리, 생식 또는 재조합 장벽을 극복하는 교배 기술.

(2) 이 호의 목적 상:

(A) "생물"은 복제, 생식 또는 유전 물질 이동이 가능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B) "시험관 핵산 기술"은 극소 주입, 극대 주입, 화학 천공법, 전기 천공법, 미세캡슐화 및 리포솜 융합 등을 통해 생물체 밖에서 준비된 유전 물질을 생물에 직접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벡터 시스템 및 기술을 이용하는 DNA 또는 RNA 재조합 기술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외의 식품을 의미하며, 통조림 제조, 훈제, 압착, 조리, 냉동, 건조, 발효 또는 제분 등의 가공 처리를 한 농산물로 만든 모든

식품도 포함된다.

(e) 가공 보조물. "가공 보조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지만 최종 형태로 포장되기 전에 해당 식품에서 제거되는 물질;

(2) 가공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고 식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으로 변형되며, 자연 상태에서 해당 식품에서 발견되는 성분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물질; 또는

(3) 가공 과정에서 기술적 또는 기능상 효과를 위해 식품에 첨가되지만 최종 식품에 미미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최종 식품에서 기술적 또는 기능상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물질.

(f) 식품 시설. "식품 시설"은 제113789항에 기술된 의미를 뜻한다.

110809. 식품 유전자 변형에 관한 공개

(a) 2014년 7월 1일부터 소매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식품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상표 표시가 된다:

(1)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해서 제공되는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해당 상품의 포장 앞면에 명확하고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따로 포장하거나 상표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를 위해 해당 상품을 진열하는 소매점의 진열대나 상자에 라벨을 부착한다;

(2)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 포장 앞면이나 뒷면에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 또는 "부분적으로 유전자 변형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있음"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고 잘 보이게 표시한다.

(b) 본 항 제(a)호와 제110809.2항 제(e)호는 유전자가 변형된 모든 성분의 기재나 증명을 요구하거나 "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일반 제품명이나 식품의 주요 제품 수식어 바로 앞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10809.1.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천연"으로 잘못된 상표 표시

제110809항에 규정된 모든 공개 요건 외에도 식품이 제 110808항 제(c)호 또는 제(d)호의 정의를 충족하고 제 110809.2항에 의거해 라벨 부착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식품이 소매점의 마크에 동반된 라벨 또는 광고나 판촉물에 해당 식품이 "천연", "자연에서 만든", "자연에서 자란", "순수 자연"임을 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의도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경우 해당 식품은 캘리포니아주에 존재할 수 없다.

110809.2.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 표시—면제

제110809항의 요건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자체가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동물만으로 구성되거나 그런 동물에서 전적으로 유래된 식품으로 해당 동물이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 사료를 먹었거나 주입받았거나 유전자 공학 수단을 통해 생산된 약물을 주입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b)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유전자 변형 종자나 식품

사용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르고, 재배했거나 생산한 농산물에서 유래한 식품.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이나 식품에 관해 제110809항 제(a)호의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상품이나 식품을 자신에게 판매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상품이나 식품이 (1)고의로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았고; (2)언제든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는 식품과 분리되었고 고의로 혼합되지 않았다는 선서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식품이 앞의 문장에 기술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선서 진술을 제공 시 앞의 문장에 기술된 확인서를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공급업체에서 받은 선서 진술에 의지할 수 있다.

(c) 한 가지 이상의 유전자 변형 가공 보조물 또는 효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110809항에 해당하는 모든 가공식품.

(d)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9부(제23000항 이하)에 기술된 알코올성 음료 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에 해당하는 모든 알코올성 음료.

(e) 2019년 7월 1일까지 한 가지 이상의 유전자 변형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110809항에 해당하는 모든 가공식품으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1) 이러한 어떤 성분도 해당 가공식품 전체 중량의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2) 해당 가공식품에 이러한 성분이 10가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f) 독립기관에서 식품이 고의로 유전자 변형 종자나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생산되거나 그와 혼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단이 당국이 채택한 규정에서 승인한 샘플링 및 테스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식품.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와 런던곡물거래협회(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GAFTA) 등의 국제 공인 기관이 권고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링 계획에 따라 샘플링이 실시되지 않는 한 어떤 샘플링 절차도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이 아닌 경우 어떤 테스트도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식품의 특정 DNA 배열 및 특정 단백질 탐지, 확인 및 정량화를 위한 수행 기준 및 검증 가이드라인"(CAC/GL 74 (2010))에 부합하고; (2) 어떤 DNA도 탐지할 수 없는 가공식품의 테스트에 의존하지 않는다.

(g) 1990년 연방 유기농 식품법(Organic Food Products Act)과 그에 따라 미국 농무부에서 공포한 규정에 의거해 "유기농" 판매를 위해 라벨 부착, 마케팅 및 제공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식품.

(h)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1) 사람이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공식품 또는 (2) 식당에서 또는 사람이 즉시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의 판매에 주로 종사하는 식품 시설에서 접대, 판매 또는 제공되는 식품.

(i) 식품 형태의 약제.

110809.3. 규정 채택

농무부는 본 조의 시행 및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제110809.2항에 명시된

예외사항 이외의 예외를 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0809.4. 시행

제8장 제4조(제111900항 이하)에 의거한 조치 이외에도 제110809항 또는 제110890.1항의 위반은 민법 제1770항 제(a)호 제(5)목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3부 제4편 제1.5권(제1750항 이하)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위반 혐의로 인한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거나 이에 대한 의존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0809항에 규정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제110809.1항에서 금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각은 최소한 위반 혐의가 있는 각 포장이나 제품의 실제 또는 제공 소매가격 만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된다.

제4항. 시행

보건 및 안전법 제111910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11910. (a) 제111900항의 조항이나 법령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본 항에 의거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은 심리 시 재판권을 가지며 제출된 소송 이유에 대해 제6.6조(제110808항 이하) 또는 제5장 제7조(제110810항 이하)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모든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권 제3장(제525항 이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인이 증명할 필요가 있거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적절한 구체책이 부족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나 손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거나 개인의 고유하거나 특수한 손해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 제(a)호에 규정된 금지 명령 이외에도 법원은 해당 사람, 조직 또는 단체에 법원이 결정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수사 및 기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c) 본 항은 농무부와 그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제111900항 또는 법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본 장을 시행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5항. 부당 표시

제110663항이 보건 및 안전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110663. 라벨 부착이 제110809항이나 제110809.1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식품은 부당 표시된 것이다.

제6항. 가분성

본 발의안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화되거나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해당 무효 조항 또는 위헌 조항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의안의 다른 조항 또는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본 발의안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제7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발의안은 본 발의안의 조항에 해당되는 미가공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덜 엄격하거나 완전한 라벨 부착을 제시하는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이나 규정의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8항. 발효일

본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10항 제(a)호에 의거한 법 제정 즉시 발효된다.

제9항. 충돌 법안

동일한 주 광역 선거에서 제기된 다른 법안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판매 및/또는 라벨 부착에 관한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다른 법안의 조항에 유권자들이 찬성한다면 본 법률의 조항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법안의 조항이 본 법안의 요건 충족을 방해하거나 면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른 법안의 조항이 본 법률의 조항 준수를 방해하거나 면제하고 본 법률이 더 많은 수의 찬성 표를 득표하는 경우, 본 법률의 조항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법안의 조항은 무효가 된다.

제10항. 개정

본 발의안은 입법부에 의해 수정될 수 있지만 각 의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의 득표로 통과된 법령에 의해 그 취지 및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수정된다.

발의안 제38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교육법, 형법 및 세입 및 과세법의 조항을 개정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될 기존 조항에 취소선¹이 인쇄되며 제안된 추가 조항은 새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

제1항. 제목

본 법안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으로 칭한다.

제2항. 배경 및 목적

(a) 캘리포니아주는 우리 아이들과 주의 미래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각 학생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전국 46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급 정원 수로 이 분야에서 50개 주 중 최하위인 50위를 기록하고 있다.

(b) 최근의 예산 삭감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들은 더 하위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캘리포니아 학교 예산은 2백억 달러 이상 삭감되었다. 따라서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으며 40,000명 이상의 교사가 해고되었다.

(c) 또한 우리는 여러 연구에서 최선의 교육 투자 중 하나로 확인된 유아기 발달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공립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3-4세 유아격 유아의 40퍼센트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극빈층 영유아의 5퍼센트만이 유아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d) 우리는 더 많은 영유아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아이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학교와 유아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국가 경제와 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세계경제에서 경쟁할 수 없다. 고숙련 노동력이 없다면 우리의 주는 직업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e)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때이다. 미봉책이 아니라 우리 주와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교에 진정한 혁신적 투자를 할 때이다. 본 법률은 학교가 수준 높은 인문학, 음악, 체육,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및 직업 및 기술 교과 과정과 더 적은 학급 정원수, 학교 도서관, 양호교사 및 상담교사를 포함해 각 학생의 대학 진학과 직업 준비를 지원하는 균형잡힌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준다.

(f) 본 법률은 신규 자금을 학교 개선에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을 새크라멘토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학부모, 교사,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사,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각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g) 모든 학교를 혁신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본 법률은 차터 스쿨, 카운티 스쿨,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지역 학교에 신규 자금이 지원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한다. 신규 자금은 교육구 본부가 아니라 지역 학교에 충당되는 자금으로 학생당 기준으로 모든 지역 학교에 배분될 것이다.

(h) 본 법안은 지역 학교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책임지게 한다. 운영위원회는 자금 지출을 통해 어떻게 교육적 성과를 개선했는지와 지출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어떤 결과를 달성했는지 보고하여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돈이 현명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i) 본 법률은 관리 비용에 지출되는 신규 자금이 1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며 학교에서 신규 자금을 급여와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j) 본 법률은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높이고 등교 가능한 학생 수를 확대함으로써 빈곤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k)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우리는 더 좋은 학교와 제대로

37

38

교육을 받은 인력이 우리 주의 경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학교 개선과 유아기 교육 비용을 모두 분담해야 한다.

(l) 우리 주의 학교와 유아기 교육 프로그램은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추가 예산 삭감을 허용하기 보다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모든 아이들과 교실에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고 이러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동참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주의 학교를 혁신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m) 본 법안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여 최고 소득자가 가장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 차등 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자금을 확보한다.

(n) 본 법안 발효 후 첫 4년 동안은 아래 기술된 대로 자금의 60퍼센트를 K-12 학교에 지원하고 10퍼센트는 유아기 교육에 30퍼센트는 주의 부채를 삭감하고 신규 교육 투자를 방해하는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2017년부터 나머지 8년 동안은 자금 100퍼센트 모두를 K-12 및 유아기 교육 기금 확대에 사용하게 된다. 세입의 불안정한 변동을 막고 필요한 학교 및 유아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1인당 개인소득 성장율을 초과하는 세입은 기존 교육 공채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주가 학교와 유아 교육시설을 건설하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신규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o) 본 법안을 통해 확보한 모든 신규 자금은 지역 학교, 유아 보육 및 교육, 학교 공채 부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신탁 기금에 보관할 것이다. 입법부와 주지사는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이 공정하게 모든 지역 학교에 돌아가도록 하는 학생당 배분 제도를 변경할 수도 없다.

(p) 그러나 본 법안에는 감시, 감사 및 공개를 요구하는 효과적인 책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학교 예산이 투명해지고 모든 학교의 예산 사용 내역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 본 법률의 분배 또는 배분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q) 본 법안은 또한 유권자가 재찬성하지 않는 한 12년 후에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책임감을 한층 더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신규 자금으로 실제로 교육 성과를 개선했는지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됨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폐지함으로써 납세자를 보호하게 된다.

(r) 본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본 발의안이 즉시 전면 시행되는데 주정부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극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 학교와 아이들이 본 법률이 제공하는 교육 투자의 혜택을 모두 누리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발의안은 2단계로 시행된다. 2016-17년 회계연도까지 첫 4년간의 회계연도 동안은 자금의 30 퍼센트인 약 30억 달러를 주정부의 학교 공채 및 기타 공채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청산에 충당해 이 금액을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에 중요한 다른 예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재원으로 확보한다. 2017-18년 회계연도부터는 본 발의안이 전면 시행되어 자금의 100퍼센트 전부가 신규 자금으로 발의안 제98호 또는 K-12 교육이나 유아기 프로그램을 위한 다른 현 자금을 대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시 자금의 70 퍼센트를 본 법률이 요구하는 학교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확대에 사용하고 4년 후에는 전체 자금 100 퍼센트를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데 사용한다.

제3항. 목적 및 취지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본 법률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학업 성과, 졸업률, 직업, 대학, 인생 준비,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생당 자금을 확대함으로써 차터 스쿨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강화 및 지원.

(b) 빈곤가정 및 위기 아동을 위한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재원을 회복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의 아동 교육 강화 및 지원.

(c) 공립 교육 자금의 사용에 관한 책임성, 투명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d) 본 법률로 발생하는 세입이 K-12 교육 활동에 사용되도록 보장;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보육 및 교육 확대 및 강화; 본 법안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와 상황 하에서 주정부의 현 교육 공채 부채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정부의 전반적 회계 상태를 강화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충분한 미래 투자 장려.

(e) 본 법률로 발생하는 세입은 주정부의 기존 K-12 교육 또는 보육 및 교육 자금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보장.

(f) 입법부가 본 법률로 발생하는 세입을 다른 목적으로 차용 또는 전용하거나 지역 학교에 기금 사용처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보장.

제4항. 제9.7편(제14800항 이하)이 교육법 제1권 제1부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9.7편.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유아 교육 투자 및 공채 부채 삭감법

14800. 본 편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유아 교육 투자 및 공채 부채 삭감법으로 칭한다.

14800.5. 본 편, 그리고 제1권 제1부 제6편 제1.8장(제 8160항 이하)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 "지역 교육기관(LEA)"에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사무소, 독립 공립 차터 스쿨 운영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청각장애아 학교와 시각장애아 학교를 포함한 주정부 직접

교수법 서비스 운영위원회가 포함된다.

(b) "K-12 학교" 또는 "학교"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학생을 입학시키고 LEA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차터 스쿨, 카운티 스쿨 또는 장애아 학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편의 "유치원"이라는 용어에는 전환기 유치원이 포함된다.

(c) "보육 및 교육(ECE)"은 프리스쿨 및 신생아부터 유치원 연령 아동까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아동에게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부모와 양육자의 보육 및 교육 역량을 강화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양쪽 모두를 포함한다.

(d) 2013-14학년도 "재학생 수"는 2012-13학년도에 보고된 10월 재학생 수로 과거 3년간의 10월 재학생 수 평균 증감율을 의미한다. 그 이후 학년도의 "재학생 수"는 제 46305항에 따라 계산된 이전 학년도의 평균 월간 실제 재학생 수 또는 제46305항의 수치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학년도의 10월 재학생 수로 과거 3년간 재학생 수의 평균 증감율을 의미한다. 각 LEA의 재학생 수는 모든 LEA 관할 학교 재학생 수의 합계이다. 주 전체 재학생 수는 모든 LEA 재학생 수의 합계이다.

(e)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졸업률, 직업, 경력, 대학 및 인생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LEA 관할 학교 운영위원회의 공청회 승인을 받아 다음 목적을 위해 K-12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1) 인문학, 체육,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역사, 윤리, 경제, 영어 및 외국어, 기술 교육, 직업 교육 또는 경력 교육 지도.

(2) 학급 정원수 축소.

(3) 학교 현장의 상담교사, 사서, 양호교사 및 기타 지원인력 충원.

(4) 수업일수 또는 수업년수 연장, 썸머스쿨, 프리스쿨, 방과후 프로그램 및 개인교습을 통한 학습시간 연장.

(5) 영어 학습자,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아동을 위한 추가적 사회 및 학업 지원.

(6)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발달을 위한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안 교육 모델.

(7) 학생의 성공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학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확대.

(f) "CETF 자금"은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1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예탁된 세입과 최초 배분까지의 해당 자금의 모든 이자와 재배분되기 전까지의 징수된 자금의 모든 이자를 의미한다.

(g) "교육감"은 교육부 교육감을 의미한다.

14801. (a)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CETF)은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창설된다. CETF 자금은 위탁되며,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상관없이 본

법률에 기술된 용도로만 지속적으로 충당된다.

(b)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으로 옮기고 배분된 CETF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XIII B조의 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는 지출금이 아니다. CETF 자금은 본 법률의 목적으로만 위탁되고 일반기금 수입 또는 세금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XVI조 제8항에 따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제IV조 제12항 또는 제XVI조 제20항의 조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c) CETF 자금은 본 법안에 기술된 목적으로만 배분되고 사용되며 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CETF 자금은 제14813항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도 일반기금 또는 다른 어떤 기금, 사람 또는 단체에 이전되거나 대출되지 않는다.

(d) LEA에 배분된 CETF 자금과 CETF 교육감은 2012년 11월 1일 현재 K-12 학교와 보육 및 교육에 위탁된 기금을 보충하며 생계비 변화 및 가용 연방 기금 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쳐 해당일 현재 본 목적을 위해 충당된 1인당 주정부, 지역 또는 연방 기금 수준을 대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K-12 교육 제도와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CETF 이외의 자금에서 충당된 금액은 헌법상 규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법률에 따라 배분된 자금의 결과로 축소되지 않는다.

14802. (a) 이에 따라 모든 CETF 자금의 배분과 사용을 감시하고 회계 책임을 담당할 회계감독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회 구성원은 회계감사관, 주 감사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재무국장이다. 회계감독위원회는 CETF 자금이 본 편에 기술된 대로 정확하게 분배되고 본 편에 기술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독위원회, 회계감사관,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관리 교육감에 의해 발생한 실제 비용은 CETF 자금으로 충당하지만 해당 비용이 3년간 기금에 예탁한 전체 세입의 0.3퍼센트, 즉 연간 평균 0.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본 항에서 승인한 비용의 30퍼센트를 제14802.1항에 따라 제공된 임시 지원금에서 공제하고 본 항에서 승인한 비용의 60퍼센트는 제14803항에 따라 K-12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하며 10퍼센트는 제14803항에 따라 ECE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한다. 그 후에는 제14803항에 따라 본 항에서 승인한 비용의 85퍼센트는 K-12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하고 15퍼센트는 ECE를 위해 확보한 자금에서 공제한다.

(c) 회계감독위원회는 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대로 비상 규정을 포함한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4802.1. (a)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회계감사관은 본 항에 규정된 대로 CETF 자금의 30퍼센트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따라 배정한다. 그 후에는 모든 CETF 자금을 제14803항, 14804항, 14805항, 14806항 및 14807항에 따라 배정한다.

(b)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CETF 자금"이란 용어는 제14803항에 사용된 대로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8항에 따라 배정된 CETF 자금의 70퍼센트를 언급하고 "임시 지원 자금"은 본 항에 따라 배정된 CETF 자금의 30퍼센트를 언급한다.

(c) 2016-17회계연도 말까지 분기별로 회계감사관은 제14813항에 따른 배정을 위해 동일 항에 의해 설립된 교육 채무 변제 기금에 대한 임시 지원금의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배정한다.

14803. (a) 본 법률의 발효일 후 온전한 첫 두 회계연도 동안 회계감사관은 CETF 자금의 85퍼센트를 지역 K-12 학교 교육 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확보하고 CETF 자금의 15퍼센트는 본 법률에 기술된 금액과 방법으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하도록 교육감에게 배정하기 위해 확보한다. 이러한 자금에서 제14802항 제(b)호에 따른 실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14804항에 의거한 "가용 수입"으로 간주한다.

(b) 자금 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CETF 자금은 본 법률 발효일 후 온전한 첫 두 회계연도 이후 각 회계연도마다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 (A) 2015-16회계연도를 시작으로 2017-18회계연도 이외의 매 회계연도에는 회계감독위원회가 과거 5년간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평균 소득 성장률을 결정해서 이 성장률을 바로 이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LEA와 교육감에게 배분됐던 CETF 자금에 적용한다.

(B) 2017-18회계연도에는 제14802.1항 제(a)호에 의해 제공된 임시 지원 자금을 K-12 학교 및 ECE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지원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시작 시 회계감독위원회가 과거 5년간 캘리포니아주의 1인당 평균 소득 성장률을 결정해서 이 성장률을 바로 이전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LEA와 교육감에게 배분됐던 CETF 금액의 1.429배로 적용한다.

(2) 제(1)목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서 제14802항 제(b)호에 따른 실제 비용을 제한 금액을 제14804항에 의거한 "가용 수입"으로 간주하며 당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분기별로 LEA와 교육감에 배분하는 데 사용된다.

(c) 가용 수입을 초과하는 CETF 자금은 제14813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에 배분된다.

(d) LEA에 배분된 모든 CETF 자금은 수령 후 1년 이내에 LEA에 의해 지출되지만 LEA가 이 자금의 10퍼센트 이하를 다음 학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원래의 1년 동안 지출하지 않은 모든 자금과 다음 해로 이월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자금을 징수한다. 징수된 모든 자금은 가용 수입으로 간주되며 다른 가용 수입과 합산되어 제14804항에 따라 재배분된다.

14804. (a) 분기별로 회계감사관은 가용 수입의 15퍼센트를 교육감이 제6편 제1.8장(제8160항 이하)에 규정된 방법과 액수대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하도록 이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배분한다.

(b) 분기별로 회계감사관은 제14805항에서 14807항까지의 각 항에 따라 산출된 액수대로 LEA 교육구 내의 각 K-12 학교에 지출하도록 배정된 가용 수입의 85퍼센트에 대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하고 LEA에 배분한다.

(c) 본 항과 제14802.1항, 제14803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은 법률적 조치 없이 자동 이행된다. CETF 자금과 임시 지원 자금은 입법부나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V조 제12항에 따른 연간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주지사나 입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 실패에 따라 자금의 분배가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14805. 제14804항 제(b)호에 따라 분기별로 LEA에 배분된 가용 수입 중 70퍼센트를 회계감사관이 학생당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배분한다. 각 LEA에 배분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 LEA의 교육구에 따라 각 K-12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a) 회계 감사관은 다음의 세 가지 학년 분류 각각에 대해 일관적인 주 전체 학생당 보조금을 설정한다: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각 학년("K-3 보조금"), 4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4-8 보조금"),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9-12 보조금").

(b) 세 가지 일관적 보조금은 각 학년 분류별 주 전체 총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학생당 4-8 보조금액은 K-3 보조금액의 120퍼센트이고 학생당 9-12 보조금액은 학생당 K-3 보조금액의 140퍼센트이다.

(c) 각 LEA는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각 학년의 재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K-3 보조금을 받고, 4학년부터 8학년까지 각 학년의 재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4-8 보조금을 받으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의 재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9-12 보조금을 받는다.

(d) 이러한 각 학생당 보조금은 재학생 수로 LEA에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 해당 K-12 학교에 할당된다.

(e) 제(a)호와 제(b)호에 규정된 학년 조정이 재학생 수에 따른 모든 K-12 학교에 대한 재학생 수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자금의 동등한 학생당 배분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이다.

14806. 제14804항 제(b)호에 따라 분기별로 LEA에 배분된 가용 수입 중 18퍼센트를 회계감사관이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으로 배분한다. 각 유자격 LEA에 배분되는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 그리고 LEA 교육구 내 각 K-12 학교에 할당된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a) 미 농무부에서 연방 Richard B를 시행하기 위해 수립한 소득 자격 기준에 따라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든 주 전체 K-12 학교의 총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1966년 러셀 전국 학교 급식법 및 연방 아동 영양법(Russell National School Lunch Act and the federal Child Nutrition Act of 1966)("무료 급식 유자격 학생")에 따라 회계감사관은 해당 저소득 학생에게 추가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관적인 주 전체 학생당 보조금을 설정한다.("저소득 학생당 보조금")

(b) 각 LEA는 무료 급식 유자격 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을 받는다.

(c) 각 저소득 학생당 보조금은 재학생 수로 LEA에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 해당 K-12 학교에 할당된다.

14807. 제14804항 제(b)호에 따라 분기별로 LEA에 배분된 가용 수입 중 12퍼센트를 회계감사관이 학생당 기준으로 연수, 기술 및 수업 교재 보조금에 배분한다. 각 LEA에 배분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 LEA의 교육구에 따라 각 K-12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의 숫자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a) 회계감사관은 주 전체 모든 K-12 학교의 총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K-12 학교 교직원들의 교육 기술 향상과 최신 기술 및 수업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일관적인 주 전체 학생당 보조금을 설정한다.("연수, 기술 및 수업 교재 보조금" 또는 "3T 보조금").

(b) 각 LEA는 LEA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유 학생 수와 동일한 수의 3T 보조금을 받는다.

(d) 이러한 각 학생당 3T 보조금은 재학생 수로 LEA에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을 부여한 해당 K-12 학교에 할당된다.

14808. (a) 제(c)호 제(2)목에 규정된 제한적 예외를 제외하고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따라 LEA에서 수령하는 자금은 제14805항 제(d)호, 제14806항 제(c)호, 제14807항 제(c)호 각각에 따라 할당된 해당 K-12 학교에서만 사용되고 부과되며 본 항에서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b) 교육 프로그램 및 저소득 학생 보조금은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거나 3T 보조금에 허용된 목적으로 모든 학교 3T 보조금의 총 200퍼센트까지 사용될 수 있다. 3T 보조금은 최신 수업 교재 및 기술을 습득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 졸업률, 직업, 경력, 대학 및 인생 준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사의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c) (1) 제(2)목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4805항에서 제14807항까지 각 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자금은 K-12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 서비스 또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학교나 학생들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자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수를 지급받는 시간의 최소한 90퍼센트를 물리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 전임 인력, 그 시간을 물리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 또는 LEA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 관리 비용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2) (A) 각 LEA 운영위원회는 수령하는 각 학생당 보조금에서 동일한 비율로 본 편의 공청회, 감사, 예산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제된 자금은 2년간 수령한 총 보조금의 2퍼센트, 즉 연간 평균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 교직원이 현장에서 또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외부에서 제공되는 기술 향상 프로그램의 비용은 외부 제공이 현장 제공보다 더 비용효과적일 경우 학생당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d) 어떤 CETF 자금도 2012년 11월 1일 현재 해당 인력 또는 인력 범주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을 초과하는 해당 인력 또는 인력 범주의 급여 인상 또는 복리후생 확대에 사용될 수 없지만 본 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는 직위는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급여 및 복리후생 인상분을 CETF 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제 또는 전일제 비율 기준으로 다른 동일한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인상분을 수령할 수 있다.

14809. LEA에 대한 분기별 CETF 배분이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독위원회는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명시된 자금 지원 범주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각 LEA와 해당 LEA 내 각급 학교에 할당된 금액의 목록을 작성한다. 위원회는 적당한 장소에서 이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교육감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이 온라인 목록의 링크를 게시한다.

14810. 입법부와 주지사 또는 학교에 관할권을 가진 LEA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그 어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도 해당 학교의 CETF 자금 사용처를 지시할 수 없다. 각 LEA의 운영위원회만이 단독으로 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만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a) 매년 운영위원회는 직접 또는 적합한 대리인을 통해 학부모, 교사, 관리자, 기타 교직원 및 학생 등 적절한 관계자("학교 커뮤니티")와 함께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CETF 자금의 사용처와 이유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b) 공청회 후 LEA 또는 그 적합한 대리인은 학교 커뮤니티가 LEA의 권고안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교내 또는 학교 근처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 때 사용할 CETF 자금 사용에 관한 서면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c) 운영위원회는 CETF 자금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 매년 자금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운영위원회는 제안된 CETF 자금 지출로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과 위원회가 성과 개선 여부를 판단한 방법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설명해야 한다.

14811. (a) CETF 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각 LEA는 해당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야 하며 이 계정은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계정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각 LEA는 제14805항에서 14808항까지 각 항에 따라서만 해당 계정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해야 한다.

(b) 다른 모든 법적 요건 외에도 학군에 요구되는 독립 재무 및 준법 감사를 통해 CETF 자금이 본 편에서 요구한 대로 적절하게 분배되고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이 학군의 감사 요건에 추가되며 제14504항에 따라 회계감독관이 매년 검토하고 감시하는 감사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된다.

(c) LEA는 학군 내 각 학교에서 CETF 자금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었고 제14810항에 따라 지출의 목표가 학교 커뮤니티에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수립한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서를 매년 각 학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준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교육감은 본인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구성원 및 연구자들이 LEA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정부 내 어디서나 보고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812. (a) 2012-13학년도부터, CETF 기금 수령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본 법률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각 LEA의 집행 위원회는 LEA의 재판권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 예산을 작성해 온라인 상에 게시해야 하며 이같은 예산은 이전 회계연도 해당 학교의 실제기금과 지출을 당해 회계연도 해당 학교의 예산 기금과 지출을 비교하여 나타내야 한다. 교육감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2012-13학년도까지 현재와 과거 학년도에 대해 주정부 내 어디에서나 커뮤니티 구성원 및 연구자들이 그러한 예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예산에는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모든 기금의 출처 및 금액 그리고 이러한 기금이 각 출처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예산은 교육감이 디자인 및 승인한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출은 학생 당 전체 지출, 평균 교사 급여별, 그리고 수업, 수업 지원, 행정관리, 유지관리 및 기타 중요한 카테고리별로 보고해야 한다. 주 교육부는 각 학군 및 학교가 적절한 카테고리별로 일관되게 지출을 보고하고 학교와 학군 지출을 일관되게 구별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행을 확인해야 한다. 또 예산에는 직원의 수, 유형 및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구별한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일체의 개인 신분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실제 급여와 수당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각 K-12 학교의 경우 제64001항의 제(d)호, 제(f)호 및 제(h)호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단일 학교 계획서에 이같은 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b)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서 할당 받는 기금은 학생들에게 현재 다른 주, 지역 및 연방 자금원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다. 2013-14년 회계연도부터, LEA는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것 이외의 다른 기금을 사용하여 물가 변동분 반영 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지출을 최소 2012-13년 회계연도 학생 1인당 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해당 학교의 "노력 목표치 유지"라고 부른다. 제(a)호에 정해진 일관된 학교 예산에는 2012-13년 회계연도에 학교에서 본 법률에 따라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기금을 사용하여 학생 1인당 지출한 내역에 대한 명확한 명세, 그리고 학교가 연차 노력 목표치 유지를 달성할 경우 현재 학년도의 학생 1인당 지출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해에든 LEA가 학교 중 하나에 대해 노력 목표치 유지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LEA는 해당 학교에 대해 해당 학교 현장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제14810항에 의거해 해당 학교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열리는 공개 회의에서 설명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LEA 소속 당국자는 이 회의에서 해당 학교에 대해 노력 목표치 유지를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같은 목표치 달성 실패가 학생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LEA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14813. (a) 제14803항에 의거해 회계감독위원회(Fiscal Oversight Board)가 가용 수입, 그리고 위원회와 감사관의 실제 상환 가능 비용을 모두 초과한다고 결정하는 제14802.1항의 제(a)호에 의거해 할당된 각종 기금과 CETF는 감사관에 의해 분기 단위로, 이로써 주 재무부 내에 설립하는 교육 채무 변제 기금(Education Debt Service Fund)으로 이전해야 한다. 교육 채무 변제 기금의 자금은 신탁에 보관하며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에 관계 없이 본 항에 정해진 배타적인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b) 교육 채무 변제 기금의 자금은 차기 회계연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으로 (1) 학교 시설의 설비 및 기구 장만 또는 그러한 학교 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리스를 포함하여 유아원부터 대학까지 시설의 건설, 재건축, 복구 또는 대체를 위해 주정부가 발행했거나 발행하는 채권("학교 채권") 또는 (2) 제(c)호가 허용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청소년야동 병원 또는 그 외 다른 일반공채 목적으로 주정부가 발행했거나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채무의 상환, 의무 이행 또는 완수를

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c) 교육 채무 변제 기금으로 이전하는 자금 중에서 감사관은 학교 채권,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일반 기금을 사용한 당해 채무 상환 지급 비용을 상쇄하거나, 채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 채권,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의무를 이행 또는 완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일반 기금에 대한 지출 감축분으로 이전해야 한다; 단, 교육 채무 변제 기금의 자금은 채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이 먼저 모든 미불 학교 채권에 대한 당해 채무 상환 비용에 대해 일반 기금을 전액 변상하기 전까지는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당해 채무 상환 비용을 상쇄하거나 또는 청소년아동 병원 또는 기타 일반공채에 대한 의무를 이행 또는 완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전된 기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VI조 제8항의 목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헌법의 제XIII B조에 의거해 승인된 일반 기금 조세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4814. (a) 회계감독위원회는 각 회계연도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대해 독립 감사가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감사 보고서 전문과 감사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요약문을 모두 입법부 및 주지사에게 보고하고 회계감독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쉽게 눈에 띄게 게시하고 감독관의 홈페이지에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쉽게 눈에 띄도록 게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세입 및 과세법의 제17041.1항에 의거해 정해진 개인세 인상분에 따른 모든 수익,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대한 해당 수익금의 이전 전체, 각 LEA와 LEA의 관할권 내에 있는 각 학교가 해당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기금 액수 목록 및 제14811항의 제(c) 호에 의해 모든 LEA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LEA가 각 학교에서 기금을 사용한 방법과 LEA가 추구하고 달성한 성과를 보여 주는 요약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b) 교육감은 회계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각 LEA 및 ECE 제공자에게 감사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일관성 있게 보고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이나 포맷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c) 기금의 신중한 사용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본 법률의 의도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회계감독위원회는 연례 감사 실시 비용 및 필수 보고서를 작성, 배포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해당 항목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항목의 실제 비용은 제14802항의 제(b) 호에 의거 CETF 기금에서 지불될 수 있다.

(d) 연례 감사를 수행 및 보고하는 과정에서 독립 감사관은 회계감독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 또는 LEA 중 한 곳에서 본 법률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기금을 할당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무장관 및 일반시민에 보고해야 한다.

(e)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따라 기금의 할당 또는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의도적으로 상기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 1인당 기준으로 각 LEA 및 각 지역 학교에 기금을 할당 또는 배포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중범죄 유죄에 해당하며 법무장관의 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법무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425항의 제(b)호에 의거 카운티 지역구 검사에 의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카운티의 지역구 검사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할당 또는 배포된 기금에 대해 형사 처벌과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해야 한다.

제5항. 교육법 제4630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6305. 각 초등학교, 고등학교, 통합교육구, 각 독립 차터 스쿨, 카운티 교육사무소 및 주운영 학교는 의무 사항인 모든 다른 출석 데이터와 더불어 교육부가 마련한 양식을 사용하여 교육부 교육감에게 각 수업월별 세 번째 수요일 기준 유효 등록 학생 수와 각 수업월별 세 번째 수요일 기준 실제 출석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한다; 단, 해당일이 학교 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바로 전 수업일의 유효 등록 학생 수와 실제 출석 학생 수를 보고해야 한다. 수를 산정하는 날의 "유효 등록 학생 수"는 해당 학교가 수업을 개시한 수업연도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해당 학군의 정상 수업일에 등록된 학생 수에 이후 등록 학생을 더하고, 여기서 수업연도의 첫째 날 또는 본 항에 따라 숫자를 산정한 다음 전날의 바로 다음 첫 수업일 중 나중에 해당되는 날과 숫자를 산정한 날(산정일 포함) 사이에 최소 하루라도 출석하지 않은 모든 학생 수를 제외한 학생 수를 의미한다. 교육감은 필요에 따라 본 항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지역 교육 당국의 행정관리 의무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집 날짜 또는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제6항. 제1.8절(제8160항 이하)이 다음과 같이 교육법 제1권 제1부 제6편에 추가된다:

제1.8절. 유아기 품질 개선 및 확대 프로그램

제1조. 총칙

8160. 본 절 전체에 걸쳐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또는 "ECE 프로그램"은 모든 주정부 자금 지원 또는 주정부 보조금 지원 프리스쿨, 보육 시설 또는 출생부터 유치원생에 해당되는 유아를 위한 다른 주정부 자금 지원 또는 주정부 보조금 지원 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아동 가족 신탁 기금의 기금을 전체 또는 일부 지원 받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ECE 프로그램이 주기금만을 전적으로 지원 받지 않는 경우 "ECE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를 주정부가 지원함을 의미한다.

(b) "ECE 제공자" 또는 "제공자"는 ECE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허가 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c) "이용률"은 ECE 제공자가 본 절의 조항에 따라 프로그램 기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d) "변제율"은 ECE 제공자가 ECE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격이 있는 가족들을 대신해 주기금으로부터 받는 아동 1인당 지급금을 의미한다.

(e) "ECE 기금"은 제14803 및 제14804항에 따라 유아 보육 및 교육에 할당된 기금을 의미한다.

(f) "SAE 기금"은 제8161항의 제(b)호에 따라 ECE 프로그램을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용도로 배정된 기금을 의미한다.

(g) "고위험 아동"은 저소득 가정에서 출생했거나, 저소득 위탁가정에서 왔거나, 저소득 그룹 가정에서 왔으며 (1) 위탁 케어를 받고 있거나 아동 보호 서비스에 맡겨졌거나; (2) 본인들도 위탁 케어를 받고 있는 어린 부모의 자녀이거나; 또는 (3) 학대, 방치 또는 이용당했거나, 교육감이 추가 정의하는 바에 따라, 학대, 방치 또는 이용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8161. ECE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도록 연단위로 교육감에게 배정된다:

(a) ECE 기금의 최대 23퍼센트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기존 ECE 프로그램이 2009-10년 회계연도부터 2012-13년 회계연도 사이에 각 ECE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된 감축 수준에 비례하여 2008-09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기금 지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용도로 삼억 달러(\$300,000,000)를 사용하되 아래의 적용을 받는다:

(A) 회복은 아동 자격을 축소하거나 변제율을 축소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소시키거나 계약 건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그 외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감소/감축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 교육감이 이같은 기금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또는 모든 해당 승계 기관에 할당하도록 정해진 범위까지 기금을 할당한다.

(C) 교육감과 주 사회복지부가 이용률 부족으로 인해 특정 기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금은 제8168항 제(b)호에 따라 정해진 기준선 품질 변제율을 인상시키는 데 사용한다.

(2)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교육감과 주 사회복지부 또는 해당 승계 기관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2011-12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ECE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싱 검사 빈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 사회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라이선싱국에 오백만 달러(\$5,000,000)를 사용한다.

(3) 주 ECE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아동들의 진척도를 추적하기 위해 제8171항에 정해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구현하는 데 최대 천만 달러(\$10,000,000)를 사용한다.

(4) 제4조(제8167항 이하)에 정해진 조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QRIS 시스템")을 개발, 구현 및 유지하는 데

사천만 달러(\$40,000,000)를 사용한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제공자 변제율 또는 그 외 제공자 보상을 늘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스템 설계, 구현 및 평가, ECE 제공자 평가 및 스킬 개발, 커뮤니티 칼리지 및 기타 양질의 훈련 기관이 제공하는 ECE 스킬 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 데이터 보관 및 분석 그리고 ECE 제공자가 달성하는 품질 수준에 대해 일반시민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5) 제(1)목부터 제(4)목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본 항 시행 당일의 내용으로 제42238.1항 제(b)호에 의거 산정된 인플레이션 조정분에 따라 연단위로 조정한다.

(6) ECE 기금이 제(1)목, 제(3)목 및 제(4)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해에는 해당 목에 정해진 금액을 비례하여 감축한다.

(b) 제(a)호에 정해진 회복 및 시스템 개선 기금을 배정한 후 교육감은 제8160항 제(f)호에 따라 "SAE 기금"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ECE 기금을 본 절에서 정하는 ECE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목적으로 사용한다.

(c) 교육감에 배정된 ECE 기금은 해당 교육감이 해당 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절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14802항에 의거해 조직된 회계감독위원회는 매년 일체의 미사용 기금을 회수해야 하며 이러한 기금은 다시 ECE 기금의 일부가 되어 본 절에 따라 재배정된다.

8162. (a) 연방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절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여 수립, 개선 또는 확대된 ECE 프로그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일체의 ECE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자격은 아동이 해당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시점에 1년에 1회 확인한다. 등록을 완료하면 아동은 해당 프로그램 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1년에 1회 자격을 재확인할 수 있다.

(b) 2013-14년 회계연도부터 일반 기금의 특정 퍼센트 비율로서 ECE 프로그램에 대한 연차 지출 승인은 본 법률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결과, 2012-13년 회계연도에 ECE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승인된 일반 기금 수입의 퍼센트 비율 이하로 감축되지 않는다.

8163. 교육감은 SAE 기금을 다음과 같이 배정해야 한다:

(a) SAE 기금의 25퍼센트는 본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유아를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1) SAE 기금의 최대 1퍼센트는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위한 외주계약 그룹 케어 프로그램에서 변제율을 제8168항 제(b)호에 정해진 품질 변제율 기준선까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2) SAE 기금의 최대 2½퍼센트는 이용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출생부터 3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CE 프로그램 및 제공자로 QRIS 시스템에 따른 품질 표준을 개선하거나 제8168항 제(b)호에서 정하는 품질 표준 기준선 이상으로 이미 ARIS 품질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 대해 QRIS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분을 통해 변제율을 2012-13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3) SAE 기금의 21.5퍼센트는 제2조(제8164항 이하)에 따라 수립된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배정한다. 본 목에 따라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배정된 SAE 기금의 최소 35퍼센트는 제8164항 제(d)호에 따라 부모 및 기타 보육자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b) SAE 기금의 75퍼센트는 제3조(제8165항 이하)에 정해진 바에 따라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확대 및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c) SAE 기금의 최대 3퍼센트는 주정부 차원에서 발생한 행정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다.

(d) ECE 제공자가 SAE 기금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최대 15퍼센트는 적절한 프로그램 시설의 용도 변경, 개보수, 개발, 유지관리 또는 렌트 및 리스 비용으로 사용한다. 교육감은 시설을 위한 SAE 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감독 및 조직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을 공포한다.

제2조.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8164. 제8163항 제(a)호 제(3)목에 따라 배정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출생부터 3세 사이 아동에 대한 보살핌을 확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한다:

(a) 이 프로그램은 교육감의 지속적인 규제 및 통제 하에 있어야 하지만 미합중국 법전 제42권 제9840a항에 따라 수립된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다. 교육감은 제8167항에 기술되어 있는 조기 학습 자문 위원회(Early Learning Advisory Council)와의 협의를 통해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최소한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 2011년 11월자로 발효된 모든 내용 및 품질 표준 및 연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감은 본인의 재량에 따라 그 이후의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표준 및 요건을 채택할 수 있다.

(b)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금은 현재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다른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에 지출되고 있는 자금 대신 사용될 수 없다.

(c) 교육감은 2011년 11월 현재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단, 등록 최우선권은 제8160항 제(g)호 제(1)목에 정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 주어지며 그 다음 우선권은 제8160항 제(g)호 제(2)목에 정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 주어지며 그 다음 우선권은 제8160항 제(g)호 제(3)목에 정의되어 있는 고위험 아동에게 주어진다.

(d) 인가를 받은 센터 및 가족 아동 관리 가정에 양질의 그룹 케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그룹 케어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가족 및 보육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그룹 케어 시설과 가정 내에서 영유아들의 보호, 교육 및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아동을 돌보는 부모 및 보육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서비스에는 자율적인 가정 방문, 조기 개발 심사 및 개입, 가족 및 보육자 문해능력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및 보육자 교육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그룹 케어 등록자 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본 호에 따라 보육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선 순위는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가족, 친구 및 이웃 제공자 대상 프로그램에 주어진다.

(e) 교육감은 ELAC와 협의하여 제(d)호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품질 표준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연방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표준 및 교육 규정이 반영된다. 교육감은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에 동일한 표준이 적용되도록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공공 기관들과 조율한다.

(f)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기금은 출생부터 3세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ECE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아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프로그램은 제(a) 및 제(e)호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대상자인 유아는 제(c)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 캘리포니아 주 내 어디서든 캘리포니아 어얼리 헤드 스타트 기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그룹 케어 정원의 최소 75퍼센트는 전일제, 전년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프리스쿨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8165. (a) 제8163항 제(b)호에 따라 3세부터 5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강화 및 확대할 목적으로 배정된 SAE 기금은 다음과 같이 배정된다:

(1) SAE 기금의 최대 8퍼센트는 이용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CE 프로그램 및 제공자로 QRIS 시스템에 따른 품질 표준을 개선하거나 제8168항 제(b)호에서 정하는 품질 표준 기준선 이상으로 이미 ARIS 품질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 대해 QRIS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분을 통해 변제율을 2012-13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정한다.

(2) 그 나머지 부분으로 전체 SAE 기금의 최소 67퍼센트는 QRIS 시스템에 따라 수립된 2개의 최고 품질 등급을 충족하는 라이선스 획득 또는 K-12 기반 프로그램에서 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수를 확대하는 데 사용한다. 교육감은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QRIS가 수립되고 유의한 숫자의 프로그램 품질을 평가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기존 지역 QRIS 시스템의 최고 두 단계 등급을 받은 프로그램, 전국 차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전환기 유치원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높은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본 호에 정해져 있는 확대 기금의 사용을 허가하는 임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QRIS 프로그램 표준은 2014년 1월 1일 이내에 수립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감의 임시 규정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는 공급자들은 신규 시스템에 따른 평가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 받는다. 임시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그 효력을 다하며 임시 인증을 받은 제공자는 기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수립된 QRIS 프로그램 표준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제(2)목에 따라 주 전체에 걸쳐 새로 만들어진 정원의 최소 65퍼센트는 전일, 전해 정원이어야 하며 이러한 정원은 본 절만을 통해서 만들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출처에서 나오는 기금의 결합을 통한 혼합 수업일, 방과후 및 여름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만들 수 있다.

(b) 아동은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년도의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3세 내지 4세이고 아직 유치원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세부터 5세 사이"이며 따라서 제(a)호 제(2)목에 따라 기금을 제공 받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166. (a) 교육감은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프리스쿨 확대 기금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의 모든 구역을 소득 기준으로 열거한 목록에 따라 최저 소득 구역부터 시작하여 목록에서 제일 높은 소득 구역으로 나와 있는 구역까지 제8165항 제(a)호 제(2)목에 따라 배정되는 기금("프리스쿨 확대 기금")을 배분한다:

(1) 교육감은 가구 소득의 중앙값 그리고 우편 번호로 정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로 정의하는 구역을 바탕으로 구역을 생성한다. 본 항 전체에 걸쳐 "구역"은 구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를 의미한다. 교육감은 ECE 유효성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이 기준으로 프리스쿨 확대 기금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며 현재 ECE 프로그램이나 전환기 유치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역 및 학군을 연 단위로 파악한다.

(2) 교육감은 각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에서 자격을 충족하지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수를 파악해 해당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군, 라이선스 보유 가족 아동 관리 가정 교육 네트워크("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제공자, 연방 헤드 스타트 또는 기타 연방 ECE 프로그램 제공자("연방 제공자")에게 이러한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프리스쿨 확대 기금 신청을 받도록 한다. 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려면 신청자는 자격 충족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첫 학년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격 충족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자격 사항이 동일한 두 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우편 번호 또는 기타 지리적 단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프로그램 및 연방 제공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교육감은 공동 신청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격 충족 지역 내 학군, 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제공자 및 연방 제공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으로써 모든 프로그램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논쟁은 최소화하도록 독려한다. 자격을 충족하는 학군, 자격을 충족하는 네트워크, 자격을 충족하는 센터 기반

프로그램 및 연방 제공자가 모두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아동 또는 모든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교육감은 대안적 자격 충족 지역 교육 기관, 라이선스 보유 네트워크, 라이선스 보유 센터 기반 ECE 제공자 및 연방 제공자로부터 해당 자격 충족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다. 대안적 자격 충족 제공자를 모색하는 데 있어 교육감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안적 지급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4) 본 절에 따라 수립 또는 확대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프리스쿨에 출석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이다. 특정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 내에서 3년 연속으로 자격이 있는 커뮤니티 전체에 걸쳐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통해 제공했으나 채워지지 않은 정원의 경우 거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구역 목록 상 차상위 소득 구역에 제공할 수 있다.

(5) 최소 5년에 한 차례 교육감은 어떤 정원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검토하고 상황 조건이 바뀌어 이제 해당 정원이 채워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까지 일체 구역의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킨다.

(b) 아동은 자격에 해당하는 우편 번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리적 단위에 거주한다는 사실, 또는 그 가족이 기존 수업 테스트를 거친 ECE 프로그램의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프리스쿨 확대 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단, 등록 최우선권은 먼저 제 8160항 제(g)호 (1)목의 정의에 따른 고위험 아동에게 돌아가고 그 다음, 해당 호 제(2)목의 정의에 따른 고위험 아동에게 돌아가며 그 다음, 해당 호 제(3)목의 정의에 따른 고위험 아동에게 돌아간다.

제4조. 캘리포니아 조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 (California Early Learning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8167. 본 조에서 "조기 학습 자문 위원회(ELAC)는 행정 명령 제S-23-09호에 의거해 수립된 조기 학습 자문 위원회 또는 해당 승계 기관을 의미한다.

8168. (a) 교육감은 2010년 캘리포니아 조기 학습 품질 개선 시스템 자문 위원회(California Early Learning Quality Improvement System Advisory Committee)가 작성한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을 고려하여 ELAC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기 학습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QRIS 시스템)을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수립 및 이행한다:

(1) 프리스쿨 연령 아동, 영아 및 유아를 포함하여 출생부터 5세까지(5세 포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스쿨을 포함하는 모든 ECE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자발적 품질 등급 기준. 품질 등급 기준은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정서적 개발과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한 준비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된 ECE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2) ECE 제공자가 QRIS 시스템에 따른 프로그램 품질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평가 및 스킬 개발 프로그램.

(3) 자신들의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QRIS 시스템 하에서 이미 더

높은 등급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ECE 프로그램 및 제공자에게 제공되는 보충분을 통해 변제율을 2011-12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법.

(4) QRIS 시스템에 의거해 실시되는 프로그램 및 제공자의 품질 등급에 대한 즉각적인 발표를 포함하여 학부모 및 보육자가 자녀가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품질 및 종류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b) 또한 교육감은 ELAC와의 협의를 통해 2012년 11월 1일 기준으로 ECE 프로그램과 관련한 각종 법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에 맞게 EC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한 변제율 품질 기준선("변제율 품질 기준선")을 수립한다. 현재 변제율 중 변제율 품질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변제율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제8161항 제(a)호 제(1)목 제(C)세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체 기금 또는 18개월 미만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제8163항 제(a)호 제(1)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일체 기금을 사용하여 해당 변제율을 높일 수 있다.

8169. (a) ELAC와 교육감은 지역 계획수립 위원회, First 5 캘리포니아 위원회 및 각 카운티의 First 5 위원회와 협력하여 QRIS, 캘리포니아 주 어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그리고 제2조(제8164항 이하), 제3조(제8165항 이하) 및 본 조에 따라 수립된 각종 프리스쿨 확대 프로그램을 수립 및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해당 개인 및 단체는 ECE 시스템의 효율성, 교육 및 개발 효과성 및 커뮤니티 대응성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협력하여 1998년 캘리포니아 주 아동 및 가족법(California Children and Families Act)(보건 및 안전법의 제108편(제130100항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을 포함하여 지역, 주, 연방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

(b) ELAC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 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의 진척도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 한 차례 주정부 내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 계획수립 위원회 및 카운티 First 5 위원회와 함께 공동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c) 제8161항 제(a)호 제(4)목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은 본 항에서 정하는 협력 및 회의 소집 활동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8170. (a) 교육감은 본 절에 따라 수령한 자금에 대해 수령 및 지출한 다른 모든 자금과는 별도로 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금을 수령한 ECE 프로그램들의 이름과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품질 등급, 각 프로그램이 수령한 금액, 각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 아동 수, 해당 아동들이 이용한 서비스 유형, 그리고 확인 가능한 경우 달성된 아동 결과물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교육감은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당 보고서를 게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고서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다. 이 보고서는 제8236.1항에 따라 발행되는 보고서 내에 포함된다. 회계감독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고 제14814항 제(a)호가 정하는 연례 감사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b) 또한 교육감은 다음 항목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1) ECE 제공자가 품질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약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2) 본 절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ECE 제공자에 대해 일관된 재무 보고 및 연례 독립 감사를 보장한다.

(3) 본 절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 및 조치한다.

8171. (a) 교육감은 2014년 7월 1일 이전까지 E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출생부터 5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 대해 주 전체 대상 초기 교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Early Education Services Database)의 일환으로 기록 및 유지관리되는 고유한 식별자가 배정되도록 조치한다.

(b) 초기 교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캘리포니아 수직 학생 성취 데이터 시스템(California Longitudinal Pupil Achievement Data System, CALPADS) 또는 출생부터 18세까지 아동의 교육적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학생 레벨 승계 데이터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로 만들어 각 아동의 고유 식별자를 통해 ECE 참여를 포함, 모든 아동의 전체 교육 이력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c) 초기 교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아동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년 아동의 거주지 우편 번호.

(2) 매년 아동이 받은 ECE 서비스. 예를 들어, 아동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 프로그램에 다녔는지 여부.

(3) ECE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4) ECE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5) 해당 ECE 제공자에 대한 QRIS 등급 및 그 외 확인 가능한 품질 등급.

(6) 확인 가능한 경우 아동의 가정 내 제 1 언어, 능숙도 수준 및 아동이 초기 개입을 위한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의 유치원 준비도 평가.

(d) CALPADS는 제8161항 제(a)호 제(3)목에서 배정된 연단위 금액까지 본 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해 변제받는다.

8172. 교육감은 본 절의 이행을 위해 비상 규정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공포한다.

제7항. 형법 제42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425. (a) 공공 자금의 수령, 안전한 보관 또는 변제지급 임무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으로, 법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 및 지급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중범죄 유죄에 해당된다.

(b) 교육법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의거해 기금의 배정 또는 배포 임무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으로, 의도적으로 해당 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학생 1인 기준으로 각 지역 교육 기관 또는 각 지역 학교에 기금을 배정 또는 배포하지 않는 자는 중범죄 유죄에 해당하며 법무장관의 기소 처분을 받게 되고 법무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지역구 검사에 의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무장관 또는 법무장관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카운티의 지역구 검사는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법 제14803항, 제14804항, 제14805항, 제14806항 및 제14807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할당 또는 배포된 기금에 대해 형사 처벌과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요구한다. 본 호 위반에 대해 유죄인 자는 누구나 제18항에 의거해 처벌 받으며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모든 공직 보유 자격을 박탈 당한다.

제8항. 제17041.1항이 다음과 같이 세입 및 과세법에 추가된다:

17041.1. (a)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에 더해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지원을 위해 제17041항 제(a)호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는 모든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이로써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은 아래의 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 소득 기준 계층 구분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 폭에 대해 제17041항 제(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은:
\$7,31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0
\$7,316를 초과하나 \$17,34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7,316 초과분의 0.4%
\$17,346를 초과하나 \$27,37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에 \$17,346 초과분의 0.7%를 더한 금액
\$27,377를 초과하나 \$38,00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0에 \$27,377 초과분의 1.1%를 더한 금액
\$38,004를 초과하나 \$48,02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27에 \$38,004 초과분의 1.4%를 더한 금액
\$48,029를 초과하나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68에 \$48,029 초과분의 1.6%를 더한 금액
\$100,000를 초과하나 \$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99에 \$100,000 초과분의 1.8%를 더한 금액
\$250,000를 초과하나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899에 \$250,000 초과분의 1.9%를 더한 금액
\$500,000를 초과하나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8,649에 \$500,000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1,000,000를 초과하나 \$2,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649에 \$1,000,000 초과분의 2.1%를 더한 금액
\$2,500,000를 초과하는 경우	\$50,149에 \$2,500,000 초과분의 2.2%를 더한 금액

(b)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모든 세금에 더해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 지원을 위해 제17041항 제(c)호에 따라 세금이 산정되는 모든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이로써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은 아래의 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 소득 기준 계층 구분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 폭에 대해 제17041

항 제(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은:
\$14,64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0%
\$14,642를 초과하나 \$34,69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4,642 초과분의 0.4%
\$34,692를 초과하나 \$44,72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에 \$34,692 초과분의 0.7%를 더한 금액
\$44,721를 초과하나 \$55,34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0에 \$44,721 초과분의 1.1%를 더한 금액
\$55,348를 초과하나 \$65,37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67에 \$55,348 초과분의 1.4%를 더한 금액
\$65,376를 초과하나 \$136,11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08에 \$65,376 초과분의 1.6%를 더한 금액
\$136,118를 초과하나 \$340,29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40에 \$136,118 초과분의 1.8%를 더한 금액
\$340,294를 초과하나 \$680,58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215에 \$340,294 초과분의 1.9%를 더한 금액
\$680,589를 초과하나 \$1,361,17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1,680에 \$680,589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
\$1,361,178를 초과하나 \$3,402,94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5,292에 \$1,361,178 초과분의 2.1%를 더한 금액
\$3,402,944를 초과하는 경우	\$68,169에 \$3,402,944 초과분의 2.2%를 더한 금액

(c)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제(a)호 및 제(b)호에 명시되어 있는 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전까지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유효한 과세 소득 기준 계층 구분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 폭에 대해 제17041항 제(h)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단위로 조정한다:

(d) 제(e)호 및 제(f)호에 정해진 바를 제외하고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제17045항 또는 공동 신고와 관련한 승계 조항을 포함하여 본 법의 모든 다른 조항의 목적 상 제17041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간주한다.

(e)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으로부터 파생된 세입 추정치에서 환급금을 제한 금액은 본 법 제19602.5항에 규정된 절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교육법 제14801항에 의해 수립되고 2012년 12월 1일 이전까지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추가 세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에 월단위로 입금한다. 본 항에 따라 허가된 규정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이로써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규정 수립 조항(정부법 제2권 제3부 제1편 제 3.5절(제11340항 이하))으로부터 적용 면제된다.

(f) 정부법 제13340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교육 신탁 기금은 이로써 회계연도에 무관하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Our Children, Our Future: Local Schools and Early Education Investment and Bond Debt Reduction Act)의 기금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 승인한다.

(g)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지 않으나, 단,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지역 학교 및 조기 교육 투자 및 공채 채무 삭감법을 연장하는 법안으로 2024년 11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되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찬성한 법안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항. 세입 및 과세법 제19602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9602. 제17935항, 제17941항, 제17948항, 제19532항 및 제19561항에 따라 징수 및 발생한 금액, 크라코 제19602.5항에 따라 입금된 세입금, 제17041.1항에 따라 징수한 세입금, 제10장(제17001항 이하)에 따라 부과된 금액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수령한 모든 자금 및 송금액, 관련 벌금, 세금 추가분, 그리고 본 장에 따라 부과된 이자는 송금 수령 완료 후 주 재무부에 입금되고 개인 소득세 기금에 추가된다.

제10항. 가분성

본 법률의 조항은 분리가 가능하다. 본 법안의 모든 조항 또는 모든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본 법률 조항의 적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 외 다른 측면에서 무효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본 법률의 나머지 다른 조항 또는 다른 개인 또는 상황에 대한 본 법안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1항. 발의의 상충

(a) 본 법안, 납세자 또는 납세자 그룹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개인 소득세를 수정하거나 소매 단계에서 유형의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특권에 대해 소매상에 부과되는 세율을 수정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 목적으로 소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 세율을 수정하는 다른 법안은 동일한 주 전체 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되며 기타 법안의 세율 수정 조항 및 해당 세율 수정 조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는 법의 모든 조항은 본 법안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안이 다른 관련 법안보다 더 많은 수의 찬성표를 받는 경우 해당 다른 법안의 세율 수정 조항과 세율 수정 조항에 의해 기금을 지원 받는 해당 법안의 모든 조항은 무효화되며 대신 본 법안의 조항들이 효력을 갖는다.

(b) 제(a)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조항들 사이의 상충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10항 제(b)호에 따라 해결한다.

제 12항. 개정

본 법률은 주 전체 총선을 통한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할 수 없다.

제 13항. 효력 발효일 및 만료일

(a) 본 법안은 제정일 다음 날 발효된다. 본 법안의 각 조항별 유효 일자리는 법률 본문에 명시한다.

(b) 세입 및 과세법 제17041.1항 제(a)호 및 제(b)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본 법률에 따라 추가되는 세금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만료된다. 단, 2024년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이후 첫 번째 화요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되는 주 전체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본 법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발의안 제39호

본 주민발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II조 제8항의 조항에 의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다.

본 주민발의 법안은 공공 자원법 및 세입 및 과세법의 조항을 개정, 폐지 및 추가한다; 따라서 삭제가 제안된 기존 조항에 취소선아 인쇄되며 제안된 신규 추가 조항은 새로운 조항임을 나타내기 위해 기울임꼴로 인쇄된다.

법률안

캘리포니아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법(THE CALIFORNIA CLEAN ENERGY JOBS ACT)

제1항. 캘리포니아주 주민은 본 문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 캘리포니아주는 심각한 경기 후퇴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백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2) 현행 조세법은 다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기업에게 경쟁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다수의 다른 주는 이미 "단일 매출 요인"이라고 하는 접근방식 즉, 다주 기업에 대해 매출 중 해당 주 내에서의 매출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세법을 개정했다.

(4) 캘리포니아주가 단일 매출 요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경우 입법분석관의 추정에 따르면 주 세입이 연간 최대 \$11억 증가하고 캘리포니아주에 4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5) 또한 세입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부문에 집중 투자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즉각적으로 수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을 감소시키고 경기를 진작시키며 에너지에 지출되는 납세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6) 현행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는 공립 학교에는 추가 세입이 제공될 것이다.

제2항. 제16.3부(제26200항 이하)가 다음과 같이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에 추가된다:

제16.3부.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제1절. 총칙

26200. 본 부는 캘리포니아주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법(California Clean Energy Jobs Act)으로 칭하고 인용할 수 있다.

26201. 본 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임금의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한다.

(b)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는 다른 청정 에너지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학교 및 공공 건물을 수리 및 현대화하는 작업에 캘리포니아 주민을 고용한다.

(c) 상업 및 거주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새로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d) 가용 기금을 사용하여 최대 수준의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편익을 달성한다.

(e) 기존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충, 보완 및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및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돌아가는 경제 및 에너지와 관련한 편익을 창출한다.

(f) 지출된 비용과 창출된 일자리 및 편익을 모두 빠짐 없이 기록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본 부에 따라 기금을 제공 받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

26205. 다음과 같이 주 재무부에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Clean Energy Job Creation Fund)을 제정한다. 제26208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2016-17년 및 2017-18년에 총 오억오천만 달러(\$550,000,000)를 일반 기금에서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이전한다. 기금 내 자금은 아래 각 항을 모두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청정 에너지 창출을 확대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a) 학교 및 공공 시설:

(1) 공립 학교: 공립 학교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장 및 청정 에너지 설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 및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관련 개선안 및 수리 작업.

(2) 공립 대학 및 칼리지: 에너지 효율 개장 및 청정 에너지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및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는 기타 시스템 개선 작업.

(3) 기타 공공 건물 및 시설: 공공 시설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장 및 청정 에너지 설치 작업을 위한 리볼빙 론, 낮은 이자 대출 또는 기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b) 직업 교육 및 인력 개발: 캘리포니아 보존공사(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인증 지역보존공사(Certified Community Conservation Corps), 유스빌드(YouthBuild) 및 기타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불우 청소년, 제대 군인 및 기타 대상자를 교육 및 고용하기 위한 기존 인력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지원.

(c) 공공-민간 협력: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PACE) 프로그램, 또는 상환 요건이 포함된 비용 효과적인 개장을 위한 이와 유사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자금 지원은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감, 지역 및 경제적 형평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른다. 가능한 경우 상환 세입은 일자리 창출 편익을 지속시키기 위해 리볼빙 론 또는 이와 유사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다.

26206. 일자리 창출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a) 프로젝트 선정과 감독은 에너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기존 주 및 지방정부 기관이 맡아 관리한다.

(b) 모든 프로젝트는 각 프로젝트 유형별로 주 내부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관련 편익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c) 모든 프로젝트는 비용 효과적이어야 한다: 총 편익은 일정 시간에 걸친 프로젝트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 프로젝트 선정에는 에너지 관련 편익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과 같은 비에너지 편익(non-energy benefits)에 대한 고려도 포함시킬 수 있다.

(d) 모든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프로젝트 명세, 비용, 예상 에너지 절감액 등이 명시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e) 모든 프로젝트는 감사 대상이다.

(f) 프로그램 총 비용은 총 지원 기금의 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g) 기금은 에너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분야에 전문성이 입증된 기관에 대해서만 지출 승인해야 한다.

(h) 모든 프로그램은 중복을 피하고 기존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위원회와 조율한다.

(i) 유자격 지출에는 설계, 허가, 자금 조달 또는 기타 프로젝트 완료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애물을 감소시키는 절차의 개발 및 시행과 같이 프로젝트 비용 및 지연의 감소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26208. 재무부와 입법분석관이 공동으로 세입 및 과세법 제 25128항, 제25128.5항, 제25128.7항 및 제25136항의 개정, 추가 또는 폐지로 인한 연간 세입 증가 추정액이 십억 달러(\$1,100,000,000) 미만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은 연간 세입 증가 추정치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감소시킨다.

제3절. 책임성, 독립 감사,

일반 공개

26210. (a) 시민 감시위원회(Citizens Oversight Board)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b) 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구성된다: 세 명은 재무장관이 임명하고 세 명은 회계감사관이 임명하며, 세 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각 임명 담당 기관은 다음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성원 한 명씩을 임명한다:

(1) 엔지니어, 건축설계사 또는 기타 건물 건설 또는 설계 분야에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2) 회계사, 경제학자 또는 기타 재무 거래 및 프로그램 비용 효과성 평가 분야에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3) 에너지 효율, 청정 에너지 또는 에너지 시스템 및 프로그램 분야의 기술 전문가.

(c)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각각 위원회에 참여할 직권의원 구성원 한 명을 지명한다.

(d) 위원회는 다음 항목을 모두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기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지출을 매년 검토한다.

(2) 본 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 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금과 완료된 프로젝트 일부에 대한 연차 독립 감사를 위탁 및 검토한다.

(3) 매년 모든 비용 지출 내역이 빠짐없이 기재된 보고서를 간행하여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고서를 게시한다.

(4) 본 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기재한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한다.

제4절. 정의

26220. 본 부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적용된다:

(a) "청정 에너지"는 제26003항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에너지 관리 또는 효율 개선에 기여하는 장치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b) "위원회"는 제26210항의 시민 감시위원회를 의미한다.

(c) "일자리 창출 기금"은 제26205항에 규정된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 기금을 의미한다.

(d) 프로그램 총비용"에는 본 부에 따른 기금 지원 프로그램의 주 기관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 포함되거나 기술 지원, 평가, 측정, 확인 또는 프로젝트 효율성 또는 실적 증가와 관련된 비용 및 지역 단위 시행과 관련한 비용은 제외된다.

제3항. 세입 및 과세법 제2310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3101. (a) "사업 활동 수행"은 재정적 또는 금전적 이득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b)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다음 조건 중 한 개 항목이라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1)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직을 결성했거나 상업적으로 거주한다.

(2) 본 주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바에 따라 제25120항 제(e)호 또는 제(f)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매출이 오십만 달러(\$500,000)와 해당 납세자의 총 매출 실적의 25퍼센트, 두 가지 중 적은 쪽을 초과한다. 본 목의 목적 상 납세자의 매출에는 해당 납세자의 대리인 또는 독립 하청업자의 매출이 포함된다. 본 목의 목적 상 본 주 내에서의 매출은 제25137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바 대로 제25135항항들 및 제25136항 제(b)호 및 그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을 배정하는 규칙을 사용해 결정된다.

(3) 본 주 내에서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의 개인 재산이 오만 달러(\$50,000)와 해당 납세자의 총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25퍼센트, 두 가지 중 적은 쪽을 초과한다.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가치와 재산이 본 주 내에 있는지 여부는 제25137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바 대로 제25129항부터 제25131항까지(해당 항 포함)에 명시된 규칙을 사용하여 판단한다.

(4) 제25120항 제(c)호에 정의된 바 대로 납세자가 본 주 내에서 보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오만 달러(\$50,000)와 해당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수액의 25퍼센트, 두 가지 중 적은 쪽을 초과한다. 본 주 내에서 이루어진 보수는 제25137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바 대로 제25133항 및 그에 따른

규정에 정해진 급여 배정 규칙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c) (1)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는 제17041항 제(h)호에 따라 제(b)호 제(2)목, 제(3)목 및 제(4)목에 명시된 금액을 연단위로 조정한다.

(2) (1)목에 규정된 조정의 목적 상 제17041항 제(h)호는 "1988" 대신 "2012"로 대체함으로써 적용한다.

(d) 납세자의 매출, 재산 및 급여에는 패스스루 법인에서 해당 납세자가 갖는 비례적 또는 분배적 지분이 포함된다. 본 호의 목적 상 "패스스루 법인(pass-through entities)"은 파트너십 또는 "S" 기업을 의미한다.

제4항. 세입 및 과세법 제25128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5128. (a)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모든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을 특정 분수로 곱해서 본 주에 배당하며 이 분수에서 분자는 재산 요인에 급여 요인을 더하고 여기에 매출 요인의 두 배를 더한 수이며 분모는 제(b)호 또는 제(c)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이다.

(b) 배당하는 상거래 또는 사업이 한 가지 이상의 자격 충족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금이 그 "총 사업 수입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 거래 또는 사업의 모든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을 특정 분수로 곱해 본 주에 배당하는데 이 분수에서 분자는 재산 요인에 급여 요인을 더하고 여기에 매출 요인을 더한 수이며 분모는 3이다.

(c) 본 항의 목적 상 "자격 충족 사업 활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농업 사업 활동.
- (2) 추출 사업 활동.
- (3) 저축 및 융자 활동.
- (4) 은행업 또는 금융 사업 활동.
- (d) 본 항의 목적 상:

(1) "총 사업 수입금"은 수입금이 제25137항의 운영으로 인해 매출 요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25120항 제(e)호 또는 제(f)호에 기술되어 있는 총 수입금을 의미한다(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에 따라 제한되는 제25101항에 따라 소득과 배당 요인을 결합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로 구성된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 내의 매출 또는 기타 거래에서 나오는 총 수입금 제외).

(2) "농업 사업 활동"은 가축, 낙농류, 가금류, 과일, 모피 동물 또는 트럭 농장, 플랜테이션, 목장, 양식장 또는 방목지 등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 사업 활동"에는 농장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 털을 깎는 것, 먹이는 것, 돌보는 것, 훈련시키는 것, 관리하는 것, 농장에서 농작물 또는 원예작물을 미제조 상태로 취급, 건조, 포장, 등급 책정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작물 또는 원예작물을 추수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되거나 해당 농장의 소유주, 임차인 또는 운영자가 그렇게 취급되는 작물의 절반 이상을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추출 사업 활동"은 원유, 천연가스 또는 광물 원석의 생산, 정제 또는 가공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한다.

(4) "저축 및 융자 활동"은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 융자 협회 또는 저축 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5) "은행 또는 금융 사업 활동"은 전국 은행들의 사업과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자금 또는 이자부 자본 거래에 기인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6)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은 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에 의해 제한되는 제25101항 및 제25120항에 따라 해당 급여, 재산 및 매출 요인 각각에 대해 동일한 분모를 사용하여 사업 소득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별개의 상거래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7) 제(c)호 제(4)목은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순소득의 균일한 배당을 위한 다주 조세 위원회 공식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식안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채택된 공식과 동일한 발효일에 발효된다.

(8) 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에 따라 제한되는 제25101항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저축 협회 또는 기업의 소득과 배당 요인이 의무적으로 결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다음 두 개 항목이 모두 적용된다:

(A) 그룹의 전체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의 "총 사업 수입금"과 관련하여 제(b)호의 50퍼센트 초과 테스트가 적용된다.

(B) 그룹의 전체 사업 소득이 해당하는 경우 제(a)호, 제(b)호 또는 ~~제25128.5항 제(b)호, 제25128.5항 또는 제25128.7항~~에 따라 배당된다.

제5항. 세입 및 과세법 제25128.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5128.5. (a)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25128항 제(b)호에 명시된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을 제외하고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은 제25128항이 아닌 본 항에 의거해서 해당 소득을 배당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원래 시의 적절하게 제출한 신고에 대해 번복 불가한 연단위 선택을 할 수 있다.

(b)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a)호에 기술되어 있는 선택을 하는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의 모든 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 소득을 매출 요인으로 곱해 본 주에 배당한다.

(c)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는 제25113항에 따른 선택에 대해 정해진 규칙과 일관성을 갖는 규정을 포함하여 본 항에 따른 선택 결정과 관련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갖는다.

(d) 본 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3년 12월 1일자로 폐지된다.

제 6항. 제25128.7항이 다음과 같이 세입 및 과세법에 추가된다:

25128.7.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제25128항 제(b)호에

명시된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을 제외하고 배당 상거래 또는 사업의 모든 사업 소득은 해당 사업 소득을 매출 요인으로 곱해 본 주에 배당한다.

제7항. 세입 및 과세법 제25136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5136. (a) 제25128.5항이 효력을 갖고 제25128.5항 제(a)호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 연도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와 2011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유형의 개인 재산 매출을 제외하고 매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주에 속한다:

(1) 소득 창출 활동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또는

(2) 소득 창출 활동이 캘리포니아주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수행되고 수행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해당 소득 창출 활동이 다른 어떤 주 보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더 많이 수행되는 경우.

(3) 제25128.5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011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로 본 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적용을 받는 일체 납세자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연도에 대해서는 본 호가 적용되고 제(b)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b) 2011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 그리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1)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의 편익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2) 무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그 고객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경우 그 매출은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판매, 리스, 임대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4) 유형 개인 자산의 임대, 리스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5) (A) 제25128.5항이 유효한 경우 제25128.5항 제(a)호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일체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제(a)호 대신 본 호를 적용한다.

(B) 제25128.5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본 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적용을 받는 일체 납세자에 대해 본 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a)호를 적용한다.

(C) 제(A)세목 또는 제(B)세목에도 불구하고 제23101항 제(b)호 제(2)목의 목적을 위해서는 본 호를 적용한다.

(c)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제(b)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바에 따라 그러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d) 본 항은 201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대상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3년 12월 1일자로 폐지된다.

제8항. 제25136항이 세입 및 과세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5136. (a) 제38006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유형의 개인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1)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해당 서비스의 편익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2) 무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유가 증권인 경우 그 고객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경우 그 매출은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판매, 리스, 임대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4) 유형 개인 자산의 임대, 리스 또는 라이선싱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에 해당된다.

(b) 프랜차이즈 사업세 위원회는 본 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바에 따라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항. 제25136.1항이 세입 및 과세법에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25136.1. (a) 2013년 1월 1일 당일 또는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제25128.7항에 따라 그 사업 소득을 할당 배당하는 유자격 납세자는 다음 조항을 적용한다:

(1) 제25137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 조건 충족 매출로, 본 항의 적용이 아니라면 제25136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될 조건 충족 매출 금액의 50퍼센트를 할당한다. 나머지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주에 할당하지 않는다.

(2) 나머지 매출은 모두 제25136항에 따라 할당한다.

(b) 본 항의 목적 상:

(1) “유자격 납세자”는 본 항을 추가해 해당 법률의 발효일에 발효된 바,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18권 제25106.5항 제(b)호 제(10)목에 정의된 바에 따라 그 또한 유자격 그룹인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2) “유자격 그룹”은 본 항을 추가해 해당 법률의 발효일에 발효된 바,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18권 제25106.5항 제(b)호 제(3)목에 정의된 바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결합 보고 그룹을 의미한다:

(A) 해당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최소 투자 요건을 충족했다.

(B) 달력년 2006년도에 시작하는 결합 보고 그룹의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이 1개 이상의 케이블 시스템 운영으로부터 거둔 수입이 미국 네트워크 총 사업 수입의 50퍼센트를 초과했다.

(C) 제(B)세목의 요건 충족 목적 상, 아래의 규칙을 적용한다:

(i)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해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이 달력년 2006년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동일한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었던 경우 해당 비포함 구성원의 총

사업 수입(GBR)은 해당 비포함 구성원이 마치 달력년 2006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달력년 2006년도에 시작하는 과세 대상 연도에 대한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총 사업 수입을 산정한다.

(ii) 총 사업 수입에는 유자격 파트너십의 총 사업 수입도 포함하나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케이블 시스템”과 “네트워크”는 본 항을 추가해 해당 법률의 발효일에 발효된 바, 공공유틸리티법 제5830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동영상, 케이블, 음성 또는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총 사업 수입(Gross Business Receipts)”은 제 25120항 제(f)호 제(2)목에 정의되어 있는 총 사업 수입을 의미한다(해당되는 경우 제25110항의 한정을 받아,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들 사이의 매출 또는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총 수입은 제외).

(5) “최소 투자 요건”은 해당 과세 대상 연도의 시작을 포함하는 달력년 중, 결합 보고 그룹에 의한 이백 오십만 달러 (\$250,000,000) 이상의 조건 충족 지출을 의미한다.

(6) “조건 충족 지출”은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에 의하거나 그를 대신해 지출 또는 발생한 것으로 유형의 자산, 급여, 서비스, 프랜차이즈 수수료 또는 일체 무형의 자산 배포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으로 인정되는 여러 지출들의 일체 조합의 의미한다.

(A) 유형 자산이 아닌 것에 대한 지출은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해당 구성원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해당 구입 또는 지출의 편익을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으로 인정한다.

(B) 유형 자산에 대한 구입 또는 지출은 해당 자산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내 발생분으로 인정한다.

(C) 조건 충족 지출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구입, 사용 또는 독립 외부 계약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재산 또는 서비스에 대해 결합 보고 그룹이 집행한 지출이 포함된다.

(D) 또한 조건 충족 지출에는 유자격 파트너십에 의한 지출도 포함되나 해당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자격 파트너십”은 해당 파트너십의 소득 및 배당 요인들이 해당 결합 보고 그룹의 구성원의 소득 및 배당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나 해당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조건 충족 매출”은 고객 구내 장비의 판매 또는 대여에서 발생하는 총 사업 수입을 제외하고 일체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사업 수입을 의미한다. “조건 충족 매출”에는 유자격 파트너십에 의한 자격 충족 매출이 포함되나 구성원이 해당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c) 유자격 파트너십에 의한 조건 충족 매출과 관련한 본 항의 규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전 제18권 제25137-1항 제(f)호 제(3)목에서 정하는 파트너십 규칙과 일치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발의안 제40호

2011년 8월 15일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에서
인증한 주 상원 선거구가 캘리포니아 헌법 21조 2항
(i)호에 따라 주민들에게 국민 투표로 제출됩니다.

법률안

FILED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State of California

AUG 15 2011

결의안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
주 상원 선거구 인증

2011년 8월 15일

2011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 시민 선거구 조정 위원회(위원회)는 참조된
주 상원 선거구(상원 선거구)를 예비선거 최종 상원 선거구로 제시하기로
승인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1년 8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헌법 XXI조 2(c) (5) 항에 따라 위원회는
crc_20110815_senate_certified_statewide.zip 및 보안 해시 알고리즘
(SHA-1) 번호 14cd4e126ddc5bdce946f67376574918f3082d6b로
식별되는 상원 선거구를 최종 선거구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헌법 XXI조 2(g) 항에 따라 위에서 SHA -1로 참조한
상원 선거구를 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를 추가 확인하고자 위원회 구성원은 이 의결에 서명을 첨부하는 바입니다.


Gabino Aguirre, Commissioner (D)


Angelo Ancheta, Commissioner (D)


Vincent Barabba, Commissioner (R)


Maria Blanco, Commissioner (D)


Cynthia Dai, Commissioner (D)


Michelle DiGuilio, Commissioner (DTS)


Jodie Filkins Webber, Commissioner (R)


Stanley Forbes, Commissioner (DTS)


Connie Galambos-Malloy, Commissioner (D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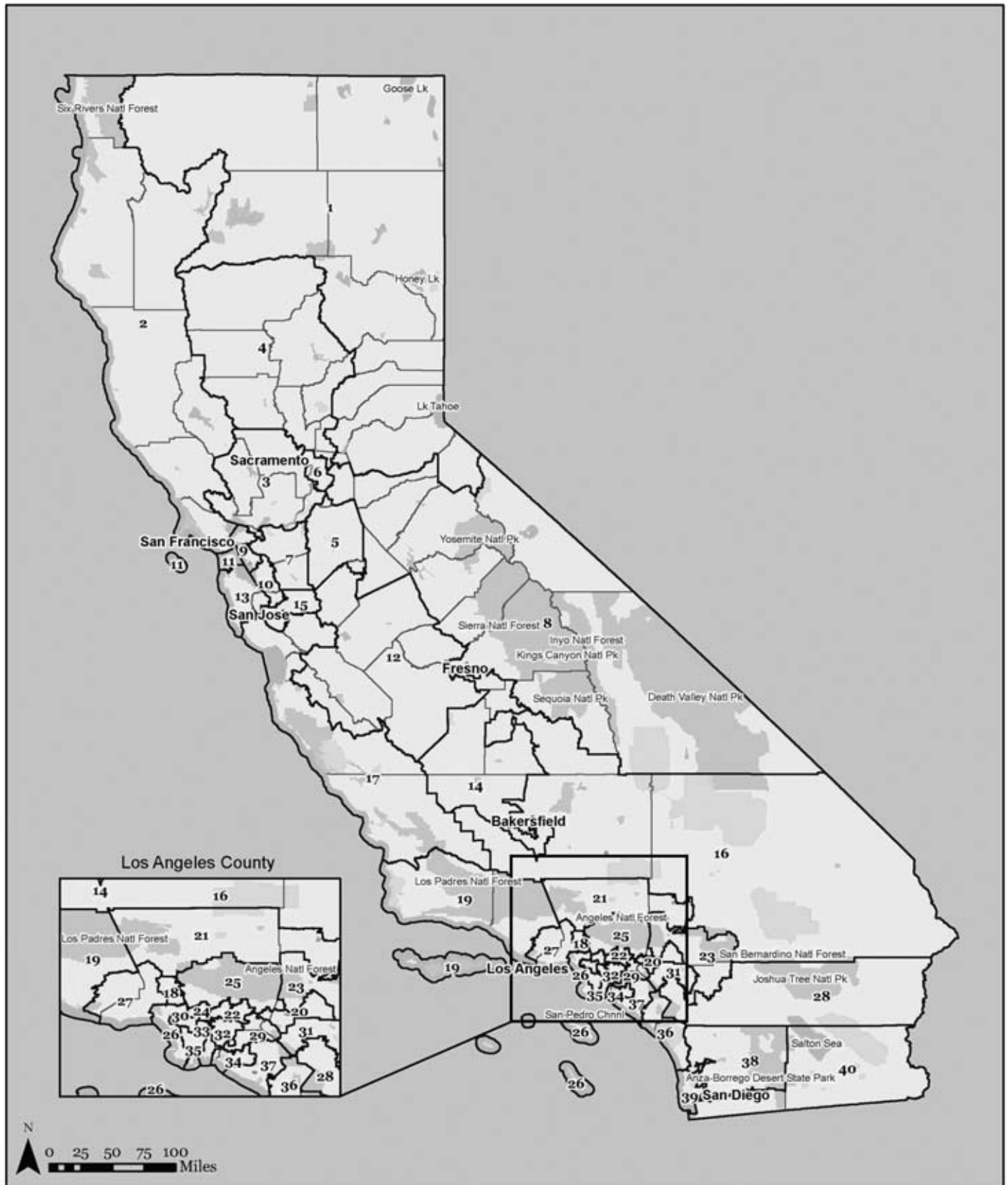

Gilbert "Gil" Ontai, Commissioner (R)


M. Andre Parvenu, Commissioner (DTS)


Jeanne Raya, Commissioner (D)


Michael Ward, Commissioner (R)


Peter Yao, Commissioner (R)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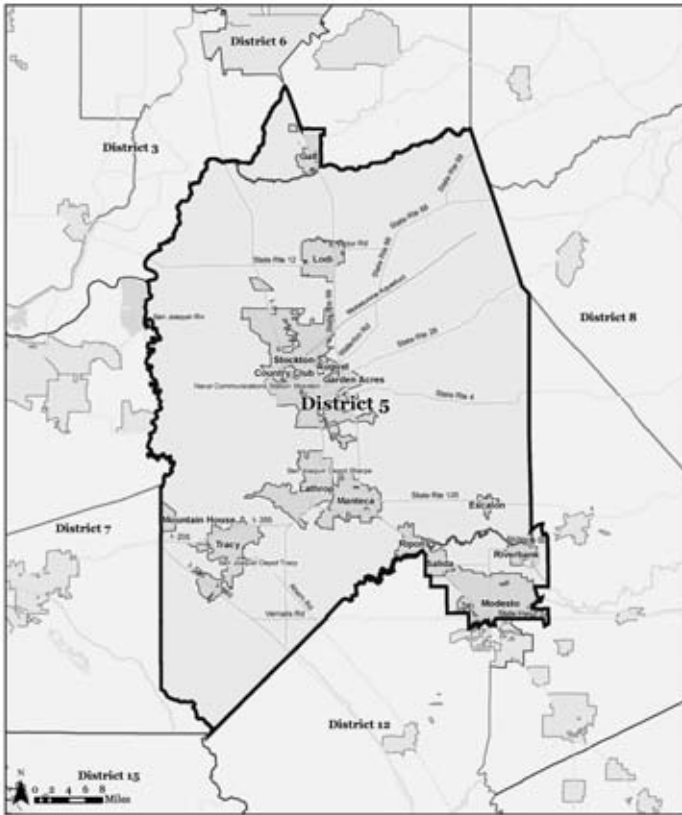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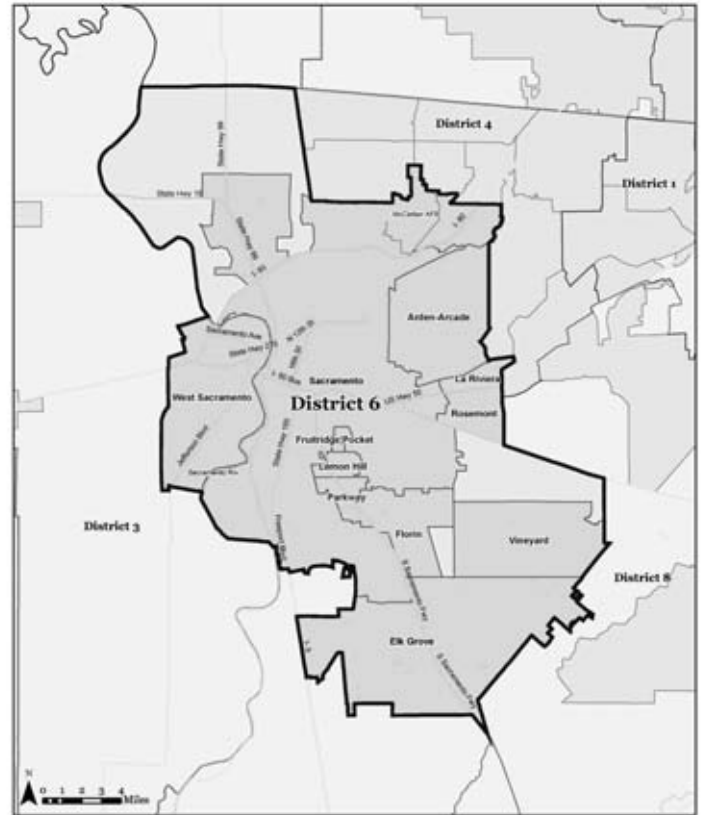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4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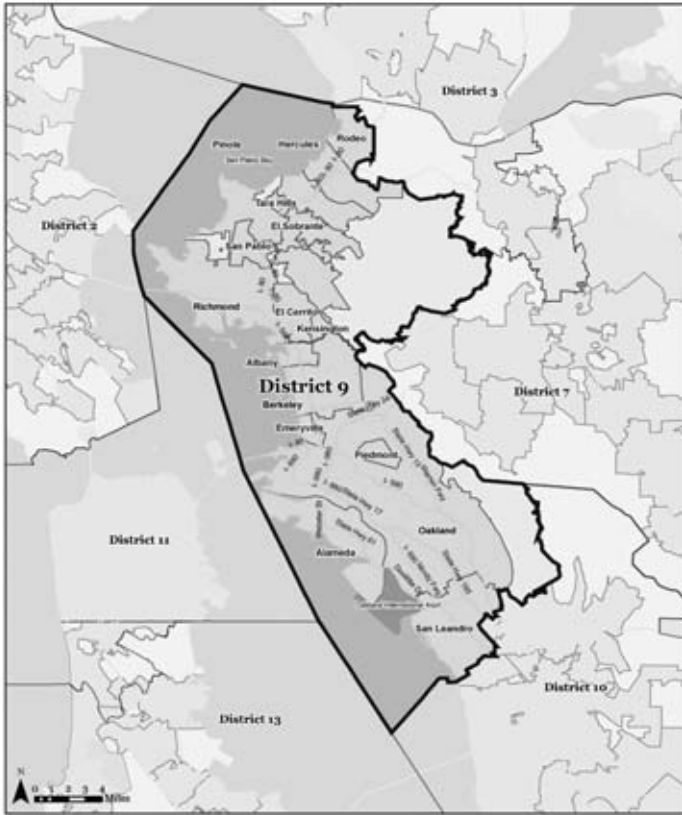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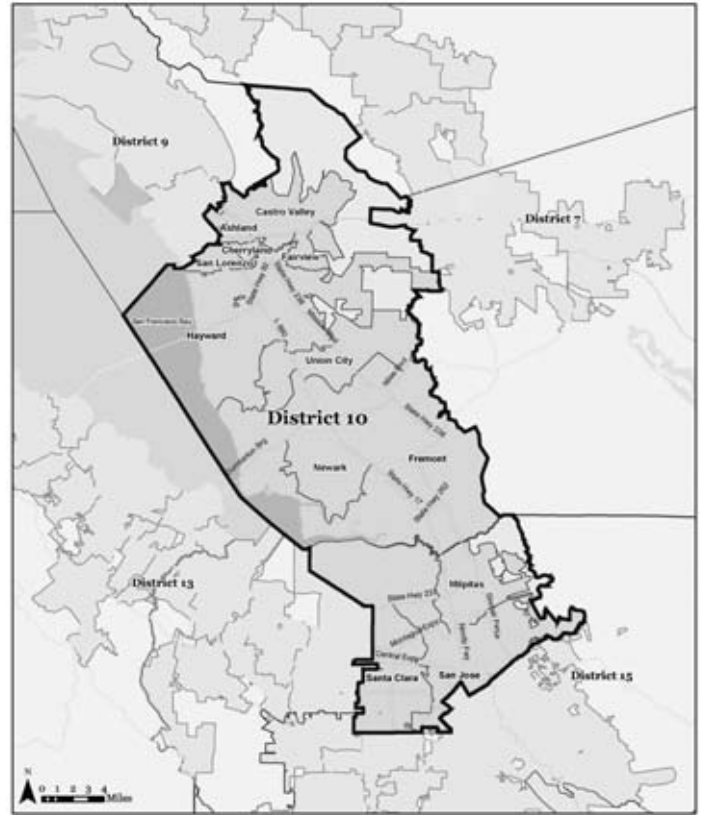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7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8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9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0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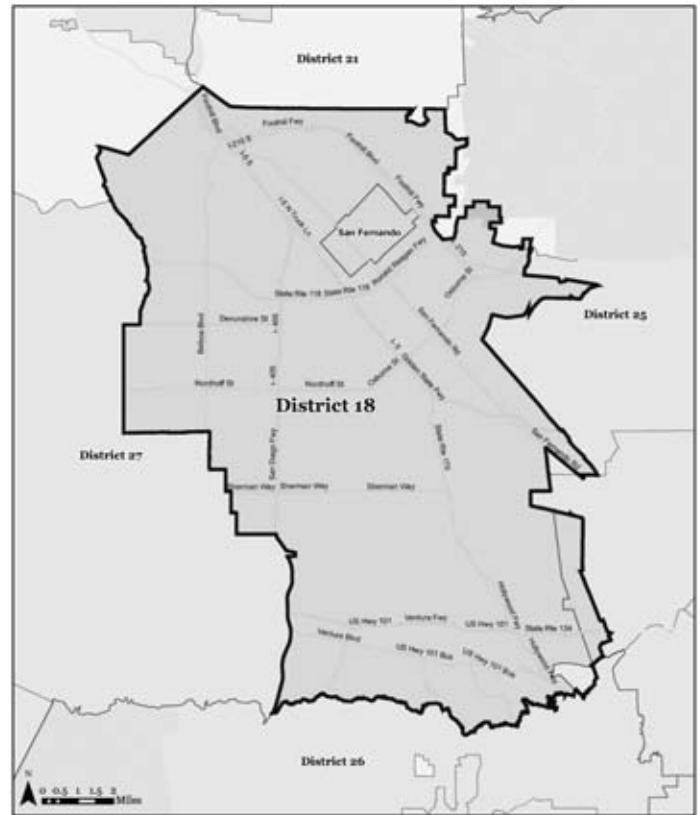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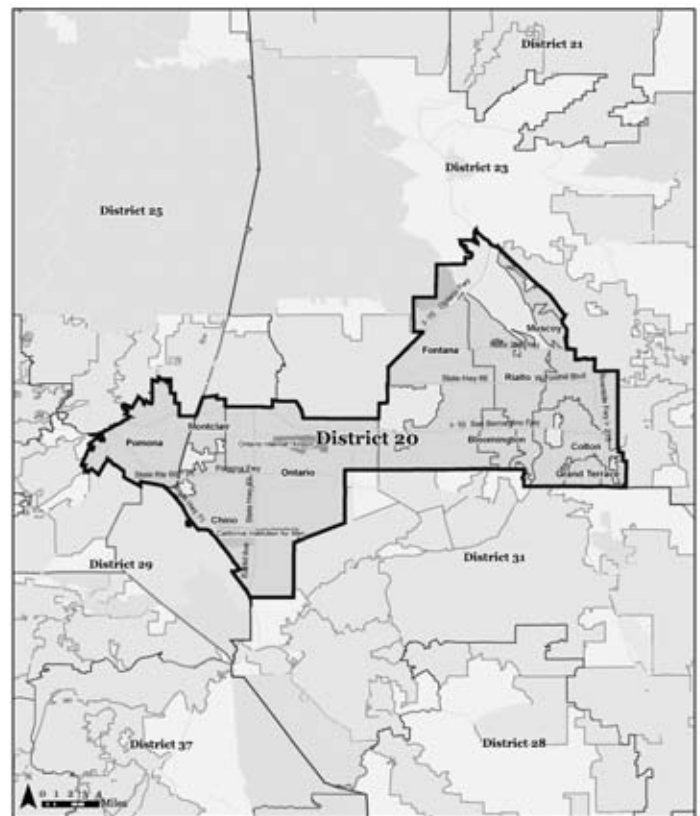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7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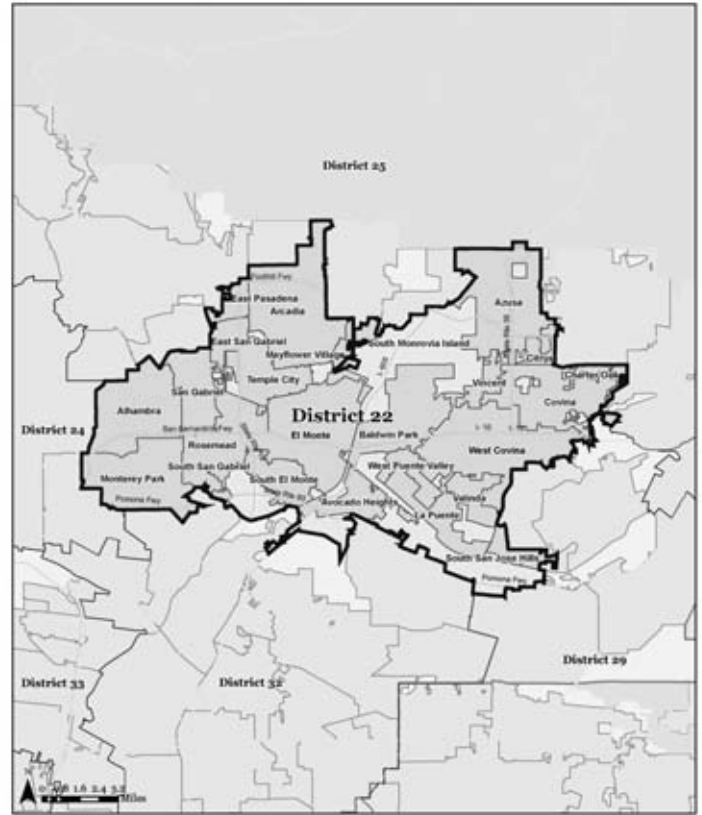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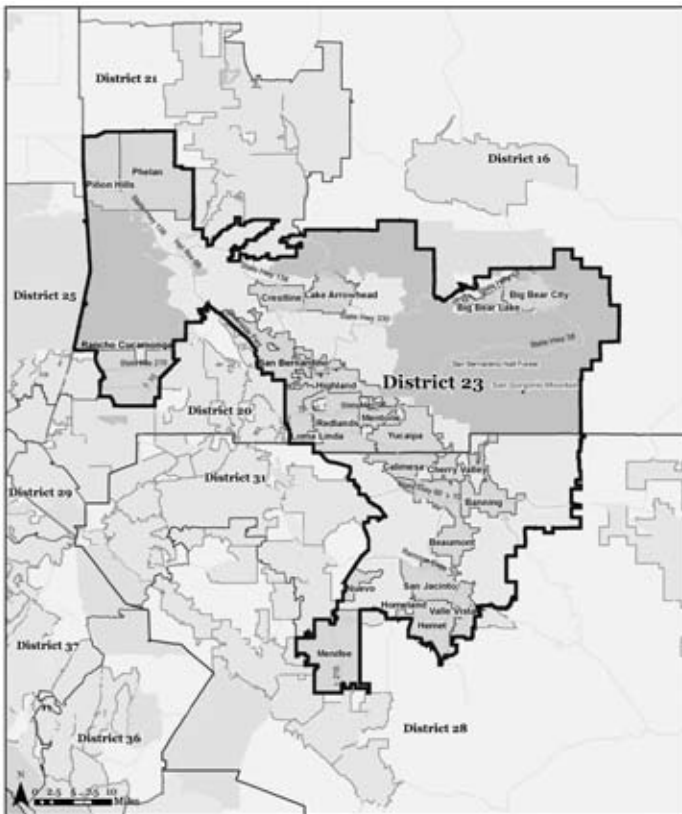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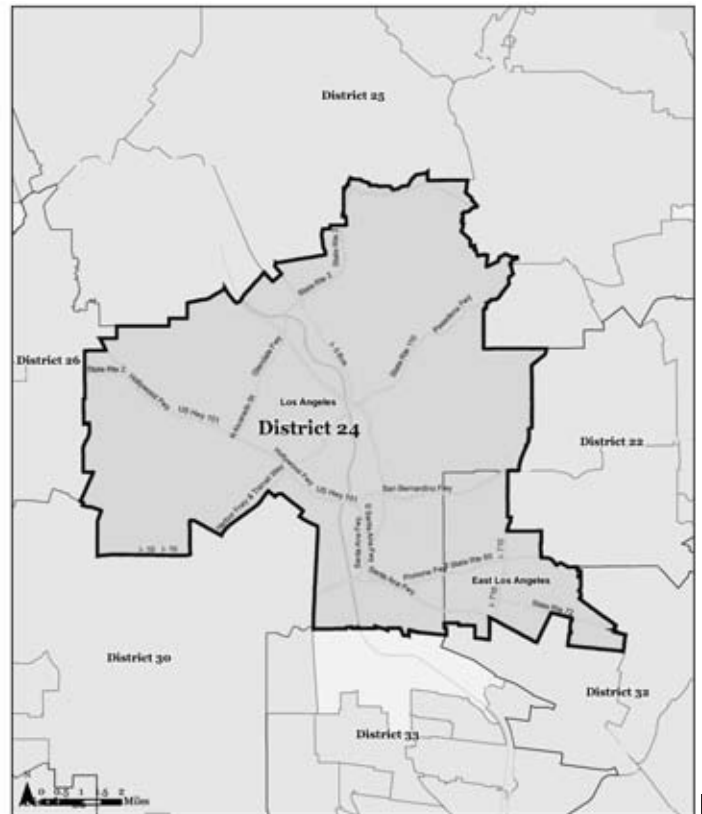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1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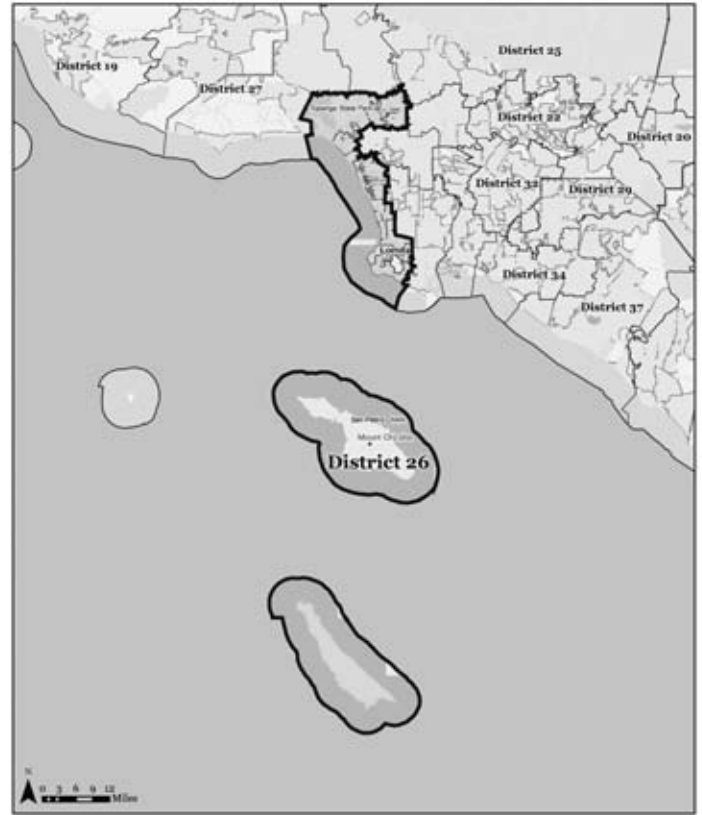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3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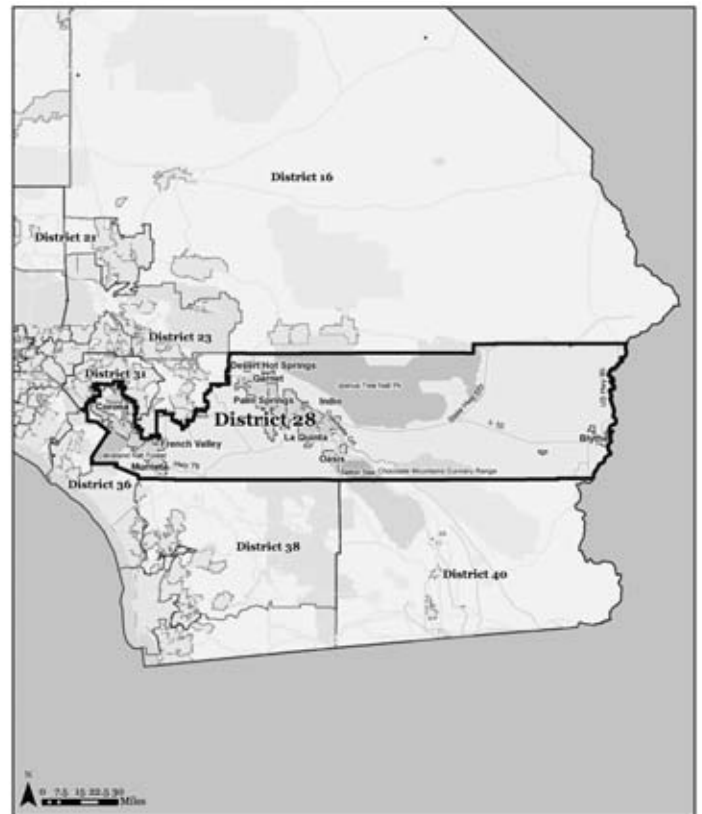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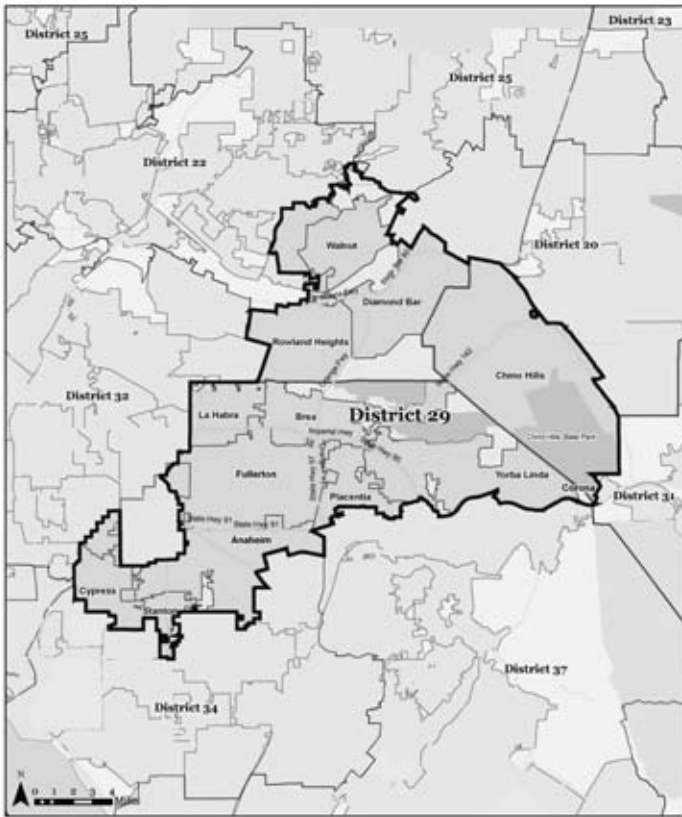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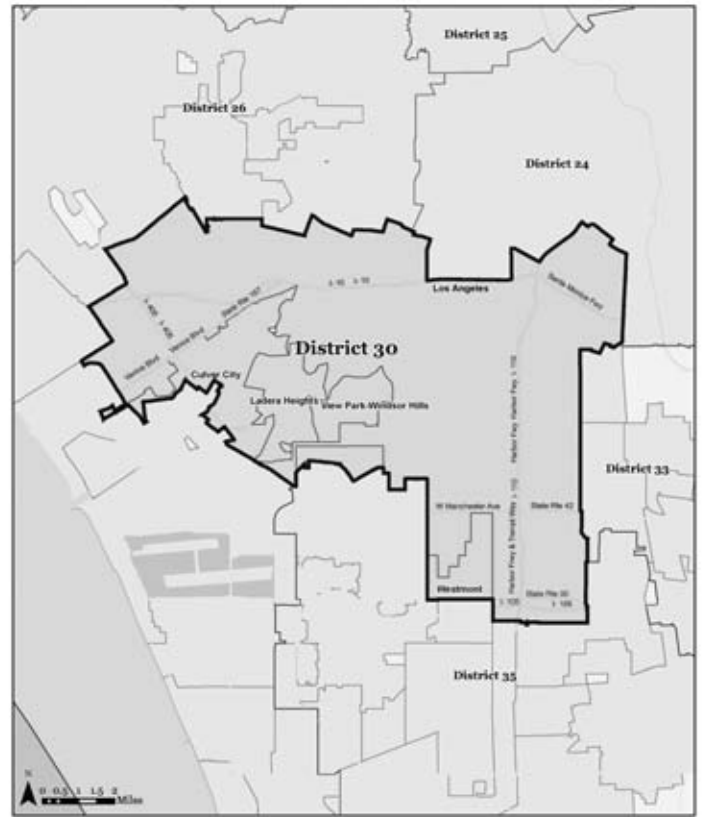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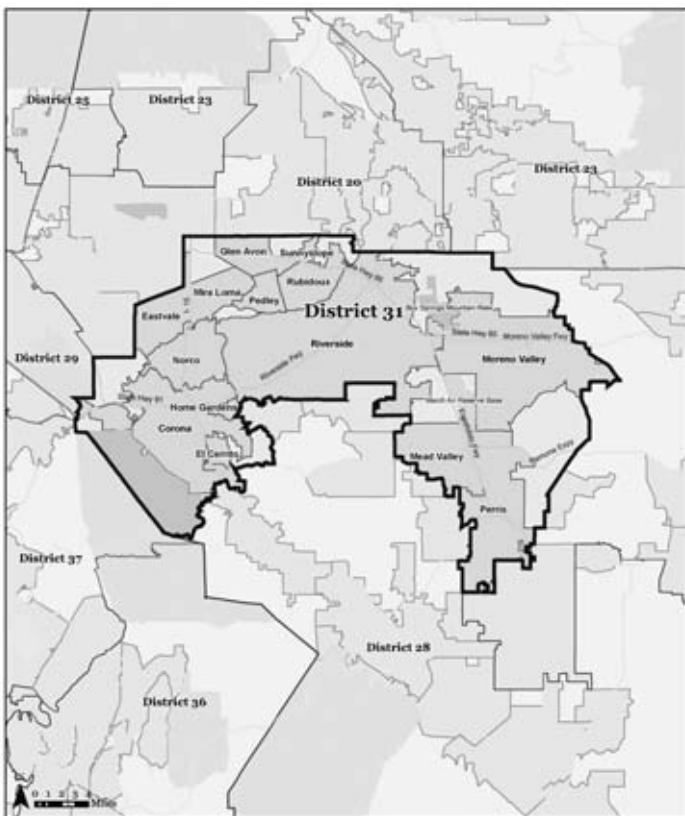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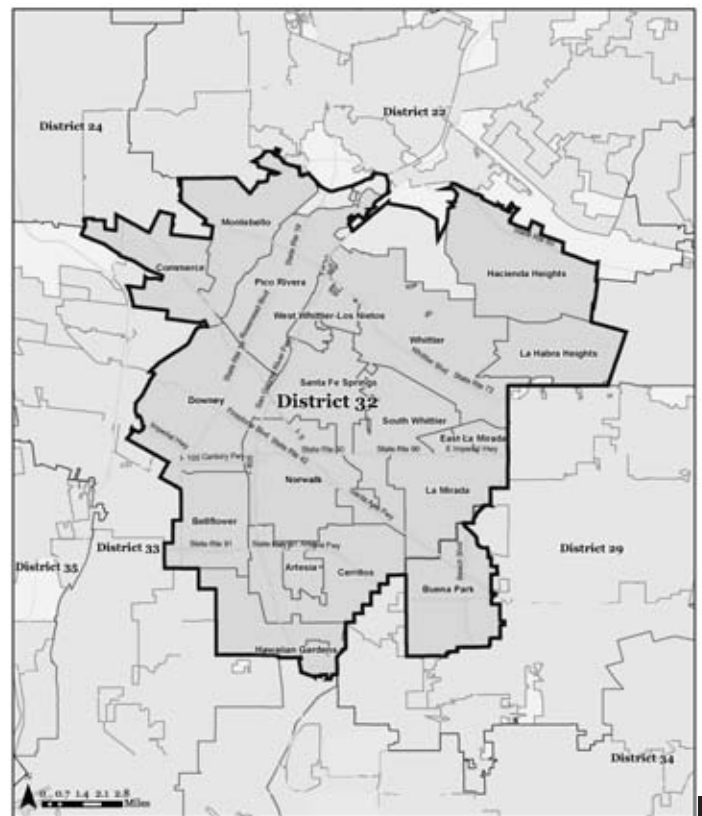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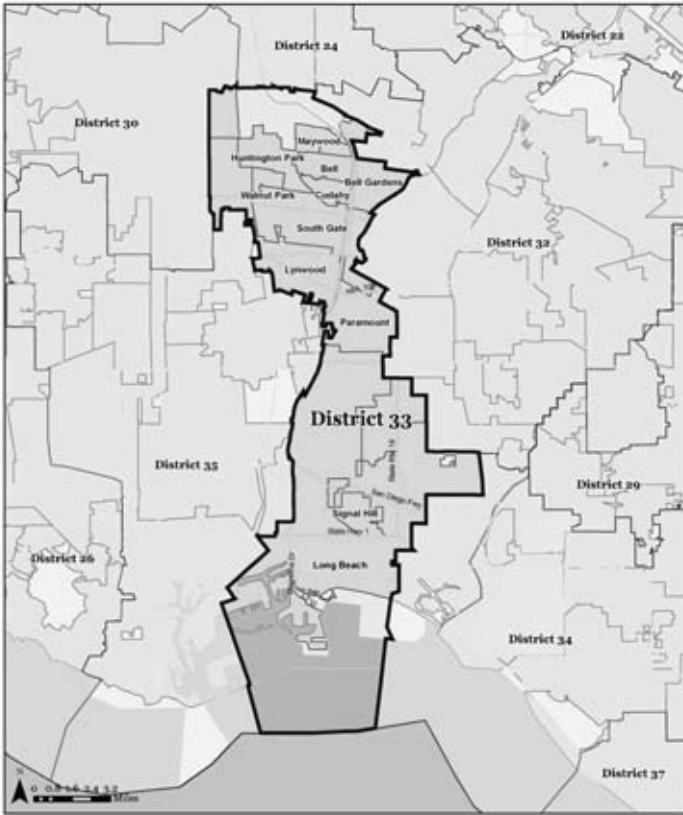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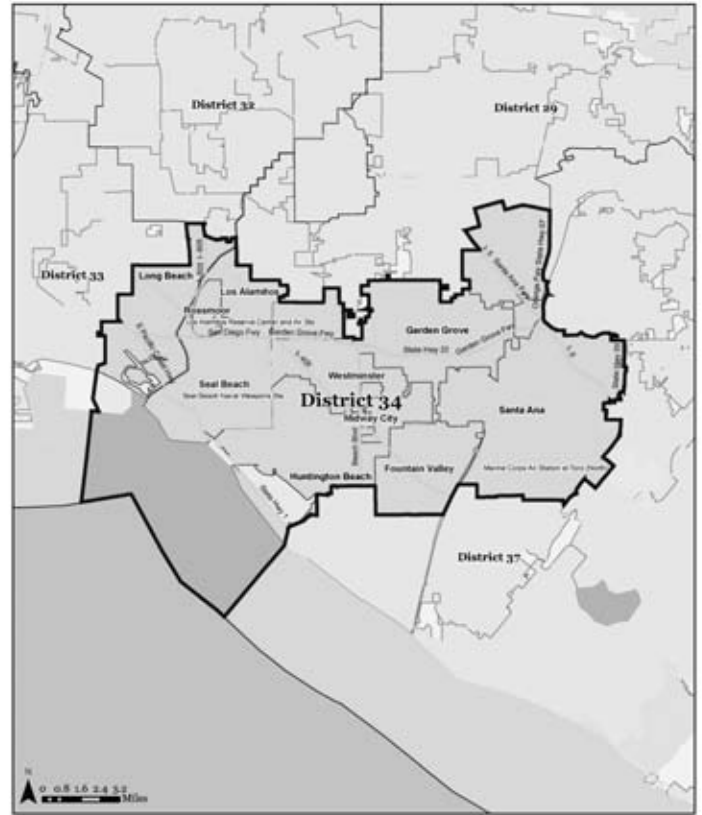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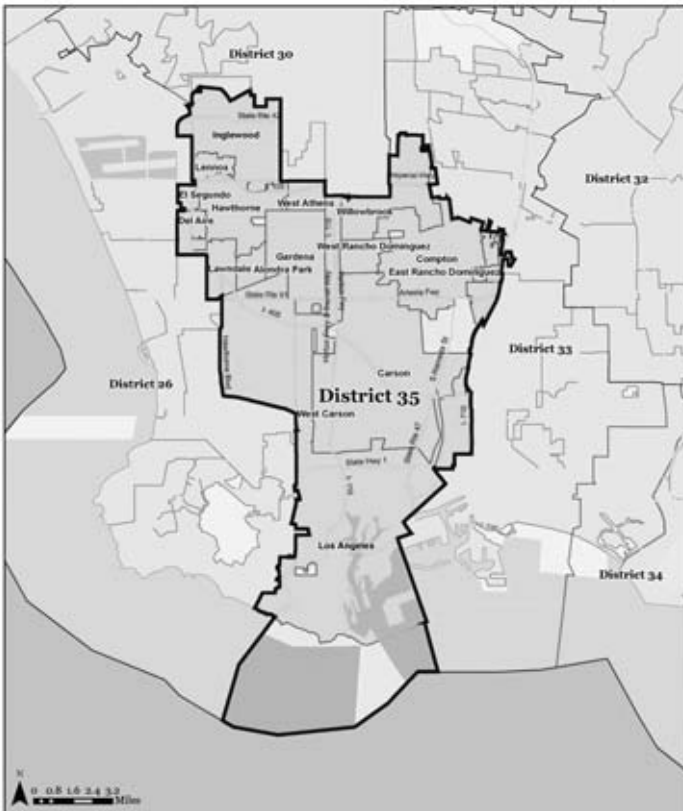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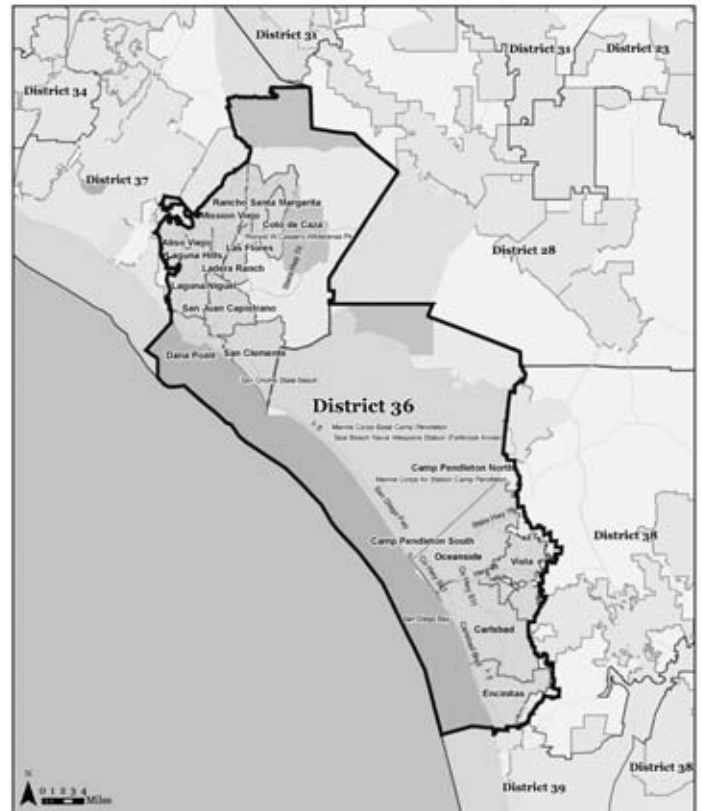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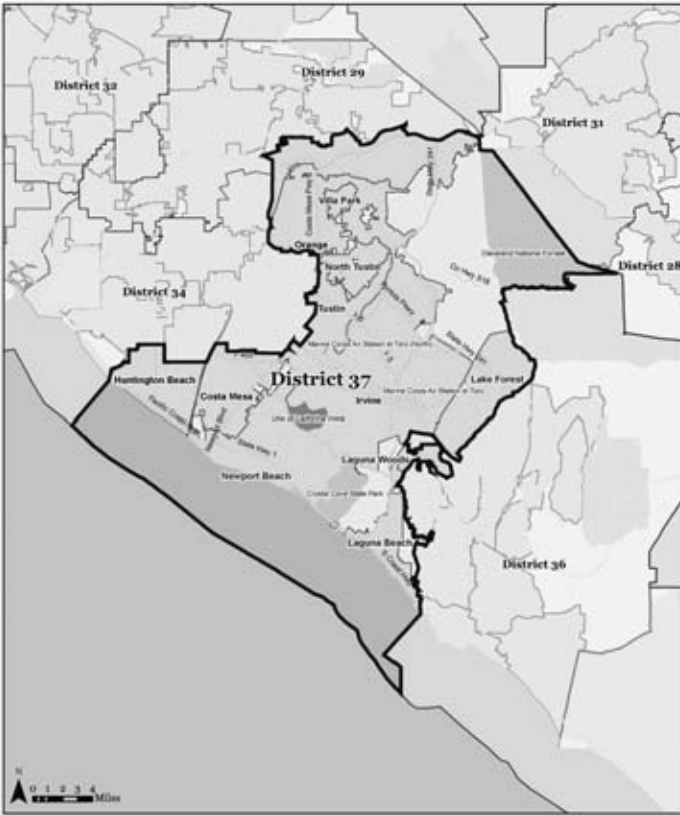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4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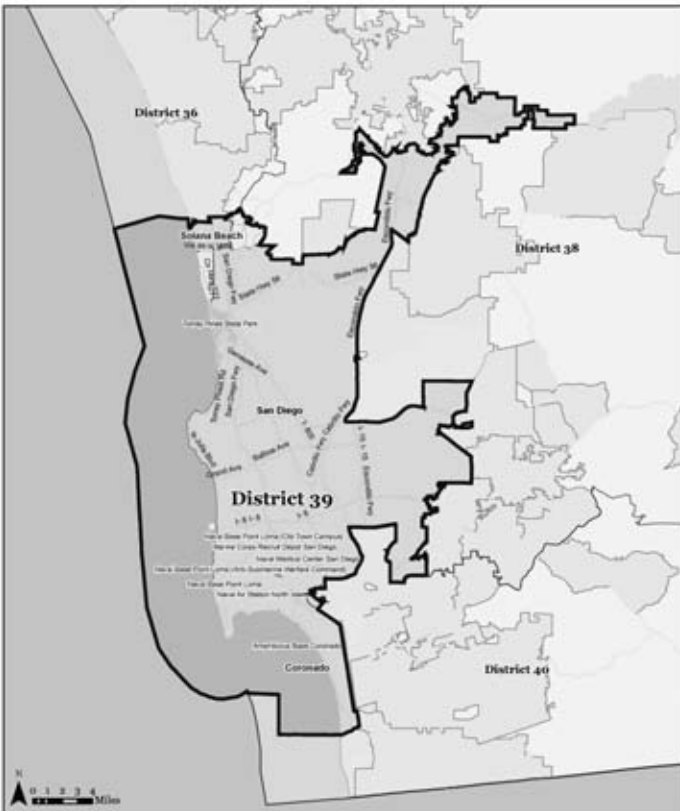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6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7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8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39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선거구 40